

1954년 헤이그협약

특별보호문화재 및

2차 의정서 강화된 보호 문화재 연구



재단
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954년 헤이그협약 특별보호 문화재 및
2차 의정서 강화된 보호문화재연구

2010. 10

문화재청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제출문

문화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1954 헤이그협약 특별보호 문화재 및 강화된 보호문화재 연구”
학술용역에 대한 최종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 호 수

목 차

I. 연구개요	7
II. 연구목적 및 방법	8
III. 협약문 및 지침	10
1. 1954년 헤이그 협약 및 시행규칙	10
2.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의 시행규칙	21
3. 1999년 제2차 의정서	30
4. 1954년 헤이그 협약의 1999년 2차 의정서 실행을 위한 지침	45
IV. 가입당사국 현황과 국가별 사례분석	52
1. 가입당사국 현황	52
2. 국가별 사례분석	58
V. 등재기준 및 목록	61
1. 등재기준	61
2. 보호대상문화재 목록	63
VI. 요청서 작성	102
1. 국문	102
2. 영문	173
별첨 : 자문의견	288

I.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 1954 헤이그협약 특별보호 문화재 및 강화된 보호문화재연구

☐ 수 행 기 관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연구기간 : 2010.4. 14~10.29

☐ 연구단 구성

구 분	성 명	직 위	주 요 경 력
책임연구원	장호수	원장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연구원	민태혜	연구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정희	책임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연구보조원	윤나영	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보 조 원	박종선	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자문위원	김종석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 추진경과

- 계약 및 착수 : 2010.4.14
- 자료 조사 : 2010.4.15~7.10
- T F 회 의 : 2010. 5.11 (고궁박물관)
- 중 간 보 고 : 2010. 6.16 (문화재청)-의견수렴 및 범위 조정
- 대상목록 분석 및 작성 : 2010 .8. 30
- T F 회 의 : 2010. 9.1 (고궁박물관)
- 지문의견 및 대상목록조정 및 작성 : 2010.10.10
- 계 약 변 경 : 2010. 10.8
- T F 회 의 : 2010.14(덕수궁)
- 완 료 일 : 2010.10.29

II.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 1954년 헤이그협약 및 1999년 제2차 의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보호(special protection)와 강화된 보호(enhanced protection)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등재요건을 증빙하고자 함

2. 연구순서 및 방법

1) 등재 기준 마련

- 1954년 헤이그협약 제8조에 따른 특별보호 문화재 및 1999년 제2차 의정서 제10조에 따른 강화된 보호 문화재의 국내적 기준 마련

<특별 보호 (본 협정 제8조 ~ 제11조)>

- 보호 대상 (제8조 제1항)

구 분	보 호 대 상
1	제한된 수의 피난시설(refuge)
2	기념물을 포함한 중심지(centre) ; 문화재집중지구
3	기타 고도로 중요한 부동산 문화재

- 보호 요건 (제8조 제1항 a), b))

구 분	부 가 요 건
1	대규모 산업중심지 또는 공격을 받기 쉬운 지점을 구성하는 중요한 군사목표물로부터 충분한 거리 (제8조 제1항 a) -대규모 산업중심지, 충분한 거리, 공격받기 쉬운 지점 등은 불확정 개념 → case by case로 결정 -군사적 목표물 : 1977년 제1차 추가의정서 제52조제2항 준용
2	군사적 목적에서의 사용금지 (제8조 제1항 b)

- 보완 요건 (제8조 제5항) : 보호 요건 중 거리 요건 미충족 시

구 분	부 가 요 건
1	당사국이 해당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2	군사목표가 항만, 철도역 또는 공항인 경우 전시에 이를 이용하는 모든 운송수단을 우회시켜야 하며 우회의 준비는 평시에 수행

<강화된 보호 (제2차 의정서 제10조 ~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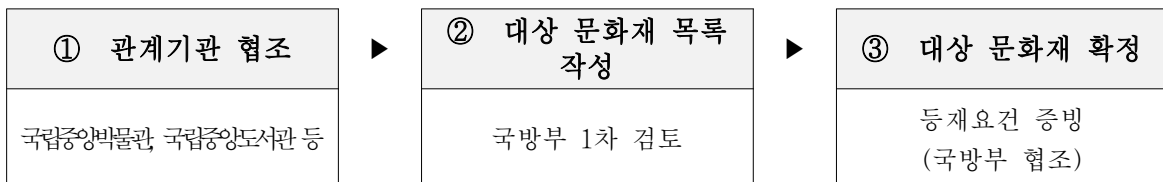
-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한 실효적 보호조치 수립
- 보호 요건 (제2차 의정서 제10조)

구 분	부 가 요 건
1	인류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일 것
2	특별한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내 법률과 행정조치들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경우
3	문화재를 관할하는 당사국이 해당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군사적 장소를 방어하기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것

2) 대상 문화재 확정

- 협정과 부속의정서가 정한 요건을 국내기준으로 정립 한 후에 각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문화재 확정
- 동 요건은 동산 문화재의 피난처나 기념물 등 부동산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적, 건조물 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가 보관된 박물관, 미술관, 기록물 보관소 등을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검토

<확정 순서>



III. 협약문 및 지침

1. 1954년 헤이그 협약(번역문)¹⁾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및 동 협약의 시행규칙

헤이그, 1954년 5월 14일

체약국들은, 최근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문화재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전쟁수단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파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각 민족이 세계문화에 대하여 기여하는 만큼, 문화재가 여하한 민족에게 속하든 그 훼손은 전 인류의 문화유산의 훼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은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중요성을 가지며 이 유산이 국제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하고,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협약들과 1935년 4월 15일의 워싱턴 조약 의하여 확립된 무력충돌 과정에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원칙에 의하여 지도되고, 그러한 보호는 평시에서 이를 조직화하기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들이 취하여지지 않는 한,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의하며, 다음의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제1장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제1조 문화재의 정의

본 협약에서 ‘문화재’ 라 함은 그 출처 및 소유와 관계 없이 다음을 포함한다.

- (a)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불문하고, 건축, 예술 또는 역사의 기념물과 같이 모든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갖는 동산 및 부동산; 고고학적 유적, 전체적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 중요성을 갖는 건물들의 집단; 예술 작품;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중요성을 갖는 원고, 서적 및 기타 물품들; 그리고, 서적, 기록물 또는 위에서 언급된 재산들의 복제물의 과학적 소장품 및 주요 소장품.
- (b) 박물관, 대형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와 같이 (a)항에서 정의된 동산으로서의 문화재를 보존 또는 전시하는 것을 그 주된 실제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무력충돌시에 (a)항에서 정의된 동산으로서의 문화재를 대피시키기 위한 보호시설;
- (c) (a)항과 (b)항에 규정된 다량의 문화재를 보관하는 센터들로서, ‘기념물보관센터’ 로 인정될 수 있는 시설들.

1)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63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의 자료를 번역함

제2조 문화재의 보호

본 협약에서 문화재의 보호는 그러한 재산의 보호 및 존중을 포함한다.

제3조 문화재의 보호

체약국들은 자국 내에 위치하는 문화재를 무력충돌에 기인하는 불의의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평시에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여 대비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문화재의 존중

1. 체약국들은 자국 영토 및 타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문화재를 존중하며, 이를 위하여 무력충돌시 그 문화재와 그 인접시설들 및 그 보호장비들을 파괴 또는 훼손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삼가며, 그 문화재에 대하여 여하한 적대행위도 삼갈 것을 약속한다.
2. 본조 제1항의 의무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될 수 없다.
3. 아울러, 체약국들은 문화재에 대한 절도, 약탈 또는 절취 또는 파손을 금지, 방지 또는 필요하다면 중지시켜야 한다. 체약국들은 타 체약국의 영토상에 있는 동산인 문화재의 징발을 삼간다.
4. 체약국들은 문화재에 대하여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여하한 행위도 삼간다.
5. 여하한 체약국도 타 체약국이 제3조에 언급된 보호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대하여 본 조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제5조 점령

1. 타 체약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하는 여하한 체약국도 가능한 한 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을 담당하는 점령지의 권한있는 당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군사작전에 의하여 훼손된 점령지 영토상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피점령국 당국이 그같은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점령국 당국은 그 점령지 당국과 가능한 한 그리고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그 정부가 반군단체 구성원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합법정부로 인정되는 여하한 체약국도 가능하다면 문화재 존중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들을 이행할 의무에 대하여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재의 식별 표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는 그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별 표장을 달 수 있다.

제7조 군사적 조치

1. 체약국들은 평시에 자기들의 군대 규정과 훈령 속에 본 협약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도입하

며, 자국 군대 구성원들에게 모든 민족의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존중 정신을 함양시키기로 약속한다.

2. 체약국들은 평시에 자국 군대 내에 문화재 존중을 확보하고 문화재 보호에 책임 있는 민간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와 전문요원들을 입안하고 설치할 것을 약속한다.

제2장 특별한 보호

제8조 특별보호의 부여

1. 무력충돌시에 동산 문화재를 피난시키기 위한 보호시설, 기념물 보관센터 및 기타 극히 중요한 부동산 문화재를 중 일정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특별보호를 부여한다.
 - (a) 이들 대상물들이 대규모의 산업 중심지 또는 비행장, 방송국, 국방업무 시설, 교통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항구 또는 철도역, 주된 교통간선 등 중요한 군사적 목적물과 같이 공격대상이 되기 쉬운 지점을 구성하는 주요 군사적 목적물로부터 적절한 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거나,
 - (b) 이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2. 동산 문화재의 보호소는, 그것이 여하하 경우에도 폭격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된 경우에는, 그 위치 여하를 불문하고 특별보호 하에 둘 수 있다.
3. 기념물보관센터는 군대의 인원 또는 물자의 이동 또는 통과를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센터에서 군사작전, 군대인원의 주둔 또는 전쟁 자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위의 제1항에 언급된 문화재의 보호를 그러한 임무를 특별히 부여받은 무장보호요원에게 맡기거나 또는 그러한 문화재의 인근에 통상적으로 공공질서 유지에 책임있는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본조 제1항에 언급된 문화재가 동항에 규정된 주요 군사목적물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경우, 이 문화재도 특별보호 하에 둘 수 있다. 단, 이는 그러한 보호를 요구하는 체약국이 무력충돌시에 그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항구, 철도역 또는 공항의 경우 이들로부터의 모든 교통을 우회시키기로 약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그러한 우회는 평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6. 특별보호는 해당 문화재가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국제등록소’에 등재됨으로써 부여된다. 이 등재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본 협약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제9조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면제

체약국들은 국제등록소에 등재된 때부터 그러한 문화재에 대한 여하한 적대행위도 삼가며 제8조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화재 및 그 주변시설들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삼감으로써,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면제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식별 및 통제

무력충돌 중, 특별보호 하의 문화재는 제16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하며, 본 협약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제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면제의 포기

1. 계약국들 중 하나가 특별보호 하에 있는 여하한 문화재와 관련하여 제9조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적대국은 이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 해당 문화재의 면제를 확보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 적대국은 우선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위반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에 대한 면제는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의 예외적 경우와 그러한 필요성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만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필요성은 반드시 1개 사단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교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그 적대국은 사전에 합리적 기간 내에 면제를 철회하는 결정을 통보받아야 한다.
3. 면제를 철회하는 계약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본 협약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화재 총감독에게 그 이유의 진술과 함께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재의 수송

제12조 특별보호하의 수송

1. 문화재의 수송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수송은 국내에서든 외국으로든 해당 계약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특별한 보호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특별보호 하의 수송은 상기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제적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16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계약국들은 특별보호하의 수송기구에 대하여 여하한 적대행위도 삼가야 한다.

제13조 긴급 상황에서의 수송

1. 계약국이 특정의 문화재의 안전 상 그 수송이 요구되며 특히 무력충돌 개시 시에 제12조에 규정된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에 언급된 면제의 요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거부되지 않았다면, 그 수송기구는 제16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부착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수송은 적대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를 타국으로 이동시키는 수송기구는 면제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한 식별표장을 부착할 수 없다.
2. 계약국들은 가능한 한 본조 제1항에 규정되어 식별표장을 부착하는 수송기구에 대한 적대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4조 압류, 포획 및 노획으로부터의 면제

1. 압류, 포획 및 노획으로부터의 면제는 다음에 대하여 부여된다.
 - (a) 제12조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하는 문화재 및 제13조에 규정된 문화재;
 - (b) 그러한 문화재의 수송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수송수단.
2. 본조의 여하한 규정도 임검 및 수색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4장 인원

제15조 인원

안전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 문화재 보호에 종사하는 인원은 그러한 문화재를 위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적대국의 수중에 떨어진 경우 그가 책임지는 문화재가 함께 적대국의 수중에 떨어졌다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5장 식별표장

제16조 협약의 표장

1. 본 협약의 표장은 아래로 뿔족하며 청색과 백색으로 네 쪽으로 나뉜 방패형(한 각이 방패의 뿔족한 부분을 이루는 감청색의 정사각형과 그 정사각형 위의 감청색의 삼각형, 그리고 그 양쪽이 백색의 삼각형으로 채워지는 방패형)을 취하여야 한다.
2. 이 문장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제17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삼각형의 형태로(하나의 방패가 아래로) 세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17조 표장의 사용

1. 세 번 반복되는 식별표장은 다음과 같은 대상물의 정체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 (a) 특별보호하의 동산 문화재;
 - (b)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조건하의 문화재의 수송기구;
 - (c) 본 협약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의 임시 보호소.
2. 식별표장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대상물의 정체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만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a) 특별보호 하에 있지 않은 문화재;
 - (b) 본 협약 시행규칙에 따른 통제 의무에 책임 있는 인원들;
 - (c) 문화재 보호에 종사하는 인원;

- (d) 본 협약 시행규칙에 언급된 신분증.
- 3. 무력충돌시, 본조 전항들에 언급된 것 이외의 경우에서의 식별표장의 사용과 그 식별표장과 유사한 모든 표시의 여하한 목적으로의 사용도 금지된다.
- 4. 식별표장은, 동시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일자가 부여되고 서명된 허가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한, 부동산 문화재에는 부착될 수 없다.

제6장 협약의 적용 범위

제18조 협약의 적용

- 1. 평시에 효력을 갖는 규정들은 별도로 하고, 본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하는 선전포고된 전쟁 또는 기타의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되며, 그 전쟁상태가 이들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2. 본 협약은 체약국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점령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그 점령에 대하여 여하한 무력적 저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3. 충돌의 일방 당사국이 본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당사자인 국가들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에 구속된다. 그들은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국가가 본 협약의 규정들을 수락하며 이들 규정을 적용하는 한, 본 협약에 구속된다.

제19조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충돌

- 1. 체약국들 중 하나의 영토상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의 경우, 각 충돌 당사자는 최소한 문화재 존중과 관련되는 본 협약의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충돌 당사자들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충돌 당사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 4. 앞의 규정들의 적용은 충돌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장 협약의 시행

제20조 협약의 시행규칙

본 협약을 적용하는 절차는 본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21조 이익보호국

본협약과 그 시행규칙은 충돌 당사자들의 이익 보호에 책임 있는 이익보호국들과의 협력에 의하여 적용

되어야 한다.

제22조 조정절차

1. 이익보호국들은, 특히 본 협약 또는 그 시행규칙의 규정들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하여 충돌 당사자들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문화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 주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각 이익보호국은 당사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돌 당사자들에게 문화재 보호에 책임있는 당국을 비롯한 대표자 회의를 제의할 수 있으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회의는 적절하게 선택된 중립국의 영토상에서 개최하도록 제의될 수 있다. 충돌 당사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회합의 제안을 수락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들은 중립국에 속하는 인사 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국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금 그러한 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을 수락하도록 충돌 당사자들에게 제의할 수 있다.

제23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지원

1. 체약국들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의 준비 또는 본협약 또는 그 시행규칙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기구는 그 계획 및 자원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자발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체약국들에게 제안을 할 자격을 갖는다.

제24조 특별협정

1. 체약국들은 그들이 별도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본협약에 의하여 문화재와 그 보호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주어지는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여하한 특별협정도 체결될 수 없다.

제25조 협약의 보급

체약국들은 무력충돌시와 마찬가지로 평시에도 본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조문들을 각기 국내에 가능한 폭넓게 보급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이들은 이 조문들의 원칙이 문화재 보호에 종사하는 군의 병력 및 인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이들 조문의 학습을 군사 및 필요하다면 민간훈련의 계획 속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번역의 통보

1. 체약국들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을 통하여 본 협약 및 그 시행규칙의 공식번역본을 상

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체약국들은 본 협약 및 그 시행규칙의 이행을 위하여 각자의 행정부가 취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조치들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최소한 4년에 한번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회합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체약국 대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는 최소한 체약국들의 5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 회의는, 본 협약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여받은 여타의 기능을 저해함 없이, 본 협약 및 그 시행규칙의 적용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하며 그와 관련된 권고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나아가 이 회의는 체약국 과반수가 출석하는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또는 그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28조 제재

체약국들은 그 형사관할권의 체제 속에서 국적을 막론하고 본 협약의 위반을 범하거나 이를 명령하는 자들을 소추하고 형벌 또는 징계를 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규정

제29조 언어

1. 본 협약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들 네 개의 협약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본 협약을 총회의 타 공식언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제30조 서명

본 협약은 1954년 5월 14일자로 하며, 1954년 4월 21일부터 1954년 5월 14일까지의 회의에 초청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제31조 비준

1. 본 협약은 서명국들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2. 비준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32조 가입

본 협약은 발효일로부터 제30조에 언급된 국가들로서 아직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가입을 권유받은 여타의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가입서가 기탁됨으로써 발효한다.

제33조 발효

1. 본 협약은 5개의 비준서가 기탁된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2. 그 후에는, 각 체약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그들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제18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상황에 있어서는, 적대행위 또는 점령이 개시되기 전 또는 그 후에 충돌 당사자들에 의하여 기탁된 비준 또는 가입이 즉각적으로 발효한다. 그러한 경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제38조에 언급된 통지를 가장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전달한다.

제34조 효과적인 적용

1. 본 협약 발효일의 각 당사국은 그 발효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효과적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기간은 본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35조 본 협약의 영토적 확대 적용

여하한 체약국도, 비준 또는 가입시에 또는 그 이후에, 본 협약을 자기가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것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를 통하여 선언할 수 있다.

제36조 기존 조약들과의 관계

1. 1899년 7월 29일의 것이든 1907년 10월 18일의 것이든 육전에서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제4협약), 전시 함포사격에 관한 협약(제9협약)에 의하여 구속받는 국가들과 본 협약의 당사자인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이 후자의 협약이 앞서 언급된 제9협약과 앞서 언급된 제4협약에 부속되는 규칙을 보충하며, 본 협약과 그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식별표장의 사용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된 제9협약 제5조에서 정한 표장을 본 협약 제16조에서 정한 표장으로 대체한다.
2. 예술 및 과학적 시설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1935년 워싱턴 조약(로에리치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는 국가들과 본 협약의 당사자인 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이 후자의 협약이 로에리치 조약을 보충하며, 본 협약과 그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식별표장의 사용에 있어서는 이 조약 제3조에서

정한 식별기(旗)를 본 협약 제16조에서 정한 식별표장으로 대체한다.

제37조 탈퇴

1. 각 체약국은 그 스스로와 관련하여 또는 그가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하한 영토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되는 문서에 의하여 통고되어야 한다.
3. 탈퇴는 그 탈퇴문서가 접수된 후 1년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 기간의 만료일에, 탈퇴한 국가가 무력충돌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적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문화재의 송환이 완료될 때까지 중 늦은 시기까지 그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38조 통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제30조와 제32조에 언급된 국가들과 국제연합에 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 가입 또는 수락 문서들의 기탁 사실과 제35조, 제37조 및 제39조에 각각 규정된 통고 및 탈퇴의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39조 본 협약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

1. 여하한 당사자도 본 협약 또는 그 시행규칙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여하한 수정안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사무국장은 각 체약국에게 이를 전달함과 아울러 4개월 내에 다음을 언급하는 답변을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a) 그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것을 희망함;
 - (b) 회의 없이 그 수정안을 수락하는 것을 지지함 또는
 - (c) 회의 없이 그 수정안을 거부하는 것을 지지함.
2. 사무국장은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답변들을 모든 체약국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진술한 모든 체약국들이 본 조 제1항 (b)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자신들이 회의 없이 수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 그들의 결정의 통고는 제38조에 따라 사무국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은 그 통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모든 체약국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4. 체약국들의 3분의 1 이상이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체약국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전 항에 의하여 다루어진 본 협약 또는 그 시행규칙의 수정은 회의에 참석한 체약국들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각 체약국에 의하여 수락된 후에만 발효한다.
6.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회의에서 채택된 본 협약 또는 그 시행규칙의 수정에 대한 체약국들의 수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공식문건이 기탁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7. 본 협약 또는 그 시행규칙의 수정이 발효한 후에는, 그와 같이 수정된 본 협약 또는 시행규칙의 조문만이 비준 또는 가입에 개방된다.

제40조 등록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5월 14일 헤이그에서 단일의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등본들은 제30조와 제32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과 국제연합에 송부되어야 함.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의 시행규칙

제1장 통제

제1조 국제인명부

본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체약국들에 의하여 문화재 총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모든 인사들을 포함하는 국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인명부는 체약국들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의 주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개편된다.

제2조 통제의 조직

여하한 체약국이라도 본 협약 제18조가 적용되는 무력충돌에 연루되게 되는 경우,

- (a) 그 국가는 자국 내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위한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 국가가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경우, 그 영토 내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위한 특별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 (b) 그러한 체약국과 충돌 관계에 있는 각 당사자의 이익보호국은 아래 제3조에 따라 그 체약국에 파견되는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c) 아래 제4조에 따라 한 명의 문화재 총감독이 그러한 체약국에 파견되어야 한다.

제4조 총감독의 임명

1. 문화재 총감독은 그가 파견될 당사자와 그 적국의 이익보호국간의 공동합의에 의하여 국제인명부에서 선출된다.
2. 이 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된 지 3주 내에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총감독을 임명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총감독은 그가 파견될 국가가 그의 임명을 수락할 때까지 그 직무에 착수할 수 없다.

제5조 대리인의 직무

이익보호국의 대리인들은 본 협약의 위반에 주목하며, 자신들이 파견되어 있는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그 위반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조사하며, 그 중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항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총감독에게 그 위반 사실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리인들은 총감독이 자신들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총감독의 직무

1. 문화재 총감독은 본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파견된 당사자의 대표 및 관계 대리인들과 협력하여 그에게 맡겨진 사항들을 다루어야 한다.
2. 그는 본 규칙에 명시된 경우에 결정 및 임명의 권한을 갖는다.
3. 그는 자신이 파견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명령하거나 그 스스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4. 그는 충돌 당사자들 또는 이익보호국들에게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유용한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그는 본 협약의 적용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들과 그 이익보호국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보내며 그는 그 보고서 중 기술적 내용만을 사용할 수 있다.
6. 이익보호국이 없는 경우, 총감독이 본 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이익보호국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관과 전문가

1. 문화재 총감독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대리인들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그들과의 협의 후,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문화재 조사관을 추천하여 그가 파견되어 있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총감독, 대리인들, 조사관들은 전 항에 언급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추천될 전문가의 조력에 호소할 수 있다.

제8조 통제임무의 수행

문화재 총감독, 이익보호국의 대리인, 조사관 및 전문가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에게 위임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 특히, 그들은 자신이 파견되어 있는 체약국의 안전상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 체약국으로부터 자신에게 통보된 군사적 상황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익보호국의 대역

한 충돌 당사자가 이익보호국의 활동에 의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더 이상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중립국들 중 한 국가가 앞의 제4조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문화재 총감독의 임명과 관련된 이익보호국의 기능을 맡도록 요청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명된 총감독은 필요하다면 조사관들에게 본 규칙에서 정한 이익보호국 대리인의 직무를 맡길 수 있다.

제10조 경비

문화재 총감독, 조사관 및 전문가들의 수당과 경비는 이들이 파견되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들의 대리인들의 수당과 경비는 이들 국가와 그들에 의하여 이익이 보호되는 국가들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2장 특별 보호

제11조 임시 보호시설

1. 무력충돌 중에 체약국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하여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특별 보호 하에 둘 것을 희망하는 경우, 그 국가는 그 사실을 자국에 파견된 총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총감독은 그러한 상황과 그 임시 보호시설에 대피된 문화재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약국에게 그 보호시설에 본 협약 제16조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부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총감독은 그의 결정을 지체 없이 관계 이익보호국의 대리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들 대리인들은 30일의 시한 내에 그 표장의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그러한 대리인들이 그들의 동의를 표한 직후 또는 이에 반대하는 여하한 대리인이 없이 30일의 시한이 경과하는 경우 그리고 총감독의 입장에서 그 보호시설이 본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감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이 보호시설을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명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

1.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국제명부' 가 작성되어야 한다.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이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는 그 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체약국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이 명부는 체약국명에 따라 절로 구분되어야 한다. 각 절은 보호시설, 기념물보관소, 기타 부동산 문화재의 세 가지의 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각 항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3조 등재의 요청

1. 여하한 체약국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자국 내에 위치한 특정의 보호시설, 기념물보관소, 기타 부동산 문화재의 등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에는 그러한 재산의 소재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재산이 본 협약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점령시, 점령국은 그러한 신청을 할 자격을 갖는다.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등재 신청의 사본을 지체 없이 체약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의 제기

1. 여하한 체약국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문화재 등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서신은 사무국장이 등재신청의 사본을 발송한 일자로부터 4개월 내에 그에 의하여 접수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이의에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오로지 다음만이 그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a) 그 재산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

- (b) 그 재산이 본 협약 제8조에 언급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3. 사무국장은 이의서의 사본을 체약국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는 「국제기념물·예술문화적유적 및 고고학적 발굴위원회」와 그 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권한있는 기구 또는 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 또는 등재를 신청한 체약국은 이의가 철회되도록 이의를 제기한 체약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하한 항의도 제출할 수 있다.
 5. 평시에 등재를 신청한 체약국이 그 등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력충돌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문화재는 제기되거나 이미 제기된 이의의 확정, 철회 또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 사무국장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6.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사무국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체약국으로부터 이의가 철회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등재를 신청하는 체약국은 다음 항의 절차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7. 중재 요청은 이의서가 사무국장에 의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의 당사국은 각기 한 명의 중재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등재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약국들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단일의 중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들 두명의 중재관은 본 규칙 제1조에 언급된 국제인명부에서 선임중재관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들 중재관이 그러한 선택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선임중재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중재관은 반드시 국제인명부에서 지명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구성된 중재법정은 그 스스로의 절차를 정한다. 그 결정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8. 각 체약국은 자신이 당사자로 되는 여하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 항에서 규정된 중재절차를 적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등재 신청에 대한 이의의 처리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체약국들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이 이의는 투표에 참가한 체약국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확정된다. 투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이 본 협약 제27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우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무국장이 우편으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그같이 요청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봉합 서신에 의한 투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등재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이의가 접수되지 않는 한, 등재신청이 이루어진 각 문화재를 일련번호를 붙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가 철회되었거나 또는 제14조 제7항 또는 제8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장은 그 문화재를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3.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문화재 총감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를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명부 등재의 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 체약국들 그리고 등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협약 제30조와 제32조에 언급된 모든 타국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취소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문화재의 등재가 취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 (a) 영토 내에 그 문화재가 위치하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b) 등재를 요청한 체약국이 본 협약을 탈퇴하였으며 그 탈퇴가 발효한 경우;
 - (c) 제14조 제5항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로서, 제14조 제7항 또는 제8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이의가 확정된 경우.
2. 사무국장은 취소 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명부 등재 사본을 수령한 모든 국가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취소는 그 등본이 발송된지 30일이 경과하면 발효한다.

제3장 문화재의 수송

제17조 면제의 취득 절차

1. 본 협약 제12조 제1항에 언급된 면제의 요청은 문화재 총감독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이 통보에는 그 요청이 근거하고 있는 이유가 언급되어야 하며, 수송될 대상의 대략적인 수량과 그 중요성, 현재의 위치, 예정된 새로운 위치, 이용될 수송수단, 수송경로, 수송예정일자 및 기타 유용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2. 총감독은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조회한 후 그 수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 익보호국의 대리인들에게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되는 조치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그러한 자문 후, 그는 해당 충돌 당사자들에게 모든 유용한 정보와 함께 그 수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총감독은 요청에서 언급된 문화재만이 수송되도록 그리고 그 수송이 승인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식별표장이 부착될 수 있도록 확보할 한 명 이상의 조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그 문화 재와 도착지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으로의 수송

특별보호하의 수송이 타국 영토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본 협약 제12조 및 본 규칙 제17조와 아울러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a) 문화재가 타국 영토에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그 수탁국이 되며 이에 대하여 그 국가가 그와 동등한 자국의 문화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b) 수탁국은 오로지 충돌이 종료된 후에만 그 문화재를 반송할 수 있다. 그러한 반송은 그것이 요청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c) 여러 수송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재가 타국 영토에 위치하고 있는 동안, 그 문화재는 징발로부터 면제되며 기탁국 또는 수탁국에 의하여 처분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문화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국은 기탁국의 동의를 얻어 본 조에서 정한 조건 하에 그 문화재를 제3국의 영토로 이전시킬 수 있다.
- (d) 특별보호의 요청에서는 문화재가 그 영토로 수송될 국가가 본 조의 규정을 수락한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19조 점령하의 영토

타 계약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계약국은 문화재를 그 영토상의 다른 곳에 위치하는 보호시설로 이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수가 없는 경우, 그 수송은 문화재 총감독이 통상적인 관리인의 자문을 얻어 그러한 수송이 상황에 의하여 요구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한, 본 협약 제4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절차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장 식별표장

제20조 표장의 부착

1. 식별표장의 배치 및 그 가시도는 각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재량에 맡겨진다. 식별표장은 기 또는 완장에 표시되어야 하며, 대상물에 인쇄되거나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2. 그러나, 보다 완전한 표시 방법이 없는 한, 무력충돌 시와 본 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언급된 경우, 표장은 주간에 지상 및 공중으로부터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송 차량에 부착되어야 한다. 식별표장은 지상에서 보일 수 있도록,
 - (a) 특별보호하의 기념물보관소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기에 충분한 적당한 간격으로,
 - (b) 특별보호하의 다른 부동산문화재의 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21조 신원 확인

1. 본 협약 제17조 제2항(b)와 (c)에 언급된 인원들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되고 날인된 식별표장을 붙인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인원들은 식별표장이 붙은 특별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최소한 소지자의 성명, 출생일자, 직위 또는 계급과 담당업무가 표기되어야 한다.
3. 각 계약국은 본 규칙에 예시로 첨부된 모델에 따라 그 고유 형태의 신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국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견본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가능하면 두 통으로 작성되어 그 한 통은 발행국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의 인원들은 그 신분증 또는 완장을 착용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제1차 의정서 내용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에 대한 의정서²⁾

헤이그, 1954년 5월 14일

I.

1. 각 체약국은 무력충돌 중, 1954년 5월 14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제1조에 정의된 문화재가 자신이 점령한 영토로부터 반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2. 각 체약국은 여하한 점령지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영토로 반입된 문화재를 압류할 것을 약속한다. 이 압류는 그 문화재가 반입되는 즉시 또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점령지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각 체약국은, 자신의 영토상에 있는 문화재가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여 반출된 것인 경우, 적대행위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를 이전에 점령되었던 영토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4. 자신이 점령한 영토로부터 문화재가 반출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체약국은 전 항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여하한 문화재의 선의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II.

5. 무력충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 체약국이 자신의 영토로부터 반출하여 타 체약국의 영토에 기탁한 문화재는 적대행위가 종료되는 시기에 그 타국에 의하여 그 반출된 영토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III.

6. 본 의정서는 1954년 5월 14일자로 하며, 1954년 4월 21일부터 1954년 5월 14일까지의 회의에 초청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7. (a) 본 협약은 서명국들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b) 비준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2)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63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의 자료를 번역함

8. 본 협약은 발효일로부터 제6항에 언급된 국가들로서 아직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가입을 권유받은 여타의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가입서가 기탁됨으로써 발효한다.
9. 제6항 및 제8항에 언급된 국가들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 의정서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10. (a) 본 의정서는 5개의 비준서가 기탁된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b) 그 후에는, 각 체약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그들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c) 1954년 5월 14일에 서명된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제18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상황에 있어서는, 적대행위 또는 점령이 개시되기 전 또는 그 후에 충돌 당사자들에 의하여 기탁된 비준 또는 가입이 즉각적으로 발효한다. 그러한 경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제14항에 언급된 통지를 가능한 빠른 방법에 의하여 전달한다.
11. (a) 본 협약 발효일의 각 당사국은 그 발효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효과적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기간은 본 의정서 발효일 이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12. 여하한 체약국도, 비준 또는 가입시에 또는 그 이후에, 본 협약을 자기가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것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를 통하여 선언할 수 있다.
13. (a) 각 체약국은 그 스스로와 관련하여 또는 그가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하한 영토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b) 탈퇴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되는 문서에 의하여 통고되어야 한다.
 (c) 탈퇴는 그 탈퇴문서가 접수된 후 1년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 기간의 만료일에, 탈퇴한 국가가 무력충돌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적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문화재의 송환이 완료될 때까지 중 늦은 시기까지 그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제6항 및 제8항에 언급된 국가들과 국제연합에 대하여 제7항, 제8항 및 제15항 규정된 모든 비준, 가입 또는 수락 문서들의 기탁 사실과 제1항 및 제13항에 각각

규정된 통고 및 탈퇴의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15. (a) 본 의정서는 체약국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될 수 있다.
- (b)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이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c) 본 의정서의 수정은 회의에 출석한 체약국들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수락되고 각 체약국에 의하여 수락된 후에만 발효한다.
- (d) (b)와 (c) 소항에 언급된 회의에서 채택된 본 의정서의 수정에 대한 체약국들의 수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에게 공식문건이 기탁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 (e) 본 의정서의 수정이 발효한 후에는, 그와 같이 수정된 의정서의 조문만이 비준 또는 가입에 개방된다.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의정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헤이그에서 1954년 5월 14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작성된 4개의 조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그 단일의 정본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등본들은 제6항과 제8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과 국제연합에 송부되어야 함.

3. 1999년 제2차 의정서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에 대한 제2 의정서³⁾

헤이그, 1999년 3월 26일

당사국들은, 무력충돌 시에 문화재의 보호를 개선하고 특별히 지정된 문화재를 위한 강화된 보호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1954년 5월 14일 채택된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의 규정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실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통하여 이들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협약의 체약국들에게, 적절한 절차의 확립을 통하여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보다 긴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규율하는 규칙이 국제법의 발전을 반영하여야 함을 고려하고, 국제관습법규가 본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문제들을 계속 규율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서칙

제1조 정의

본 의정서에서,

- a. “당사자” 라 함은 본 의정서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 b. “문화재” 라 함은 협약 제1조에서 정의된 문화재를 의미한다.
- c. “협약” 이라 함은 1954년 5월 14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을 의미한다.
- d. “체약국” 이라 함은 협약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 e. “강화된 보호” 라 함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확립된 강화된 보호 체계를 의미한다.
- f. “군사적 목표물” 이라 함은 그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사용에 의하여 군사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그 전체적 또는 부분적 파괴, 포획 또는 무력화가 해당 시기의 지배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군사적 이익을 주는 대상을 의미한다.
- g. “위법” 이라 함은 강제 등에 의하여 점령지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적용규칙에 위반되는 것을 말한다.
- h. “목록” 이라 함은 제27조 제1항 (b)에 따라 작성된 강화된 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목록을 의미한다.
- i. “사무국장” 이라 함은 유네스코 사무국장을 의미한다.
- j. “유네스코” 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의미한다.

3)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520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의 자료를 번역함

- k. “제1의정서” 라 함은 1954년 5월 14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의 의정서를 의미한다.

제2조 협약과의 관계

본 의정서는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협약을 보완한다.

제3조 적용 범위

1. 평시에 적용될 규정에 추가하여, 본 의정서는 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 적용된다.
2. 무력충돌의 한 당사자가 본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 본 의정서의 당사자들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그에 구속된다. 아울러, 이들 당사자들은 본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충돌 당사자가 본 의정서의 규정들을 수락하고 이들을 적용하는 한 이 후자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본 의정서에 구속된다.

제4조 제3장과 협약 및 본 의정서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

본 의정서 제3장의 적용은 다음을 저해하지 않는다.

- a. 협약 제1장 및 본 의정서 제2장의 규정들의 적용;
- b. 본 의정서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한 당사자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의정서를 수락하고 적용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화재가 특별보호 및 강화된 보호를 부여받았으며 강화된 보호의 규정만이 적용될 경우, 협약의 제2장의 규정들의 적용.

제2장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

제5조 문화재의 보호

협약 제3조에 따라 무력충돌의 예견 가능한 효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시에 취하여야 할 준비조치는 필요한 경우 물품목록의 작성, 화재 또는 구조적 붕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의 계획, 동산문화재의 이동 준비 또는 그러한 문화재에 대한 현지 보호 제공 및 문화재 보호에 책임있는 권한있는 당국의 지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재의 존중

협약 제4조에 따른 문화재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하여,

- a. 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긴급한 군사적 필요성에 근거한 포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화재에 대한 적대행위를 지시하기 위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 i. 문화재가 그 기능상 군사적 목표물로 전용된 경우;
- ii. 그 목표물에 대한 적대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군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용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 b. 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긴급한 군사적 필요성에 근거한 포기는 그 문화재를 파괴 또는 훼손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적으로 문화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있으나, 이는 그러한 문화재의 사용과 그와 유사한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방법 간에 여하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c. 긴급한 군사적 필요성을 원용하는 결정은 1개 대대에 상응하는 규모의 또는 상황이 달리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규모의 병력을 지휘하는 장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 d. (a) 소항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에 근거한 공격의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한 효과적인 사전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공격에서의 주의조치

군사작전의 수행에서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다른 주의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충돌 당사국은,

- a. 공격을 받는 목표물이 협약 제4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문화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b. 협약 제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우발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적절한 주의를 취하여야 한다.
- c. 협약 제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문화재에 대한 우발적 훼손으로서, 그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관련하여 과도한 훼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여하한 공격도 명령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d. 다음이 명백한 경우 공격을 철회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 i. 목표물이 협약 제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문화재인 것.
 - ii. 공격이 협약 제4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문화재에 대한 우발적 훼손으로서, 그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관련하여 과도한 훼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

제8조 적대행위의 효과에 대한 주의조치

충돌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 a. 동산문화재를 군사적 목표물의 인근에서 이동시키거나 적절한 현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b. 문화재 인근에 군사적 목표물을 위치시키는 것을 삼가야 한다.

제9조 점령지 내의 문화재 보호

1. 협약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당사자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하는 당사자는 점령지와 관련하여 다음을 금지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 a.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 또는 이동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
 - b. 문화재를 보호, 기록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고고학적 발굴;
 - c.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과학적 증거를 은폐하거나 파괴하기 위하여 의도되는 문화재의 여하한 개조 또는 그 용도 변경.
2. 점령지에서의 문화재의 여하한 고고학적 발굴, 개조 또는 용도 변경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점령지의 권한 있는 국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강화된 보호

제10조 강화된 보호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문화재는 강화된 보호 하에 두어져야 한다.

- a. 그것이 인류에게 중요성이 큰 문화유산일 것.
- b. 그것이 특별한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준 높은 보호를 확보하는 적절한 국내의 법적 및 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을 것.
- c. 그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또는 은폐된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 문화재를 통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그것이 그와 같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있는 경우.

제11조 강화된 보호의 부여

1. 각 당사자는 강화된 보호를 요청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재의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화재에 대하여 관할권 또는 통제권을 갖는 당사자는 그것이 제27조 제1항 (b)에 따라 작성되는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제10조에 언급된 기준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로 하여금 문화재가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3. 다른 당사자들, 청색방패국제위원회와 전문지식을 갖춘 다른 비정부단체들은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의 문화재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하여 그 문화재가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을 권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둘 이상의 국가들에 의하여 주권 또는 관할권이 주장되는 영토상에 소재하는 문화재의 포함을 위한 요청 또는 그 포함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분쟁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5. 목록에의 포함 요청을 수령한 즉시,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한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항의는 반드시 제10조에 언급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그 요청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를 결정하기에 앞서 포함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항의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목록에의 포함 결정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위원들의 5분의 4의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요청에 대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들 그리고 개인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7. 강화된 보호의 부여 또는 거부의 결정은 반드시 제10조에 언급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8.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문화재를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하는 당사자가 제10조 (b)소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요청 당사자가 제32조의 국제적 지원의 요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강화된 보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9. 적대행위가 개시된 직후, 충돌 당시는 긴급한 이유에 의하여 그 관할 또는 통제하의 문화재의 강화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은 위원회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즉각 이 요청 사실을 그 모든 충돌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전문적인 근거에 따른 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되는 항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잠정적인 강화된 보호를 부여하기로 하는 결정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고 투표하는 위원들의 5분의 4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a) 및 (b) 소항의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강화된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정규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인 강화된 보호가 부여될 수 있다.
10. 위원회에 의한 강화된 보호는 문화재가 목록에 등재되는 시기부터 부여된다.
11. 사무국장은 문화재를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지체 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의 면제

충돌 당사자들은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한 문화재 또는 그 인접시설을 군사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문화재의 면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강화된 보호의 상실

1.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보호를 상실할 수 있다.
 - a. 그러한 보호가 제14조에 따라 중지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
 - b. 그 문화재가 그 사용에 의하여 군사적 목표물이 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 (b)의 상황 하에서는, 그러한 문화재는 다음의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a. 그 공격이 제1항 (b)에 언급된 문화재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적절한 수단인 경우;
 - b. 그러한 사용을 종료시키고 문화재에 대한 훼손을 피하거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격의 수단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적절한 주의가 취해진 경우.
 - c. 상황이 허용하는 한, 즉각적인 자위의 필요로 인하여,

- i. 그 공격이 지휘의 최고위의 지휘 작전 체계에서 명령되는 경우;
- ii. 적군에 대하여 제1항 (b)에 언급된 사용의 종료를 요구하는 효과적인 사전 경고가 발하여진 경우, 그리고
- iii. 적군에게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

제14조 강화된 보호의 중지 및 취소

1. 문화재가 더 이상 본 의정서 제10조의 기준들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문화재를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강화된 보호의 지위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를 군사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문화재와 관련하여 제 12조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강화된 보호의 지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문화재를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강화된 보호의 지위를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문화재의 강화된 보호를 중지 또는 취소하는 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본 의정서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그 견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형사책임 및 관할권

제15조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

1. 누구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리고 협약 또는 본 의정서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경우, 본 의정서의 의미상의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본다.
 - a.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
 - b.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 및 그 인접시설을 군사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c.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문화재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약탈.
 - d.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문화재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것.
 - e.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절도, 약탈 또는 절취 또는 파손.
2. 각 당사자는 본 조에서 정한 위법행위를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취급하고 그러한 범죄가 적절한 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직접 그러한 행위를 범한 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형사책임을 확대하는 규칙을 포함하는 법의 일반원칙 및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제16조 관할권

1. 제2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15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그러한 위법행위가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범하여진 경우;
 - b. 그 범죄 혐의자가 그 국가의 국민인 경우;
 - c. 제15조 (a)에서 (c)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경우, 그 범죄 혐의자가 그 영토상에 있는 경우.
2.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리고 협약 제28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a. 본 의정서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할권 행사를 저해하거나 또는 국제관습법상의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b. 본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의정서의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군대 구성원 및 국민은, 본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의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의정서에 의한 개인적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의정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하거나 그들을 인도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 소추

1. 당사자는 제15조 제1항 (a) 내지 (c)에서 정한 범죄의 혐의자가 자국 영토에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여하한 예외 없이 그리고 부당하게 지체됨 없이, 그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적용 가능한 해당 규칙에 따라 소추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적용 가능한 해당 국제법의 규칙에 저촉됨 없이, 자신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공정한 대우와 공평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국제법에 의하여 주어진 것 보다 불리한 대우가 주어지면 안 된다.

제18조 범죄인 인도

1. 제15조 제1항 (a) 내지 (c)에서 정한 범죄는 본 의정서 발효 이전에 여하한 당사자들간에 존재하는 범죄인인도 조약에서도 인도가능한 범죄로 취급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범죄들을 향후 그들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인도 조약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한다.
2. 범죄인 인도를 조약이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당사자가 자기와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제15조 제1항 (a) 내지 (c)에서 정한 범죄들과 관련하여 본 의정서를 인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3. 범죄인 인도를 조약이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자들은 인도를 요청받은 당사자의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15조 제1항 (a) 내지 (c)에 정한 범죄들을 그들간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 간주하여야 한다.

4. 필요하다면, 제15조 제1항 (a) 내지 (c)에서 정한 범죄들은, 당사자들간의 인도를 목적으로, 그 발생지 내에서만 아니라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한 당사자들의 영토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19조 사법공조

1. 당사자들은 제15조에서 정한 범죄들의 수사 또는 이들 범죄에 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 또는 인도절차와 관련하여 그 소송에 필요한 가용한 증거의 획득에 있어서의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그들간에 존재하는 상호적 법률지원에 관한 조약 또는 기타 협정들에 따라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서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거부의 이유

1. 범죄인인도의 목적상, 제15조 제1항 (a) 내지 (c)에서 정한 범죄들과 사법공조의 목적상 제15조에서 정한 범죄들은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를 이유로 하는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요청은 그것이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
2. 본 의정서의 여하한 부분도 요청을 받은 국가가 제15조 제1항 (a) 내지 (c)에서 정한 범죄들의 인도 요청 또는 제15조에서 정한 범죄들과 관련된 사법공조의 요청이 어떠한 사람을 그 인종, 종교, 국적, 민족적 기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을 만한 또는 그 요청의 이행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1조 다른 위반에 관한 조치

협약 제28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는 다음의 범죄가 고의적으로 범하여졌을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징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반하는 문화재의 여하한 사용;
- b. 협약 또는 본 의정서에 반하는 점령지에서의 문화재의 여하한 반출, 이동 또는 명의 이전.

제5장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서의 문화재 보호

제22조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1. 본 의정서는 당사자들 중 하나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된다.
2. 본 의정서는 소요,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동 및 유사한 성질의 다른 행위들과 같은 국내적 혼란 또는 긴장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의정서의 여하한 부분도 국가의 주권 또는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국내의 법질서를 유지 또는 회복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국가적 통합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할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용될 수 없다.
4. 본 의정서의 여하한 부분도 그 영토상에서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국가가 제15조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갖는 제1차적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본 의정서의 여하한 부분도 그 영토상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국가의 국내적 또는 대외적 문제에 대하여 여하한 이유에서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6.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 대한 본 의정서의 적용은 그 충돌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유네스코는 충돌 당사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제도적 사항들

제23조 당사자회의

1. 당사자회의는 유네스코 총회와 같은 시기에 소집되며, 사무국장에 의하여 체약국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이 회의와 동격으로 소집된다.
2. 당사자회의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3. 당사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a) 제24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원의 선출
 - (b) 제27조 제1항 (c)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마련된 지침의 인준
 - (c) 위원회에 의한 기금의 사용에 대한 지침의 제정 및 그 감독
 - (d) 제27조 제1항 (d)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 (e)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의 토의 및 필요한 경우 권고
4. 당사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은 비상 당사자회의를 개최한다.

제24조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위원회

1.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당사자회의에서 선출되는 12개 당사자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일년에 한번 정례회의로 개최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비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전세계의 다양한 지역 및 문화의 균형있는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구성국들은 문화재, 국방 또는 국제법의 분야에 정통한 인사들을 자국의 대표로 선임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 전체가 이 모든 분야의 책임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임기

1. 당사자는 4년의 임기로 위원회 구성국으로 선출되며, 한 번에 한하여 직후의 선거에서 재선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구성국들 중 2분의 1의 임기는 자신들이 선출된 최초의 당사국 회의 정기회의 후의 첫 번째 정기회의의 말에 종료한다. 이들 구성국들은 최초의 선거 후 당사자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주침으로 선출된다.

제26조 절차규칙

1. 위원회는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다수로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투표하는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당사자인 무력충돌에 의하여 영향받는 문화재에 관한 모든 결정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27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a. 본 의정서 이행을 위한 지침의 개발
 - b. 문화재의 강화된 보호의 부여, 중지 또는 취소 및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 목록의 작성, 유지 및 갱신
 - c. 본 의정서의 이행의 감시 및 감독 그리고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의 확인 및 갱신
 - d. 당사자들의 보고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논평
 - e. 제32조상의 국제적 지원의 요청의 접수 및 검토
 - f. 기금의 사용의 결정
 - g. 당사자회의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기능의 수행

2. 위원회의 기능은 사무국장과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위원회는 협약, 그 제1의정서 및 본 의정서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국제기구 및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색방패국제위원회」(ICB)와 그 구성기관들을 포함하여 유네스코와 공식적 관계를 갖는 기관들과 같은 탁월한 전문적 기관들을 자문역으로서 그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 및 복구 연구 센터」(로마 센터)(ICCROM)과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도 자문역으로서 참석을 요청받을 수 있다.

제28조 사무국

위원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을 받으며, 유네스코 사무국은 위원회의 문서관리 및 그 회의의 안전상정을 준비하고 그 결정의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 기금

1.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기금이 조성된다.
 - a. 특히 제5조, 제10조 (b) 및 제30조에 따라 평시에 취해져야 하는 준비 기타 조치의 지원을 위한 재정적 또는 기타의 원조
 - b. 특히 제8조 (b)에 따라 무력충돌 중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져야 하는 긴급조치, 잠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 또는 무력충돌 종료 후의 즉각적인 복구조치와 관련한 재정적 또는 기타의 지원의 제공
2. 이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무규칙의 규정에 따른 신탁기금을 구성한다.
3. 이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은 위원회가 제23조 제3항 (c)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계획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프로그램 또는 계획을 위해서만 사용될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a) 당사자들의 자발적 기부금
 - (b) 다음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부금, 증여 또는 유증
 - (i) 다른 국가들
 - (ii) 유네스코 또는 국제연합 체제의 다른 기구들
 - (iii) 다른 정부기구들 또는 비정부기관들
 - (iv) 공적 또는 사적 단체 또는 개인들
 - (c) 이 기금에 증식되는 이자
 - (d) 이 기금을 위하여 조직되는 행사로부터의 모금 및 수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금
 - (e) 이 기금에 적용되는 지침에 의하여 허용되는 모든 다른 재원들.

제7장 정보의 보급 및 국제적 지원

제30조 보급

1. 당사자들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특히 교육 또는 정보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 국민에 의한 문화재의 이해 및 존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평시 및 무력충돌시에 가능한 한 폭넓게 본 의정서를 보급하여야 한다.
3. 무력충돌시에 본 의정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군 및 민간 당국들은 그 조문들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a) 그 군 규칙에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지침 및 훈령을 포함시킬 것.
 - (b) 유네스코 및 관련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평시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
 - (c) 사무국장을 통하여 법률, 행정규정 및 (a) 및 (b)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상호 통보할 것.
 - (d) 가능한 한 사무국장을 통하여 본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하는 법률 및 행정규정들을 상호 통보할 것.

제31조 국제협력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 시에, 당사자들은 위원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또는 유네스코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32조 국제적 지원

1. 각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를 위한 국제적 지원과 제10조에 언급된 법률, 행정규정 및 조치의 준비, 개발 또는 시행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본 의정서의 당사자는 아니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규정을 수락하고 적용하는 충돌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절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국제적 지원의 요청 제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제적 지원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충돌 당사자들에게 위원회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장려된다.

제33조 유네스코의 지원

1. 당사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준비조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 그리고 조직적 조치를 준비 또는 문화재 국내목록의 작성 등 문화재의 보호를 계획함에 있어서 또는 본 의정서의 적용으로부터

터 발생하는 여하한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그 계획과 예산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양자적 또는 다자적 자원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장려된다.
3. 유네스코는 자발적으로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8장 본 의정서의 집행

제34조 이익보호국

본 의정서는 충돌의 당사자들의 이익보호에 책임있는 이익보호국들의 협조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35조 조정절차

1. 이익보호국들은 본 의정서 규정들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하여 충돌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에서 주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각 이익보호국은 당사자 또는 사무국장의 권유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충돌 당사자들에게 적절하다면 충돌 당사자 이외의 국가의 영토상에서 문화재 보호에 책임있는 당국을 비롯한 대표자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충돌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회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익보호국들은 충돌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속하는 인사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금 그러한 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을 수락하도록 충돌 당사자들에게 제의할 수 있다.

제36조 이익보호국 부제시의 조정

1. 이익보호국이 지정되지 않은 충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을 제공하거나 조정 또는 중개의 다른 형식에 의하여 행동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장은 당사자 또는 사무국장의 권유에 따라 적절하다면 충돌 당사자 이외의 국가의 영토상에서 충돌 당사자들에게 문화재 보호에 책임있는 당국을 비롯한 대표자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제37조 번역 및 보고

1. 당사자들은 본 의정서를 그들의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이 공식번역본을 사무국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매 4년마다 본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책임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본 의정서의 여하한 규정도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최종조항

제39조 언어

본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이 여섯 개의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제40조 서명

본 의정서에는 1999년 3월 26일의 일자가 부여된다. 본 의정서는 1999년 3월 17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헤이그에서 모든 체약국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1조 비준, 수락 또는 인준

1. 본 의정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한 체약국들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인준되어야 한다.
2. 비준, 수락 또는 인준 문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2조 가입

1. 본 의정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다른 체약국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가입문서가 사무국장에게 기탁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43조 발효

1. 본 의정서는 20번째의 비준, 수락, 인준 또는 가입 문서가 기탁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2. 그 후, 본 의정서는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비준, 수락, 인준 또는 가입 문서가 기탁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제44조 무력충돌시의 발효

협약 제18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상황은 충돌 또는 점령이 개시되기 전 또는 후에 그 충돌 당사자에 의하여 기탁된 본 의정서의 비준, 수락, 인준 또는 가입에 대하여 즉각적인 효력을 부여한다. 그러한 경우, 사무국장은 제46조에 언급된 통고를 최대한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45조 탈퇴

1. 각 당사자는 본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되는 서면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3. 탈퇴는 탈퇴 문서가 수령된 후 일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기간이 만료하는 시기에 탈퇴한 당사자가 무력충돌에 연루되는 경우, 탈퇴는 충돌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문화재의 송환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중 보다 늦은 시기까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46조 통고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들과 국제연합에 대하여 제41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비준, 수락, 인준 또는 가입 문서 및 제45조에 규정된 탈퇴 문서의 기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국제연합에의 등록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의정서는 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9년 3월 26일 헤이그에서 작성되고, 그 단일의 정본이 유네스코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등본들은 모든 체약국들에게 송부되어야 함.

4. 1954년 헤이그 협약의 1999년 2차 의정서 실행을 위한 지침⁴⁾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9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년 헤이그 협약의 1999년 2차 의정서 실행을 위한 지침서

I. 서론

I.A 1954년 헤이그 협약이 1999년 2차 의정서 실행을 위한 지침서

1. 이 지침서의 주요 목적은 2차 의정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위원회와 2차 의정서에 의해 수립된 기능의 수행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I.B 2차 의정서의 적용 범위

6. 2차 의정서는 무력 충돌시 문화재의 존중과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헤이그 협약을 보완한다.(2차 의정서 5조-9조)
7. 2차 의정서는 강화된 보호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재는 강화된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강화된 보호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강화된 보호하의 문화재 목록(이하 문화재 목록)에 등재되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2차 의정서 10-14조)

III. 강화된 보호

III.A 강화된 보호의 승인

기준

31. 위원회는 만약 2차 의정서에 열거된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문화재를 강화된보호하에 둘 수 있다.
(2차 의정서 10조)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중요성을 지닌다.
32. 문화재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건별로 그 특출한 문화적 중요성, 독창성 그리고 그 파괴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가져올 것인지를 평가할 것이다. (2차 의정서 10조 (a))

4)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67/186742E.pdf>의 원문자료를 번역함.

33. 국가적, 지역적,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특출한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 중요성은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서 추론된다.
-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한 시기 혹은 그 이상의 인류의 발전을 보여주는 탁월한 문화재
 - 인류 창조성의 걸작품
 - 현재 살아있거나 사라지고 있는 문명 혹은 문화전통의 탁월한 예
 - 세계 문화 영역 내에서 혹은 어느 한 시기에 걸친 예술과 과학의 발전에서 인간 성취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 관련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 것
34. 문화재는 동일한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비교할 만한 다른 문화재가 없는 독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독창성은 다음의 다양한 기준에서 추론된다.
- 연대
 - 역사
 - 공동체
 - 대표성
 - 위치
 - 크기와 면적
 - 형태의 순수성과 진정성
 - 통합성
 - 상호관계(context)
 - 예술적 장인
 - 미적 가치
 - 과학적 가치
35. 인류문화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기준은 해당 문화재의 훼손이나 파괴가 인류의 문화다양성 혹은 문화유산의 피해를 가져올 경우이다.
36. 위원회는, 다른 관련 고려와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문화재가 인류문화를 위한 가장 중요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37. 기록 유산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문화재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보호를 위한 적절한 국내의 법적 행정적 수단

38. 문화유산은 탁월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적행정적 수단에 의해 보호받는다. 탁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에 따른 보호는 2차 의정서 12조의 당사국의 의무를 고려한다. (2차 의정서 10조 (b)와 12조)

군사적 사용 금지

42. 문화재는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 2차 의정서 3조에 따라 이 조항은 또한 평화시에도 적용된다.(2차 의정서 10조 (C))

43. 특히 권한을 부여받은 무장정비대에 의한 문화재 보호 혹은 그러한 문화재 주변의 공공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은 경찰병력의 주둔은 일반적으로 '군사적 목적의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협약 8조 4항)

강화된 보호의 승인을 위한 절차

44. 가입 당사국은 당사국의 사법권이나 관리하의 문화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등록목록을 유지하고 수립하는 위원회는 각각의 경우에 위의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강화된 보호의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무국은 강화 보호 요청서(부록 1)를 준비했다.
45. 요청서는 사무국을 거쳐 위원회에 송부된다.
47. 당국은 요청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에 자문을 구한다. 당국은 요청서(평가서 첨부)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결정을 제안할 수 있다. (2차 의정서 11조 5항)
48. 일단 위원회가 요청서를 받으면 등록 목록에 포함을 신청한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다.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요청과 관련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이 설명서는 10조에 언급된 기준을 토대로 작성되며 사실과 구체적이고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2차 의정서 11조 5항)
49.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요청 당사국에게 대응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때, 설명서를 참조한다.
50. 예외적으로, 만약 문화재가 10조 (b)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관리권 혹은 사법권을 지닌 당사국에게 32조에 따른 국제적 지원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차 의정서의 11조 2항 과 8항 및 32조 1항)
51. 위원회는 목록에 문화재를 등록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ICBS와 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기타 NGO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국들은 목록에 포함되도록 위원회에 문화재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해당 문화재를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임시목록

52. '임시목록'은 당사국이 강화된 보호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문화재의 목록이다. 위원회가 목록의 업데이트와 유지 그리고 국제적 지원을 위한 요청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임시 목록 제출이 권장된다. 당사국은 필요하면 임시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가 임시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사국이 그 문화재를 위한 강화된 보호 승인을 요청할 수없는 것은 아니다.
53. 임시목록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당사국에 의해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된다.

요청 목차

54. 당사국이 제출하는 요청서는 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문화재의 확인

55. 부동산 문화재와 그 주변환경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지도에 후보 지역이나 건축물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동산 문화재는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이미지로 확인되어야 한다.

56. 문화재의 위치(동산 문화재의 피난처 혹은 보관장소 포함)는 지리적 위치로 표시되어야 한다. 최소한 각 문화재의 대략적인 중심지가 UTM좌표로 표시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문화재의 구역 경계는 문화재 경계 추세를 나타내는 위도와 경도 좌표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표시될 수 있다. 동산 문화재의 경우, 이 정보는 문화재가 보관되어있거나 보관될 장소를 언급한다.

b. 문화재의 설명

57. 당사국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현재 보존상태, 문화재의 외관, 역사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문화재가 어떻게 현재 형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와 거쳐 온 중요한 변화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그 정보는 문화재가 제10조 (a)항의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화재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실증하고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제공한다.

c. 문화재 보호

58. 당사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유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대책 목록도 포함해야 한다. 이는 보호수단의 실제적 실행과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와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합법적, 규제적 혹은 제도적 텍스트나 텍스트의 요약본이 요청서에 첨부된다. 정보는 해당 문화재가 10조 (b)항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제공한다.

d. 문화재의 활용

59. 당사국은 문화재 활용에 대해 기술한다.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을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 방어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요청서에 첨부된다. 이 정보는 해당 문화재가 10조 (c)항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제공한다.

e. 책임당국에 관한 정보

60. 상세한 책임당국의 연락처가 요청서에 기재된다.

f. 당사국을 대신한 사인

g. 요청서 형식

긴급 요청

63. 만약 당사국이 적대행위 발발에 대해 요청을 제출한다면 이 요청은 11조 9항에 따라 ‘긴급 요청’으로 간주된다. 이 긴급요청은 64-62 항에 나와 있는 a, b, c, d, e, f, g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청의 철회

64. 당사국은 검토가 예정된 이루어질 위원회 회기 전 어느 때나 제출된 서면 요청서를 철회할 수 있다. 해당 당사국은 문화재를 위한 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새 요청서로 간주될 것이다.

69. 위원회는 즉각적으로 목록에 문화재를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다시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UN 사무총장과 2차 의정서 모든 가입국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한다. (2차 의정서 11조 11항)

강화된 보호에 대한 예외적 결정

73. 위원회는, 만약 당사국이 2차 의정서의 32조에 따른 국제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10조 b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화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강화된 보호를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10조 b항에 따라 관련 당사국에게 자문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강화된 보호를 승인하기 위해 위원회는 66-72조에 제시된 절차에 따른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10조 a와 10조 c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고 당사국은 요청서를 이미 제출했음을 지적한다. (2차 의정서 11조 8항)
74. 만약 10조 b에 명시된 기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국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면 강화된 보호는 위원회에 의해 유보된다.
75. 적대행위 발발시, 긴급상황에서 임시적인 강화된 보호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 의해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결정은 통상적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강화된 보호를 승인할 수 있다. 임시적인 강화된 보호는 만약 10조 a와 c에 기술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승인된다. 문화재에 대한 임시적인 강화된 보호 승인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강화된 보호에 따른 문화재 목록에 해당 문화재의 임시 등록의 statement"를 채택한다. 이 statement에는 적대행위의 발발이 통상적 절차를 거칠 여유를 주지 않는지 그리고 문화재가 10조 a와 c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한 위원회의 추론을 요약 정리한다. 임시적인 강화된 보호는 문화재가 목록에 등재되는 순간부터 부여된다. (2차 의정서 11조 9항)

III.B 목록

76. 목록은 다음 두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a. Division 1: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
 - b. Division 2: 일시적인 강화된 보호 하의 문화재
77. 각 문화재는 두 가지 중 한 부분에 속한다.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보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a. 문화재의 이름과 확인
 - b. 문화재에 대한 설명
 - c. 문화재의 위치, 경계 및 주변 환경
 - d. 기타 관련 정보
78. 상기 조항의 d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특히 목록 등재 날짜, 예외적 혹은 긴급 상황에 대한 설명,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과 권고사항 그리고 유보 혹은 취소 뿐만 아니라 기간과 같은 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상태 등을 포함한다.

강화된 보호 요청서(양식)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

3B 문화재 상세설명

3C 문화재 보호

3D 문화재의 활용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신청자는 아래 기준을 완전히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 i.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ii. 탁월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적절한 국내의 법적 행정적 수단에 의해 보호받는다(2차 의정서 10조 b). 지침서 58조에 따라 목록1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 iii.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직책

날짜

IV. 가입 당사국 현황과 국가별 사례분석

1. 가입 당사국 현황

1). 1954년 헤이그 협약 가입 당사국 현황⁵⁾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The Hague, 14 May 1954.1

States	Date of deposit of instrument	Type of instrument
--------	-------------------------------	--------------------

- | | | | |
|----|------------------------|------------|--------------|
| 1 | Egypt | 17/08/1955 | Ratification |
| 2 | San Marino | 09/02/1956 | Ratification |
| 3 | Myanmar | 10/02/1956 | Ratification |
| 4 | Mexico | 07/05/1956 | Ratification |
| 5 | Hungary | 17/05/1956 | Ratification |
| 6 | Poland | 06/08/1956 | Ratification |
| 7 | Bulgaria | 07/08/1956 | Accession |
| 8 | Ecuador | 02/10/1956 | Ratification |
| 9 | Russian Federation | 04/01/1957 | Ratification |
| 10 | Ukraine | 06/02/1957 | Ratification |
| 11 | Belarus | 07/05/1957 | Ratification |
| 12 | France | 07/06/1957 | Ratification |
| 13 | Jordan | 02/10/1957 | Ratification |
| 14 | Israel | 03/10/1957 | Ratification |
| 15 | Libyan Arab Jamahiriya | 19/11/1957 | Ratification |
| 16 | Cuba | 26/11/1957 | Ratification |
| 17 | Monaco | 10/12/1957 | Ratification |
| 18 | Holy See | 24/02/1958 | Accession |
| 19 | Syrian Arab Republic | 06/03/1958 | Ratification |
| 20 | Romania | 21/03/1958 | Ratification |
| 21 | Thailand | 02/05/1958 | Accession |
| 22 | Italy | 09/05/1958 | Ratification |
| 23 | India | 16/06/1958 | Ratification |
| 24 | Brazil | 12/09/1958 | Ratification |
| 25 | Netherlands | 14/10/1958 | Ratification |

5) <http://erc.unesco.org/cp/convention.asp?KO=13637&language=E>

- 26 Pakistan 27/03/1959 Accession
- 27 Iran (Islamic Republic of) 22/06/1959 Ratification
- 28 Nicaragua 25/11/1959 Ratification
- 29 Dominican Republic 05/01/1960 Accession
- 30 Liechtenstein 28/04/1960 Accession
- 31 Lebanon 01/06/1960 Ratification
- 32 Spain 07/07/1960 Ratification
- 33 Ghana 25/07/1960 Accession
- 34 Belgium 16/09/1960 Ratification
- 35 Guinea 20/09/1960 Accession
- 36 Malaysia 12/12/1960 Accession
- 37 Albania 20/12/1960 Accession
- 38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8/04/1961 Accession
- 39 Mali 18/05/1961 Accession
- 40 Nigeria 05/06/1961 Accession
- 41 Norway 19/09/1961 Ratification
- 42 Luxembourg 29/09/1961 Ratification
- 43 Cameroon 12/10/1961 Accession
- 44 Madagascar 03/11/1961 Accession
- 45 Gabon 04/12/1961 Accession
- 46 Cambodia 04/04/1962 Ratification
- 47 Switzerland 15/05/1962 Accession
- 48 Panama 17/07/1962 Accession
- 49 Austria 25/03/1964 Ratification
- 50 Cyprus 09/09/1964 Accession
- 51 Mongolia 04/11/1964 Accession
- 52 Turkey 15/12/1965 Accession
- 53 Indonesia 10/01/1967 Ratification
- 54 Germany 11/08/1967 Ratification
- 55 Iraq 21/12/1967 Ratification
- 56 Morocco 30/08/1968 Accession
- 57 Kuwait 06/06/1969 Accession
- 58 Burkina Faso 18/12/1969 Accession
- 59 Yemen 06/02/1970 Accession
- 60 Sudan 23/07/1970 Accession
- 61 Saudi Arabia 20/01/1971 Accession
- 62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3/09/1971 Accession

- 63 Qatar 31/07/1973 Accession
- 64 Niger 06/12/1976 Accession
- 65 Oman 26/10/1977 Accession
- 66 Côte d'Ivoire 24/01/1980 Ratification
- 67 Tunisia 28/01/1981 Accession
- 68 Greece 09/02/1981 Ratification
- 69 Australia 19/09/1984 Ratification
- 70 Sweden 22/01/1985 Accession
- 71 Guatemala 02/10/1985 Accession
- 72 Senegal 17/06/1987 Accession
- 73 Argentina 22/03/1989 Accession
- 74 Peru 21/07/1989 Accession
- 75 Croatia 06/07/1992 Notification of succession
- 76 Tajikistan 28/08/1992 Notification of succession
- 77 Georgia 04/11/1992 Notification of succession
- 78 Slovenia 05/11/1992 Notification of succession
- 79 Czech Republic 26/03/1993 Notification of succession
- 80 Slovakia 31/03/1993 Notification of succession
- 81 Bosnia and Herzegovina 12/07/1993 Notification of succession
- 82 Armenia 05/09/1993 Notification of succession
- 83 Azerbaijan 20/09/1993 Accession
- 84 Finland 16/09/1994 Accession
- 85 Estonia 04/04/1995 Accession
- 86 Kyrgyzstan 03/07/1995 Accession
- 87 Uzbekistan 21/02/1996 Accession
- 88 Kazakhstan 14/03/1997 Notification of succession
- 89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30/04/1997 Notification of succession
- 90 Costa Rica 03/06/1998 Accession
- 91 Zimbabwe 09/06/1998 Accession
- 92 Colombia 18/06/1998 Accession
- 93 Lithuania 27/07/1998 Accession
- 94 Canada 11/12/1998 Accession
- 95 Uruguay 24/09/1999 Ratification
- 96 Republic of Moldova 09/12/1999 Accession
- 97 China 05/01/2000 Accession
- 98 Portugal 04/08/2000 Ratification
- 99 Rwanda 28/12/2000 Accession

-
- 100 El Salvador 19/07/2001 Ratification
 - 101 Serbia 11/09/2001 Notification of succession
 - 102 Botswana 03/01/2002 Accession
 - 103 Barbados 09/04/2002 Accession
 - 104 Honduras 25/10/2002 Accession
 - 105 Denmark 26/03/2003 Ratification
 - 106 Seychelles 08/10/2003 Accession
 - 107 Equatorial Guinea 19/11/2003 Accession
 - 108 South Africa 18/12/2003 Accession
 - 109 Latvia 19/12/2003 Accession
 - 110 Sri Lanka 11/05/2004 Accession
 - 111 Eritrea 06/08/2004 Accession
 - 112 Paraguay 09/11/2004 Accession
 - 113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17/11/2004 Accession
 - 114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09/05/2005 Accession
 - 115 Bangladesh 23/06/2006 Accession
 - 116 Mauritius 22/09/2006 Accession
 - 117 Montenegro 26/04/2007 Notification of succession
 - 118 Japan 10/09/2007 Ratification
 - 119 Chad 17/06/2008 Accession
 - 120 New Zealand 24/07/2008 Ratification
 - 121 Bahrain 26/08/2008 Accession
 - 122 Chile 11/09/2008 Accession
 - 123 United States of America 13/03/2009 Ratification

This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on 7 August 1956. It subsequently entered into force for each Stat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at State's instrument, except in cases of notifications of succession, where the entry into force occurred on the date on which the State assumed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its international relations.

2). 1999년 제2 의정서 가입 당사국 현황⁶⁾

Second Protocol to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he Hague, 26 March 1999.1

States Date of deposit of instrument Type of instrument

- 1 Bulgaria 14/06/2000 Ratification
- 2 Qatar 04/09/2000 Ratification
- 3 Belarus 13/12/2000 Ratification
- 4 Panama 08/03/2001 Accession
- 5 Azerbaijan 17/04/2001 Ratification
- 6 Cyprus 16/05/2001 Ratification
- 7 Nicaragua 01/06/2001 Accession
- 8 Spain 06/07/2001 Ratification
- 9 Libyan Arab Jamahiriya 20/07/2001 Accession
- 10 Argentina 07/01/2002 Accession
- 11 Austria 01/03/2002 Ratification
- 12 Lithuania 13/03/2002 Accession
- 13 El Salvador 27/03/2002 Accession
- 14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9/04/2002 Accession
- 15 Serbia 02/09/2002 Accession
- 16 Honduras 26/01/2003 Accession
- 17 Gabon 29/08/2003 Accession
- 18 Mexico 07/10/2003 Accession
- 19 Equatorial Guinea 19/11/2003 Accession
- 20 Costa Rica 09/12/2003 Accession
- 21 Slovakia 11/02/2004 Ratification
- 22 Slovenia 13/04/2004 Accession
- 23 Switzerland 09/07/2004 Ratification
- 24 Ecuador 02/08/2004 Ratification
- 25 Finland 27/08/2004 Acceptance
- 26 Paraguay 09/11/2004 Accession
- 27 Estonia 17/01/2005 Approval
- 28 Guatemala 04/02/2005 Accession

6) <http://erc.unesco.org/cp/convention.asp?KO=15207&language=E>

- 29 Greece 20/04/2005 Ratification
- 30 Iran (Islamic Republic of) 24/05/2005 Accession
- 31 Peru 24/05/2005 Ratification
- 32 Luxembourg 30/06/2005 Ratification
- 33 Egypt 03/08/2005 Ratification
- 34 Brazil 23/09/2005 Accession
- 35 Nigeria 21/10/2005 Ratification
- 36 Hungary 26/10/2005 Ratification
- 37 Canada 29/11/2005 Accession
- 38 Croatia 08/02/2006 Ratification
- 39 Tajikistan 21/02/2006 Accession
- 40 Armenia 18/05/2006 Ratification
- 41 Niger 16/06/2006 Accession
- 42 Romania 07/08/2006 Ratification
- 43 Uruguay 03/01/2007 Accession
- 44 Netherlands 30/01/2007 Acceptance
- 45 Montenegro 26/04/2007 Notification of succession
- 46 Czech Republic 08/06/2007 Accession
- 47 Japan 10/09/2007 Accession
- 48 Saudi Arabia 06/11/2007 Accession
- 49 Bahrain 26/08/2008 Accession
- 50 Chile 11/09/2008 Accession
- 51 Barbados 02/10/2008 Accession
- 52 Dominican Republic 03/03/2009 Accession
- 53 Jordan 05/05/2009 Accession
- 54 Bosnia and Herzegovina 22/05/2009 Accession
- 55 Italy 10/07/2009 Ratification
- 56 Germany 25/11/2009 Ratification

1This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9 March 2004. It subsequently will entered into force for each Stat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at State' s instrument, except in cases of notifications of succession, where the entry into force occurred on the date on which the State assumed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its international relations.

2. 국가별 사례분석⁷⁾

1) 스위스

1-1) 정부

- 1962년 Hague Convention 가입 비준
- 1966년 전시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스위스 연방의 법률제정하여 실행
- 1999년 제2차 의정서에도 서명, 국내법 개정
- 정부차원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구, 연방사무국설치(Fede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문화재 보호과(Sec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utral Property)가 핵심부서
- 중앙정부에서 주별로 재정적지원, 문화재현황 파악, 명령과 지침 하달, 문화재보호 책임관에 대한 훈련 실시
- 문화재보호책임관 각주에 파견- 보호대상문화재의 목록 작성, 백업문서제작, 대피훈련 주관

1-2) 군대

- 스위스군대-각 사단 및 여단급부대의 국제법무과에서 담당, 연방정부나 각 자치주 문화재보호과와 긴밀한 협조
- 국제법무과에서 문화재목록 작성
 - 일선부대 일차작성→ 자치주 의회→ 정부→스위스연방정부 승인 - 승인된 문화재에만 예산지원 하달
- 군 관계자, 자치 주 문화재담당 공무원, 연방정부관계자 동시에 모여 보호대상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A급(nation)과 B급(Regional)로 구분하기위한 회의를 10년 주기로 갖음
- 대피소 준비(약 270여개소)
- 보호대상문화재관련자료 총44,000건 보관(문서, 마이크로필름)
- 예산지원 연방정부 20~30%, 각 주 부담(군은 비용부담 없음-인원제공)
- 군법에 문화재공격, 방어수단 활용도 금지(전 군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쟁시, 평화시 문화재 보호관련 교육 규정)
-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학교 및 단체에 제공(대상 목록, 법규 등 웹에고지)

2) 레바논

- 군에서의 조치 미약
- 정부 1949년 전시 제네바 협정에 서명
- 1954년의 헤이그협정에 서명
- 1999년 제2차 의정서 서명 **않함**

7)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7. 『전쟁법·전쟁사 분석을 통한 전시문화재 보호방안 연구』

- 1966년 헤이그 협정을 이행하기위한 국내법 제정(국내전쟁으로 지켜지지않음)
- 1966년 당시 1700년 이전에 생겨난 모든 물건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지정
- 정부 및 지역부서에서 문화재목록 및 조치 담당

3) 오스트리아

- 1964년 1954년 헤이그 의정서 가입
- 1999년 제2차 의정서 가입 않은 상태
- 1900년대 말부터 1980년 초반 구체적 방안 강구
- 전시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보호방안으로 문화재보호장교(Cultural Property Protection Officer) 임명, 각 군단급에 2명씩 배속(역사적,법률적 전문가, 군사전문가)

4) 슬로베니아

- 1954년 헤이그 의정서 가입
- 1970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문화재 보호 관련 의정서에 서명,
- 1999년 제2차 의정서 서명
- 문화재목록 작성, 1980년대 말부터 지름 30cm크기의 “CULTURAL MONUMENT” 혹은 “CULTURAL PROPERTY” 표식들이 슬로베니아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부착. 전국 7,110여개의 주요문화재 중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 부착
- 문화재에 대한 각종 기록카드, 재건을 위한 자료 확보 보관
- 슬로베니아 군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표식이 문화재를 파괴 혹은 손상을 자극하는 부정적 효과 초래한다는 의견에 표식을 잠시중단
- 그러나 표식이 문화재 보호의 긍정적이라는 결론 도출.
- 단, 군대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추진하거나 실시하는 방안을 공개하지 않음(2000년 이후 표식에 박차를 가함)

5) 미 국

- 1954년 헤이그 협약, 1999년 제2차 의정서 거부 의사 명확히 해 옴
- 2009.3. 1954년 헤이그 협약 가입
- 국내법으로 전쟁시 사유재산의 보호규정이 존재
- 육군의 교범 - 전쟁시, 평화시 사유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 금지, 국유 및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을 규정
- 1977년<미국 국방부 훈령(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5100.77>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념인

군사적 필요성(Military Necessity)의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음

- 미군 해군이 걸프전쟁기간 동안 발행한<Naval Warfare Publication 1-14M>, 공군에서 발행한 <Air Force Pamphlet 110-31> 문화재보호에 관한 지침이 있었음
 - 전시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를 규정하나 예외 규정이 너무 지나침

V. 등재기준 및 목록

1. 등재기준

문화재 등재기준에 대해서는 각 의정서와 지침상에 제시되어 있으나 특별문화재의 경우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대상 문화재목록의 범위에는 국내법상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 2의정서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하여 언급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문화재 보호대상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를 1차 대상으로 하였으며, 목록의 작성은 동산문화재와 관련 자료들을 보관 할 수 있는 대피소, 문화재집중지구, 기타부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현황(2010.3.31. 문화재청 자료)

지 정 별	수 량	동산문화재
국보	314	222점
보물	1,614	1,005점
사적	490	
명승	68	
천연기념물	404	
중요무형문화재	114	
중요민속자료	261	
총	3,265	

강화된 보호문화재 대상은 협약과 지침서의 내용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류사적으로 중요하며 법적 조치를 받고 있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현황 (2010.3.31. 문화재청 자료)

구 분	문 화 재 명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 해인사 장경판전 / 종묘 / 창덕궁 / 수원화성 / 경주역사유적지구 / 고인돌유적 / 안동하회마을/월성 양동마을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 직지심체요절 / 승정원일기 / 조선왕조의궤 /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세계무형유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1)법적근거

1-1)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및 동협약의 시행규칙(헤이그, 1954.5.14)

시행규칙

제12조 특별보호하의 문화재의 국제명부

1.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국제명부’ 가 작성되어야 한다.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은 이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는 그 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체약국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이 명부는 체약국명에 따라 절로 구분되어야 한다. 각 절은 대피시설, 문화재집중지구, 기타 부동산 문화재의 세 가지의 향으로 구분되어야한다. 사무국장은 각 향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한다.

1-2)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위한 협약에대한 제2의정서 (헤이그, 1999년 3월 26일)

제10조 강화된 보호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문화재는 강화된 보호 하에 두어져야한다.

- a. 그것이 인류에게 중요성이 큰 문화유산일 것.
- b. 그것이 특별한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준 높은 보호를 확보하는 적절한 국내의 법적 및 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을 것.
- c. 그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또는 은폐된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 문화재를 통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그것이 그와 같이 사용되지 않을것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있는 경우.

제11조 강화된 보호의 부여

1. 각 당사자는 강화된 보호를 요청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재의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화재에 대하여 관할권 또는 통제권을 갖는 당사자는 그것이 제27조 제1항 (b)에 따라 작성되는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제10조에 언급된 기준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로 하여금 문화재가 목록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2. 보호대상 문화재목록

1) 특별보호대상 문화재목록

1-1)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국제명부 작성대상 : 총 1,333점

○ 대피시설 : 126개소

- 선정기준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
- 기관별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자료의 보관이 용이한 곳

- 대 상

- 국립박물관 (16개소), 국립도서관(1개소), 국립문화재연구소(7개소)
- 대학박물관(30개소), 대학도서관(7개소), 시,도박물관(16개소)
- 기관·연구원·국가기록원(6개소)
- 사찰 126개소 중 (24개소)
 - *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중 23곳(신흥사와 고운사 제외), 구인사
- 서원(3개소), 사립미술관(3개소), 사립박물관(12개소), 사립도서관(1개소)
- 기타(문중, 지자체,기관,단체) - 46개소는 대피소 126개소에 분산보관

① 대피시설(126개소)

번호	소장처	소재지
	국립박물관 (16)	
1	국립춘천박물관	강원 춘천시 우석로 88 국립춘천박물관
2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구산동 230 국립김해박물관
3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진주시 남성동 171-1 국립진주박물관
4	국립경주박물관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국립경주박물관
5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북구 박물관로 114 국립광주박물관
6,7	국립(중앙,진주)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 . 경남 진주시, 서울 용산구, 경기도 성남시
8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수성구 황금1동 산41 국립대구박물관
9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10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사직로 34 국립고궁박물관
11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국립민속박물관
12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893 국립전주박물관
13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제주시 삼사석로 11 국립제주박물관
14	국립공주박물관	충남 공주시 웅진동 360 국립공주박물관
15	국립부여박물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 국립부여박물관

16	국립청주박물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87 국립청주박물관
17	궁중유물전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34(세종로 1-57) 궁중유물전시관
	국립도서관 (1)	
19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60-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기타) (2)	
20	국립국악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 국립국악원
21	육군박물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박물관
	시·도 박물관 (16)	
22	강릉시오죽헌립박물관	강원 강릉시 죽헌동 177-4 강릉시립박물관
23	수원역사박물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역사박물관
24	수원박물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창룡문길 443번지
25	경기도박물관	경기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경기도박물관
26	경산시립박물관	경북 경산시 미래길 16 (사동 655-1번지)경산시립박물관
27	문경새재박물관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242-1 문경새재박물관
28	상주박물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 18-7 상주박물관
29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 북구 용봉동 1004-4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30	대전선사박물관	대전 유성구 노은동길 100번지 대전선사박물관
3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남구 대연동 948-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3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50 서울역사박물관
3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34	강화역사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40 강화역사관내부
35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목천면 남화리 230 독립기념관
36	청주고인쇄박물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청주고인쇄박물관
37	충주박물관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47 충주박물관
	사립박물관 (12)	
38	충현박물관	경기 광명시 소하2동 1086 충현박물관
39	목아불교박물관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6-2 목아불교박물관
40	The AMORE MUSEUM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4-1 태평양박물관
41	청곡사문화박물관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 청곡사(청곡사문화박물관)
42	불교중앙박물관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교중앙박물관
43	한솔종이박물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주)한솔제지(한솔종이박물관)
44	허준박물관	서울 강서구 가양(加陽)2동 26-5 구암공원 안허준박물관
45	호림박물관	서울 관악구 미성동 1707 호림박물관
46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서울 종로구 원서동 108-4 한국불교미술박물관
47	성암고서박물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성암고서박물관
48	가천박물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85-8 가천박물관

49	한독의약박물관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 한독의약박물관
	사립미술관 (3)	
50	해강도자미술관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330-1 해강도자미술관
51	호암미술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52	리움미술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8-18 리움미술관
53	사립도서관 (1)	
54	선경도서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선경도서관
	대학박물관 (30)	
55	중앙승가대학교	경기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56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57	명지대학교박물관	경기 용인시 남동 산38-2 명지대학교박물관
5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9	해군사관학교	경남 진해시 앵곡동 해군사관학교박물관
60	영남대학교박물관	경북 경산시 대동 214-41 영남대학교박물관
61	안동대학교박물관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박물관
62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63	경북대학교박물관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박물관
64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동아대학교박물관
65	서울대학교규장각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103동
66	세종대학교	서울광진구군자동산2
67	건국대학교박물관	서울 광진구 모진동 93 건국대학교박물관
68	육군사관학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30-30 육군박물관
69	숭실대학교박물관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1 숭실대학교박물관
70	홍익대학교박물관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박물관
71	서강대학교박물관	서울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박물관
72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73	연세대학교박물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박물관
74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박물관, 부산시 서구 동아대학교
75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249-1 성신여대박물관
76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성북구 안암동 1 고려대학교박물관
77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53 숙명여대박물관
7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3 단국대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79	성균관대학교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53 성균관대학교박물관
80	동국대학교박물관	서울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박물관
81	제주대학교	제주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82	충북대학교박물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충북대학교박물관
	대학도서관 (7)	

83	영남대학교도서관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도서관
84	계명대학교도서관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 동산도서관
85	경북대학교도서관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도서관 고서실
86	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도서관
87	연세대학교도서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88	고려대학교도서관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89	동국대학교도서관	서울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도서관
	기관/연구원 (5)	
90	국사편찬위원회	경기 과천시 중앙동 2-6 국사편찬위원회
91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92	한국국학진흥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20 한국국학진흥원
93	국가기록원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산126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
94	충남역사문화원,국사편 찬위원회	충남 공주시 금홍동 110-2번지 충남역사문화원
	사찰 (25)	
95	월정사 <제 4교구본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월정사
96	봉선사 <제25교구본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97	용주사 <제 2교구본사>	경기 화성시 태안면 송산리 188 용주사
98	통도사 <제15교구본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99	쌍계사 <제13교구본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쌍계사
100	해인사 <제12교구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101	불국사 <제11교구본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102	직지사 <제 8교구본사>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직지사
103	은혜사 <제10교구본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55 은혜사
104	동화사 <제 9교구본사>	대구 동구 도학동 35 동화사
105	범어사 <제14교구본사>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범어사
106	화엄사 <제19교구본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107	송광사 <제21교구본사>	전남순천시송광면신평리12 송광사
108	대흥사 <제22교구본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흥사

109	선운사 <제24교구본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선운사
110	금산사정보박물관 <제17교구본사>	전북남원시산내면입석리산32
111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112	마곡사 <제 6교구본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113	수덕사 <제 7교구본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114	구인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구인사
115	법주사 <제 5교구본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116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옥산서원
117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118	임고서원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462 임고서원
119	덕수궁	서울 중구 정동 5-1 덕수궁
120	국립문화재연구소(7개소)	

② 문화재집중지구

고도보존법에 따른 역사도시

사적(400)

② 문화재집중지구

번호	종 목	사적명	소재지	총 계	국 보	보 물	민 속
1	사적 제448호	강릉굴산사지(江陵崛山寺址)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외	2		2	
2	사적 제388호	강릉임영관지(江陵臨瀛館址)	강원 강릉시 용강동 58-1	1	1		
3	사적 제490호	강릉초당동유적(江陵草堂洞 遺蹟)	강원 강릉시 초당동 84-2 등				
4	사적 제426호	고성문암리선사유적(高城文 岩里先史遺蹟)	강원 고성군 죽암면 문암리 1번지외				
5	사적 제421호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三陟 頭陀山李承休遺墟)	강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785번지 외				
6	사적 제376호	속초조양동선사유적(束草朝 陽洞先史遺蹟)	강원 속초시 조양동 산142외 9필				
7	사적 제495호	양양낙산사일원(襄陽洛山寺 一圓)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일원	2		2	
8	사적 제394호	양양오산리선사유적(襄陽鰲 山里先史遺蹟)	강원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60외				
9	사적 제196호	장릉(莊陵)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3-1				
10	사적	영월정양산성(寧越正陽山城)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제446호		정양리 산1-1외 8필				
11	사적 제466호	원주법천사지(原州法泉寺址)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 외				
12	사적 제168호	거둔사지(居頓寺址)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	1		1	
13	사적 제439호	원주강원감영지(原州江原監 營址)	강원 원주시 일산동 54-1				
14	사적 제447호	원주영원산성(原州領願山城)	강원 원주시 관부면 금대리 산50-2외 1필				
15	사적 제489호	춘천신매리유적(春川新梅里 遺蹟)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등				
16	사적 제037호	오대산사고지(五臺山史庫址)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2	2		
17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碧蹄館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				
18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北漢山城行 宮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19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北漢山城)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외 서울 은평구,성북구	1		1	
20	사적 제198호	서오릉(西五陵)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21	사적 제200호	서삼릉(西三陵)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22	사적 제191호	고려공양왕릉(高麗恭讓王陵)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 산65-6				
23	사적 제056호	행주산성(幸州山城)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				
24	사적 제357호	영회원(永懷園)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				
25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南漢山城行宮)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외				
26	사적 제057호	남한산성(南漢山城)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				
27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廣州朝 鮮白磁陶窯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외 1읍 5개면				
28	사적 제364호	명빈묘(明嬪墓)	경기 구리시 아천동 산14				
29	사적 제193호	동구릉(東九陵)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1				
30	사적 제342호	군포산본동조선백자요지(軍 浦山本洞朝鮮白磁窯址)	경기 군포시 산본동 147				
31	사적 제292호	덕포진(德浦鎭)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				
32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文殊山城)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1				
33	사적	장릉(章陵)	경기 김포시 풍무동				

V. 등재기준 및 목록

	제202호		산141-1				
34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洪陵·裕陵)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35	사적 제209호	사릉(思陵)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65-1				
36	사적 제365호	성묘(成墓)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5				
37	사적 제363호	광해군묘(光海君墓)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9외				
38	사적 제366호	안빈묘(安嬪墓)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66				
39	사적 제356호	순강원(順康園)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외				
40	사적 제360호	휘경원(徽慶園)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외				
41	사적 제197호	광릉(光陵)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2				
42	사적 제367호	영빈묘(寧嬪墓)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43	사적 제115호	화령전(華寧殿)	경기 수원시 장안구 신흥동 92-2				
44	사적 제003호	화성(華城)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45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華城行宮)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번지 외				
46	사적 제413호	시흥방산동청자·백자요지(始興芳山洞靑磁·白磁窯址)	경기 시흥시 방산동 370-1외				
47	사적 제441호	시흥오이도유적(始興烏耳島遺蹟)	경기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등				
48	사적 제210호	온릉(溫陵)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19				
49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檜巖寺址)	경기 양주시 회암동 산14				
50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英陵·寧陵)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1		1	
51	사적 제251호	파사성(婆娑城)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8-10				
52	사적 제382호	여주고달사지(驪州高達寺址)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외	3		3	
53	사적 제468호	연천당포성(漣川堂浦城)	경기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 등				
54	사적 제223호	숭의전지(崇義殿址)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7				
55	사적 제244호	신라경순왕릉(新羅敬順王陵)	경기 연천군 백학면 고량포리 산18-2				
56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漣川瓠蘆古壘)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등				

57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지(全谷里先史遺蹟址)	경기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178-1				
58	사적 제469호	연천은대리성(漣川隱垓里城)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 등				
59	사적 제140호	독산성및세마대지(禿山城및洗馬臺址)	경기 오산시 지곶동 162-1 외				
60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龍仁寶亭洞古墳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61	사적 제329호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	경기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23-1외				
62	사적 제423호	이천설봉산성(利川雪峯山城)	경기 이천시 사음동 산 24번지외				
63	사적 제323호	윤관장군묘(尹瓘將軍墓)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일원				
64	사적 제359호	수길원(綏吉園)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6외				
65	사적 제358호	소령원(昭寧園)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외				
66	사적 제464호	파주용미리혜음원지(坡州龍尾里惠蔭院址)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234-1 일원				
67	사적 제148호	파주덕은리주거지및지석묘군 (坡州德隱里住居址및支石墓群)	경기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산46				
68	사적 제389호	파주가월리및주월리구석기유 적(坡州佳月里및舟月里舊石器遺蹟)	경기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외, 주월리 309외				
69	사적 제437호	파주칠중성(坡州七重城)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외				
70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坡州三陵)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71	사적 제203호	장릉(長陵)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25-1				
72	사적 제351호	파주오두산성(坡州烏頭山城)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외				
73	사적 제403호	포천반월성지(抱川半月城址)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산5-1외				
74	사적 제269호	광주미사리선사유적(廣州溪沙里先史遺蹟)	경기 하남시 미사동 557외				
75	사적 제352호	하남춘궁동동사지(河南春宮洞桐寺址)	경기 하남시 춘궁동 457-3	2		2	
76	사적 제422호	하남이성산성(河南二聖山城)	경기 하남시 춘궁동 산 36번지외				
77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華城馬霞里百濟古墳群)	경기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외				
78	사적 제217호	당성(唐城)	경기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				
79	사적	용릉·건릉(隆陵·健陵)	경기 화성시 안녕동 산1-1				

	제206호					
80	사적 제299호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堤 岩里3·1運動殉國遺蹟)	경기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2-4			
81	사적 제484호	거제현관아(巨濟縣 官衙)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546 등 일원			
82	사적 제239호	거창둔마리벽화고분(居昌屯 馬里壁畵古墳)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298-1			
83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固城松鶴 洞古墳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3-5			
84	사적 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固城內山 里古墳群)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88-10			
85	사적 제075호	김해구산동고분군(金海龜山 洞古墳群)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86	사적 제074호	수로왕비릉(首露王妃陵)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87	사적 제429호	김해구지봉(金海龜旨峰)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번지 일원			
88	사적 제261호	김해예안리고분군(金海禮安 里古墳郡)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			
89	사적 제341호	김해대성동고분군(金海大成 洞古墳群)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			
90	사적 제002호	김해봉황동유적(金海鳳凰洞 遺蹟)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외			
91	사적 제073호	수로왕릉(首露王陵)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2			
92	사적 제066호	분산성(盆山城)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9			
93	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金海良洞 里古墳群)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등			
94	사적 제232호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觀 音浦李忠武公戰歿遺墟)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			
95	사적 제233호	남해충렬사(南海忠烈祠)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			
96	사적 제472호	마산진동리유적(馬山鎭東里 遺蹟)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130 외			
97	사적 제459호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密陽 古法里朴翊壁畵墓)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 134내			
98	사적 제450호	사천늑도유적(泗川勒島遺蹟)	경남 사천시 늑도동			
99	사적 제214호	전구형왕릉(傳仇衡王陵)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			
100	사적 제108호	목면시배유지(木棉始培遺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			
101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曹植遺蹟)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사리 산72			

102	사적 제100호	양산법기리도요지(梁山法基里陶窯址)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82				
103	사적 제098호	양산북부동산성(梁山北部洞山城)	경남 양산시 북부동, 남부동, 중부동, 다방동				
104	사적 제093호	양산북정리고분군(梁山北亭里古墳群)	경남 양산시 북정동 697				
105	사적 제094호	양산신기리고분군(梁山新基里古墳群)	경남 양산시 신기동 29				
106	사적 제097호	양산신기리산성(梁山新基里山城)	경남 양산시 신기동, 호계동, 북정동				
107	사적 제095호	양산중부동고분군(梁山中部洞古墳群)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산1				
108	사적 제118호	진주성(晋州城)	경남 진주시 남성동, 본성동				
109	사적 제164호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晋州平居洞高麗古墳群)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산44-2				
110	사적 제291호	진해우체국(鎭海郵遞局)	경남 진해시 통신동 1				
111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昌寧 飛鳳里貝塚)	경남 창녕군 비봉리 43번지 일원				
112	사적 제169호	영산석빙고(靈山石氷庫)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산10-2				
113	사적 제080호	창녕교동고분군(昌寧校洞古墳群)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129				
114	사적 제0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昌寧松峴洞古墳群)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0-1				
115	사적 제065호	목마산성(牧馬山城)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				
116	사적 제064호	화왕산성(火旺山城)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	4		4	
117	사적 제327호	의창다호리고분군(義昌茶戶里古墳群)	경남 창원시 동읍 다호리 237-3				
118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성산패총(馬山外洞城山貝塚)	경남 창원시 외동 86-1				
119	사적 제236호	통영충렬사(統營忠烈祠)	경남 통영시 명정동 213외	9		9	
120	사적 제402호	통제영지(統制營址)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외				
121	사적 제335호	통영연대도패총(統營煙臺島貝塚)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24-17외				
122	사적 제113호	한산도이충무공유적(閑山島李忠武公遺蹟)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875				
123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河東邑城)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51일원				
124	사적 제151호	하동고소성(河東姑蘇城)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31				

125	사적 제0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咸安道項里古墳群)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126	사적 제0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咸安末山里古墳群)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25-2				
127	사적 제067호	함안성산산성(咸安城山山城)	경남 함안군 함안읍 괴산리, 가야읍 광정리 569				
128	사적 제322호	황석산성(黃石山城)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153-2				
12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咸陽 濫溪書院)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				
130	사적 제152호	함양사근산성(咸陽沙斤山城)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60				
131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합천 海印寺)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등	72	30	37	5
132	사적 제131호	합천영암사지(陝川靈岩寺址)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659	3		3	
133	사적 제326호	합천옥전고분군(陝川玉田古墳群)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3외				
134	사적 제218호	압량유적(押梁遺蹟)	경북 경산시 압량면 압량리 179				
135	사적 제300호	경산임당동고분군(慶山林堂洞古墳群)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136	사적 제331호	경산조영동고분군(慶山造永洞古墳群)	경북 경산시 조영동,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일원				
137	사적 제159호	이견대(利見臺)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1				
138	사적 제043호	경주금척리고분군(慶州金尺里古墳群)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139	사적 제025호	경주부산성(慶州富山城)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95				
140	사적 제019호	경주계림(慶州鷄林)	경북 경주시 교동 1				
141	사적 제188호	신라내물왕릉(新羅奈勿王陵)	경북 경주시 교동 14				
142	사적 제340호	경주천관사지(慶州天官寺址)	경북 경주시 교동 244				
143	사적 제246호	재매정(財買井)	경북 경주시 교동 89-7				
144	사적 제350호	경주구정동고분군(慶州九政洞古墳群)	경북 경주시 구정동 145-1				
145	사적 제027호	경주구정리방형분(慶州九政里方形墳)	경북 경주시 구정동 산41				
146	사적 제006호	황룡사지(皇龍寺址)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				
147	사적 제138호	서출지(書出池)	경북 경주시 남산동 973				

148	사적 제186호	신라정강왕릉(新羅定康王陵)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53				
149	사적 제187호	신라헌강왕릉(新羅憲康王陵)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55				
150	사적 제220호	희강왕릉(僖康王陵)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34				
151	사적 제190호	전민애왕릉(傳閔哀王陵)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40				
152	사적 제023호	신라경덕왕릉(新羅景德王陵)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산8				
153	사적 제038호	경주노동리고분군(慶州路東里古墳群)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154	사적 제039호	경주노서리고분군(慶州路西里古墳群)	경북 경주시 노서동 104				
155	사적 제263호	경주동방와요지군(慶州東方瓦窯址群)	경북 경주시 동방동 343-4				
156	사적 제185호	신라신무왕릉(新羅神武王陵)	경북 경주시 동방동 660				
157	사적 제029호	신라헌덕왕릉(新羅憲德王陵)	경북 경주시 동천동 80				
158	사적 제174호	신라탈해왕릉(新羅脫海王陵)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 17				
159	사적 제221호	지마왕릉(祗摩王陵)	경북 경주시 배동 30				
160	사적 제001호	경주포석정지(慶州鮑石亭址)	경북 경주시 배동 454-3				
161	사적 제219호	배리삼릉(拜里三陵)	경북 경주시 배동 73-1				
162	사적 제222호	경애왕릉(景哀王陵)	경북 경주시 배동 산73-1				
163	사적 제181호	신라신문왕릉(新羅神文王陵)	경북 경주시 배반동 453-1				
164	사적 제008호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	경북 경주시 배반동 935-2				
165	사적 제007호	망덕사지(望德寺址)	경북 경주시 배반동 956	1		1	
166	사적 제183호	신라효공왕릉(新羅孝恭王陵)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 14				
167	사적 제163호	경주낭산(慶州狼山)	경북 경주시 보문동 214-2				
168	사적 제180호	신라진평왕릉(新羅眞平王陵)	경북 경주시 보문동 608				
169	사적 제390호	경주보문리사지(慶州普門里寺址)	경북 경주시 보문동 848-6외	3		3	
170	사적 제182호	신라선덕여왕릉(新羅善德女王陵)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79-2				

171	사적 제096호	경주읍성(慶州邑城)	경북 경주시 북부동 1				
172	사적 제015호	경주흥륜사지(慶州興輪寺址)	경북 경주시 사정동 281-1				
173	사적 제142호	서악리고분군(西岳里古墳群)	경북 경주시 서악동 750				
174	사적 제020호	신라무열왕릉(新羅武烈王陵)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				
175	사적 제178호	신라진지문성왕릉(新羅眞智文聖王陵)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 92-2				
176	사적 제179호	신라헌안왕릉(新羅憲安王陵)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 92-2				
177	사적 제177호	신라진흥왕릉(新羅眞興王陵)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 92-2번지 일원	2		2	
178	사적 제088호	경주성동리전랑지(慶州城東里殿廊址)	경북 경주시 성동동 4				
179	사적 제430호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慶州蓀谷洞·勿川里遺蹟)	경북 경주시 손곡동,물천리 일원				
180	사적 제154호	옥산서원(玉山書院)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3		3	
181	사적 제030호	신라흥덕왕릉(新羅興德王陵)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통리 산42				
182	사적 제158호	문무대왕릉(文武大王陵)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				
183	사적 제031호	경주감은사지(慶州感恩寺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2	2		
184	사적 제045호	경주장항리사지(慶州獐項里寺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1	1	1		
185	사적 제026호	경주괘릉(慶州掛陵)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능리 산17	10		10	
186	사적 제046호	경주원원사지(慶州遠願寺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	1		1	
187	사적 제048호	관문성(關門城)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울산 북구 달천동,중산동				
188	사적 제328호	경주용강동고분(慶州龍江洞古墳)	경북 경주시 용강동 1130-2외				
189	사적 제018호	경주임해전지(慶州臨海殿址)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				
190	사적 제016호	경주월성(慶州月城)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191	사적 제042호	경주인왕리고분군(慶州仁旺里古墳群)	경북 경주시 인왕동 669-1				
192	사적 제457호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慶州日精橋地·月精橋地)	경북 경주시 인왕동 921-1외, 교동 274 등				
193	사적 제022호	경주남산성(慶州南山城)	경북 경주시 인왕동,탑동,남산동,배반동,				

			매동				
194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慶州南山一圓)	경북 경주시 인왕동외4개동, 경주군내남 면용장리의외2개리				
195	사적 제028호	신라성덕왕릉(新羅聖德王陵)	경북 경주시 조양동 산8				
196	사적 제184호	신라효소왕릉(新羅孝昭王陵)	경북 경주시 조양동 산8				
197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慶州 佛國寺)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번지 등	33	31	2	
198	사적 제082호	경주천군리사지(慶州千軍里 寺址)	경북 경주시 천군동 548-1	1		1	
199	사적 제047호	명활산성(明活山城)	경북 경주시 천군동, 보문동				
200	사적 제241호	월성화산리회유토기요지(月 城花山里灰釉土器窯址)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42-1				
201	사적 제021호	김유신묘(金庾信墓)	경북 경주시 충효동 산7-10				
202	사적 제172호	신라오릉(新羅五陵)	경북 경주시 탑동 67				
203	사적 제245호	경주나정(慶州蘿井)	경북 경주시 탑동 700-1				
204	사적 제173호	신라일성왕릉(新羅逸聖王陵)	경북 경주시 탑동 산23				
205	사적 제024호	신라진덕여왕릉(新羅眞德女 王陵)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				
206	사적 제161호	경주동부사적지대(慶州東部 史蹟地帶)	경북 경주시 황남동 104-1				
207	사적 제0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慶州皇南 里古墳群)	경북 경주시 황남동 6-1				
208	사적 제175호	신라미추왕릉(新羅味鄒王陵)	경북 경주시 황남동 89-2				
209	사적 제419호	경주용강동원지유적(慶州龍 江洞苑址遺蹟)	경북 경주시 황성동 251-28, 용강동181외				
210	사적 제476호	경주황성동석실분(慶州 隍城洞 石室墳)	경북 경주시 황성동 906-5				
211	사적 제041호	경주황오리고분군(慶州皇吾 里古墳群)	경북 경주시 황오동 102-3				
212	사적 제017호	경주남고루(慶州南古壘)	경북 경주시 황오동 21-1외 77필				
213	사적 제176호	신라법흥왕릉(新羅法興王陵)	경북 경주시 효현동 63				
214	사적 제165호	고령고아동벽화고분(高靈古 衙洞壁畵古墳)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산13				
215	사적 제061호	고령주산성(高靈主山城)	경북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3외 29필				
216	사적	고령지산동고분군(高靈池山	경북 고령군 고령읍				

V. 등재기준 및 목록

	제079호	洞古墳群)	지산리 산8				
217	사적 제072호	성산기산동도요지(星山箕山 洞陶窯址)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동 산81				
218	사적 제071호	성산사부동도요지(星山沙鳧 洞陶窯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동 산16				
219	사적 제336호	선산낙산리고분군(善山洛山 里古墳群)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98-4외				
220	사적 제470호	구미황상동고분군(龜尾黃桑 洞古墳群)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68 외				
221	사적 제374호	군위인각사지(軍威麟角寺址)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외	2		2	
222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聞慶關門(第1,第2, 第3關門및附屬城壁))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55	2			2
223	사적 제348호	태백산사고지(太白山史庫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산126-5				
224	사적 제477호	상주복룡동유적(尙州伏龍洞 遺蹟)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일원				
225	사적 제086호	성주성산동고분군(星州星山 洞古墳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61				
226	사적 제444호	성주세종대왕자태실(星州世 宗大王子胎室)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				
227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陶山書院)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2		2	
228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屏山書院)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229	사적 제055호	소수서원(紹修書院)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	5	1	4	
230	사적 제491호	금성대군신단(錦城大君神壇)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번지 일원				
231	사적 제313호	순흥읍내리벽화고분(順興邑 內里壁畵古墳)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산29-1				
232	사적 제238호	순흥어숙묘(順興於宿墓)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95				
233	사적 제216호	가산산성(架山山城)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				
234	사적 제386호	영일장기읍성(迎日長基邑城)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7-2외				
235	사적 제493호	법광사지(法光寺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967번지 일원				
236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光州新昌洞 遺蹟)	광주 광산구 신창동 512-1				
237	사적 제141호	광주충효동도요지(光州忠孝 洞陶窯址)	광주 북구 금곡동 179-5				
238	사적 제411호	대구진천동입석(大邱辰泉洞 立石)	대구 달서구 진천동 470-38외				
239	사적	도동서원(道東書院)	대구 달성군 구지면	1		1	

	제488호		도동리 35번지				
240	사적 제262호	대구불로동고분군(大邱不老洞古墳群)	대구 동구 불노동 335				
241	사적 제290호	대구계산동성당(大邱桂山洞聖堂)	대구 중구 계산동2가 71				
242	사적 제062호	대구달성(大邱達城)	대구 중구 달성동 294-1				
243	사적 제442호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舊大邱醫學專門學校本館)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101				
244	사적 제443호	구도립대구병원(舊道立大邱病院)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50				
245	사적 제355호	대덕계족산성(大德鷄足山城)	대전 대덕구 장동 산85				
246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金井山城)	부산 금정구 금성동 일원				
247	사적 제192호	동래패총(東萊貝塚)	부산 동래구 낙민동 100-1				
248	사적 제273호	동래복천동고분군(東萊福泉洞古墳群)	부산 동래구 복천동 일원				
249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東三洞貝塚)	부산 영도구 동삼동 750-1				
250	사적 제455호	아차산일대보루군(阿且山一帶堡壘群)	서울 : 광진구 · 중랑구 · 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251	사적 제199호	선릉 · 정릉(宣陵 · 靖陵)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				
252	사적 제267호	암사동선사주거지(岩寺洞先史住居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155				
253	사적 제372호	양천고성지(陽川古城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산8-4외				
254	사적 제254호	구벨기에영사관(舊벨기에領事館)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95-13				
255	사적 제247호	사당동백제요지(舍堂洞百濟窯址)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1				
256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阿且山城)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16-46,구의동 산1-2				
257	사적 제343호	한우물및주변산성지(한우물 및周邊山城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83-1외				
258	사적 제201호	태릉 · 강릉(泰陵 · 康陵)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3-19				
259	사적 제440호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8-3 외, 도봉구 창동 산202-1 외				
260	사적 제362호	연산군묘(燕山君墓)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77				
261	사적 제436호	선농단(先農壇)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				

262	사적 제361호	영취원(승인원포함) (永徽園(崇仁園包含))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2외				
263	사적 제399호	양화나루 · 잠두봉유적 (楊花나루 · 蠶頭峰遺蹟)	서울 마포구 합정동 96-1 번지외				
264	사적 제275호	연세대학교스팀슨관 (Stimson Hall) (延世大學校스팀슨館 (Stimson Hall))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265	사적 제277호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Appenzeller Hall) (延世大學校아펜젤라館 (Appenzeller Hall))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266	사적 제276호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Underwood Hall)(延世大學校언더우드館(Underwood Hall))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267	사적 제324호	구서울구치소(舊서울拘置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268	사적 제032호	독립문(獨立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				
269	사적 제033호	영은문주초(迎恩門柱礎)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5				
270	사적 제194호	헌릉 · 인릉(獻陵 · 仁陵)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271	사적 제160호	전곶교(箭串橋)	서울 성동구 행당동 58				
272	사적 제204호	의릉(懿陵)	서울 성북구 석관동 1-5				
273	사적 제083호	선잠단지(先蠶壇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64-1				
274	사적 제285호	고려대학교본관 (高麗大學校本館)	서울 성북구 안암동 1				
275	사적 제286호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서울 성북구 안암동 1	10	1	9	
276	사적 제208호	정릉(貞陵)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87-16				
277	사적 제270호	방이동백제고분군 (芳荑洞百濟古墳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산47-4				
278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石村洞百濟初期積石塚)	서울 송파구 석촌동 61-6				
279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夢村土城)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3				
280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三田渡碑)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281	사적 제011호	광주풍납리토성(廣州風納里土城)	서울 송파구 풍납동 72-1외				
282	사적 제255호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龍山神學校와元曉路聖堂)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				
283	사적 제330호	효창공원(孝昌公園)	서울 용산구 효창동,청파동2가및마포구 신공덕동,공덕동				
284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郵征總局)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7				
285	사적 제283호	중앙고등학교동관 (中央高等學校東館)	서울 종로구 계동 1				
286	사적 제281호	중앙고등학교본관 (中央高等學校本館)	서울 종로구 계동 1				
287	사적 제282호	중앙고등학교서관(中央高等 學校西館)	서울 종로구 계동 1				
288	사적 제461호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수 표교지,오간수문지)(서울淸溪 川遺蹟(廣通橋址,水標橋址,五 間水門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270-1외, 중구 남대문로 9 외				
289	사적 제228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유지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遺 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3				
290	사적 제149호	육상궁(지상건물일체포함)(毓祥宮(地上建物一切包含))	서울 종로구 궁정동 1-1				
291	사적 제010호	서울성곽(서울城郭)	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1-3외				
292	사적 제278호	구서울대학교본관(舊서울大 學校本館)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293	사적 제279호	구공업전습소본관 (舊工業傳習所本館)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1				
294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보물 및 현대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시설물포함) (서울文廟一圓(寶物및現代建 築物을除外한地上施設物包含))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	5		5	
295	사적 제121호	서울사직단(서울社稷壇)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8	1		1	
296	사적 제117호	경복궁(景福宮)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12	2	10	
297	사적 제171호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高宗卽位40年稱慶紀念碑)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				
298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慶熙宮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26				
299	사적 제438호	안국동윤보선가(安國洞尹潽 善家)	서울 종로구 안국동 8-1외				

300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大韓醫院)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301	사적 제237호	함춘원지(含春苑址)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21				
302	사적 제123호	창경궁(昌慶宮)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8	1	7	
303	사적 제122호	창덕궁(비원포함) (昌德宮(秘苑包含))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7	1	6	
304	사적 제257호	운현궁(雲峴宮)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10				
305	사적 제296호	관상감관천대(觀象監觀天臺)	서울 종로구 원서동 206-2				
306	사적 제497호	이화장(梨花莊)	서울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307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탑골公園)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	1		1	
308	사적 제465호	서울경교장(서울京橋莊)	서울 종로구 평동 108-1				
309	사적 제125호	종묘(宗廟)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2	1	1	
310	사적 제280호	한국은행본관(韓國銀行本館)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110				
311	사적 제258호	명동성당(明洞聖堂)	서울 중구 명동2가 1-8				
312	사적 제284호	서울역사(서울驛舍)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313	사적 제157호	환구단(圜丘壇)	서울 중구 소공동 87-1				
314	사적 제253호	구러시아공사관(舊러시아公 使館)	서울 중구 정동 15-1				
315	사적 제256호	정동교회(貞洞教會)	서울 중구 정동 32-2				
316	사적 제124호	덕수궁(德壽宮)	서울 중구 정동 5-1	4	1	3	
317	사적 제252호	약현성당(藥峴聖堂)	서울 중구 중림동 149-2				
318	사적 제129호	천황산요지군(天皇山窯址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1				
319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彦陽邑城)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320	사적 제332호	울주검단리유적 (蔚州檢丹里遺蹟)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외				
321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蔚山兵營城)	울산 중구 서동 149-8외				
322	사적 제306호	갑곶돈(甲串墩)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0외				

323	사적 제424호	성공회강화성당(聖公會江華聖堂)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324	사적 제133호	강화고려궁지(江華高麗宮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325	사적 제224호	고려고종홍릉(高麗高宗洪陵)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80				
326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江華山城)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27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江華外城)	인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328	사적 제130호	삼랑성(三郎城)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	2		2	
329	사적 제225호	초지진(草芝鎭)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				
330	사적 제227호	광성보(廣城堡)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3				
331	사적 제226호	덕진진(德津鎭)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46				
332	사적 제259호	강화선원사지(江華仙源寺址)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33				
333	사적 제369호	석릉(碩陵)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				
334	사적 제371호	곤릉(坤陵)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335	사적 제370호	가릉(嘉陵)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6-2				
336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江華支石墓)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337	사적 제136호	참성단(塹星壇)	인천 강화군 화도면 홍왕리 산42-1				
338	사적 제211호	인천녹청자도요지 (仁川綠靑磁陶窯址)	인천 서구 검암동 산438-21				
339	사적 제287호	인천답동성당(仁川沓洞聖堂)	인천 중구 답동 3-1				
340	사적 제068호	강진대구면도요지 (康津大口面陶窯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외				
341	사적 제107호	정다산유적(丁茶山遺蹟)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103-2				
342	사적 제397호	전라병영성지(全羅兵營城址)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19-1외				
343	사적 제492호	광양마로산성(光陽馬老山城)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8번지 외1				
344	사적 제407호	광양옥룡사지일원 (光陽玉龍寺址一圓)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302외				
345	사적	구례 화엄사(구례 華嚴寺)	전남 구례군 마산면	9	1	8	

	제505호		황전리 12번지 등				
346	사적 제106호	석주관칠의사묘 (石柱關七義士墓)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171				
347	사적 제385호	구례석주관성(求禮石柱關城)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산65외 12필지				
348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羅州牧 官衙와 鄉校)	전남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 일원				
349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羅州邑城)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외				
350	사적 제404호	나주복암리고분군 (羅州伏岩里古墳群)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3-17외				
351	사적 제076호	나주대안리고분군 (羅州大安里古墳群)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352	사적 제078호	나주덕산리고분군 (羅州德山里古墳群)	전남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473				
353	사적 제077호	나주신촌리고분군 (羅州新村里古墳群)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산41				
354	사적 제456호	나주오량동토기요지 (羅州五良洞土器窯地)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27번지 일원				
355	사적 제353호	담양금성산성(潭陽金城山城)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대성리 등				
356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영사관()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5				
357	사적 제395호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務安도리포高麗靑瓷埋藏海 域)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바다				
358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樂安邑城)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9			9
359	사적 제506호	순천 송광사(순천 松廣寺)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등	24	3	21	
360	사적 제507호	순천 선암사(순천 仙岩寺)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번지 등	14		13	1
361	사적 제458호	순천월평구석기유적 (順天月坪舊石器遺蹟)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월평마을) 189-1외 일원				
362	사적 제418호	순천검단산성(順天檢丹山城)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산84				
363	사적 제274호	송원대유물매장해역 (宋元代遺物埋藏海城)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해상				
364	사적 제381호	여수충민사(麗水忠愍祠)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08외				
365	사적 제392호	여천선소유적(麗川船所遺蹟)	전남 여수시 시전동 708외				
366	사적 제338호	영암구림리토기요지 (靈岩鳩林里土器窯址)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20외				

367	사적 제114호	묘당도이충무공유적 (廟堂島李忠武公遺蹟)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산58				
368	사적 제308호	청해진유적(淸海鎭遺蹟)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				
369	사적 제384호	장성입암산성(長城笠岩山城)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0-2외 57필지				
370	사적 제377호	장성대도리백자요지 (長城大都里白磁窯址)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85외				
371	사적 제406호	황룡전적지(黃龍戰蹟地)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56번지외(17필지)				
372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筆巖書院)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15		15	
373	사적 제498호	장흥석대들전적지 (長興石臺들 戰蹟地)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374	사적 제126호	용장산성(龍藏山城)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				
375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南挑石城)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376	사적 제310호	해남진산리청자요지 (海南珍山里靑磁窯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136외				
377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해남 大興寺)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66번지 등	7		7	
378	사적 제449호	해남군곡리패총(海南郡谷里 貝塚)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379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녹우단(海南尹氏綠 雨壇)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				
380	사적 제432호	해남윤선도유적(海南尹善道 遺蹟)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산181외				
381	사적 제410호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和順孝山里 및 大薪里支石墓群)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68-1외,춘양면 대신리외				
382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일원(和順雲住 寺址一圓)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용강리 산3외	3		3	
383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雙山義所)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12번지 외				
384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高敞邑城)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5			5
385	사적 제391호	고창지석묘군(高敞支石墓群)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산63외				
386	사적 제346호	무장현관아와읍성 (茂長縣 官衙와 邑城)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외 일원				
387	사적 제250호	고창분청사기요지 (高敞粉靑砂器窯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11				
388	사적 제345호	고창용계리청자요지 (高敞龍溪里靑瓷窯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외				

389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향교 (金堤郡 官衙와 鄉校)	전북 김제시 교동 7-3 등 일원				
390	사적 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金堤金山寺일원)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일원	8		8	
391	사적 제111호	김제벽골제비및제방 (金堤碧骨堤碑및堤防)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송리 119				
392	사적 제298호	남원성(南原城)	전북 남원시 동충동 464-1				
393	사적 제309호	실상사일원(實相寺一圓)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3외	9		8	1
394	사적 제349호	만복사지(萬福寺址)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9	4		4	
395	사적 제104호	황산대첩비지(荒山大捷碑址)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344-2				
396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萬人義塚)	전북 남원시 향교동 628				
397	사적 제146호	적상산성(赤裳山城)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				
398	사적 제409호	백산성(白山城)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8-1외				
399	사적 제069호	부안유천리도요지(扶安柳川 里陶窯址)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4				
400	사적 제070호	부안진서리도요지(扶安鎭西 里陶窯址)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56				
401	사적 제103호	부안구암리지석묘군 (扶安龜岩里支石墓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07				
402	사적 제471호	완주위봉산성(完州威鳳山城)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32 외	1		1	
403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益山彌勒寺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1		1	
404	사적 제092호	익산토성(益山土城)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50-3				
405	사적 제318호	화산천주교회(華山天主敎會)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58-6				
406	사적 제087호	익산쌍릉(益山雙陵)	전북 익산시 석왕동 산55, 산56				
407	사적 제408호	왕궁리유적(王宮里遺蹟)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외, 금마면 동고도리 1109-8외				
408	사적 제405호	익산제석사지(益山帝釋寺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외				
409	사적 제347호	익산입점리고분(益山笠店里 古墳)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외				
410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일원(全州鄉校一圓)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3외				
411	사적	남고산성(南固山城)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제294호		동서학동 산228				
412	사적 제288호	전주전동성당(全州殿洞聖堂)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200-1				
413	사적 제339호	경기전(慶基殿)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납동3가 102	6		6	
414	사적 제494호	정읍고사부리성(井邑古沙夫 里城)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 일원				
415	사적 제295호	황토현전적지(黃土峴戰蹟地)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				
416	사적 제293호	전봉준선생고택지(全琫準先 生故宅址)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417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武城書院)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418	사적 제487호	추사유배지(秋史流配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6-1번지 일원				
419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濟州牧 官衙)	제주 제주시 삼도2동 43-3번지 등 일원	1		1	
420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濟州三陽洞先史遺蹟)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660-5외				
421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濟州항파두리抗蒙遺蹟址)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외				
422	사적 제134호	삼성혈(三姓穴)	제주 제주시 이도동 1313 외				
423	사적 제412호	제주고산리선사유적 (濟州高山里先史遺蹟)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424	사적 제474호	공주정지산유적(公州艇止山 遺蹟)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 외				
425	사적 제0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公州宋山 里古墳群)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				
426	사적 제387호	우금치전적지(牛禁峙戰蹟地)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78-1외				
427	사적 제333호	공주학봉리도요지(公州鶴峰 里陶窯址)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외				
428	사적 제012호	공주공산성(公州公山城)	충남 공주시 산성동 2외				
429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公州水村 里古墳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일원				
430	사적 제334호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公州石莊里舊石器遺蹟)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외				
431	사적 제433호	공주장선리토실유적 (公州長善里土室遺蹟)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외				
432	사적 제105호	칠백의총(七百義塚)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52-1				
433	사적 제393호	논산노성산성(論山魯城山城)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1-1외 13필지				

434	사적 제383호	논산돈암서원(論山遁岩書院)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외 5필지	1		1	
435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聖住寺址)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3		3	
436	사적 제501호	충청수영성(忠淸水營城)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번지 일대				
437	사적 제321호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 (竹島앞바다高麗靑磁埋藏海 域)	충남 보령시 주포면 송학리 죽도앞바다				
438	사적 제427호	왕흥사지(王興寺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37-2번지외				
439	사적 제156호	증산성(甓山城)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86				
440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 (扶餘官北里百濟遺蹟)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외				
441	사적 제044호	부여군수리사지(扶餘軍守里 寺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9				
442	사적 제014호	부여능산리고분군(扶餘陵山 里古墳群)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				
443	사적 제420호	부여능안골고분군(夫餘陵安 골古墳群)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75-7외				
444	사적 제034호	부여청마산성(扶餘靑馬山城)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1				
445	사적 제434호	부여능산리사지(扶餘陵山里 寺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1 외				
446	사적 제425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 (扶餘花枝山一圓遺蹟)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번지 외				
447	사적 제135호	궁남지(宮南池)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외				
448	사적 제301호	부여정림사지(扶餘定林寺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1		1	
449	사적 제059호	부여청산성(扶餘靑山城)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				
450	사적 제099호	부여쌍북리요지(扶餘雙北里 窯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				
451	사적 제005호	부여부소산성(扶餘扶蘇山城)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452	사적 제058호	부여나성(扶餘羅城)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453	사적 제089호	부여석성산성(扶餘石城山城)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83				
454	사적 제373호	부여정암리와요지(扶餘亭岩 里瓦窯址)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외				
455	사적 제435호	부여금강사지(扶餘金剛寺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3-1외				
456	사적	부여성흥산성(扶餘聖興山城)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제004호		군사리 산1-1				
457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扶餘松菊里先史聚落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외				
458	사적 제481호	홍산현관아(鴻山縣 官衙)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번지 일원				
459	사적 제316호	서산보원사지(瑞山普願寺址)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5		5	
460	사적 제475호	서산부장리고분군(瑞山副長 里古墳群)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2				
461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海美邑城)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6				
462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舒川鳳仙里遺蹟)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581외				
463	사적 제060호	건지산성(乾芝山城)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3				
464	사적 제109호	아산맹씨행단(牙山孟氏杏壇)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	5			5
465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牙山李忠 武公遺墟)	충남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 산57				
466	사적 제112호	이충무공묘(李忠武公墓)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2-1				
467	사적 제090호	대흥임존성(大興任存城)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8				
468	사적 제229호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梅軒尹奉吉義士事蹟地)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0-1				
469	사적 제230호	유관순열사유적(柳寬順烈士 遺蹟)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38-1				
470	사적 제431호	홍주의사총(洪州義士塚)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124-2 외				
471	사적 제231호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洪州城(朝陽門,衙門,山城))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				
472	사적 제401호	괴산미륵산성(槐山彌勒山城)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8-37외				
473	사적 제417호	괴산우암송시열유적 (槐山尤庵宋時烈遺蹟)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375-3외				
474	사적 제265호	단양적성(丹陽赤城)	충북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산3-1				
475	사적 제264호	단양온달산성(丹陽溫達山城)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7				
476	사적 제398호	단양수양개선사유적 (丹陽水陽개先史遺蹟)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82-1				
477	사적 제235호	삼년산성(三年山城)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1-1				
478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보은 法住寺)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12		12	

479	사적 제325호	진천산수리백제요지 (鎭川山水里百濟窯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196-3				
480	사적 제344호	진천삼룡리백제토기요지 (鎭川三龍里百濟土器窯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룡리 산518-10				
481	사적 제414호	김유신탄생지및태실 (金庾信誕生址및胎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18번지 외 129필지				
482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上黨山城)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28-1				
483	사적 제415호	청주정북동토성(淸州井北洞土城)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351-1번지 외				
484	사적 제319호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산7				
485	사적 제315호	청주흥덕사지(淸州興德寺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486	사적 제463호	충주누암리고분군(忠州樓岩里古墳群)	충북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산41 외 일원				
487	사적 제400호	충주장미산성(忠州薔薇山城)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7-1외				
488	사적 제189호	임충민공충렬사(林忠愍公忠烈祠)	충북 충주시 단월동 385-1				
489	사적 제317호	중원미륵리사지(中原彌勒里寺址)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58				
490	사적 제445호	충주숭선사지(忠州崇善寺址)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송리 862-2외				

③ 기타 부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780점(64지점은 사적과 중복)

③ 기타부동산문화재 소장처별 분류

번호	소장처	소재지	총계	국보	보물	민속	사적유무
	국립박물관 (5)		29	9	20		
1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3 국립광주박물관	1	1			
2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수성구 황금로 200 (70번지) 국립대구박물관	2		2		
3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21	8	13		
4	국립공주박물관	충남 공주시 웅진동 360 국립공주박물관	3		3		
5	국립부여박물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 국립부여박물관	2		2		
	국립(기타) (1)		1		1		

6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유성구 구성동 32-2 국립중앙과학관	1		1		
	시·도 박물관(3)		4		4		
7	강릉시립박물관	강원 강릉시 죽헌동 177-4 강릉시립박물관	1		1		
8	경기도박물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1		1		
9	상주박물관	경북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 상주박물관 전시실내	2		2		
	대학박물관 (3)		6		5	1	
10	영남대학교박물관	경북 경주시 교동 69 영남대학교박물관	1			1	
11	경북대학교박물관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박물관	4		4		
1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산11-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		1		
	사찰 (130)		332	39	273	4	16
13	보현사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171 보현사	2		2		
14	건봉사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8-1	1		1		
15	삼화사	강원 동해시 삼화동 산172	1		1		
16	낙산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낙산사	1		1		●
17	정암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	1		1		
18	도피안사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	1		1		
19	청평사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4	1		1		
20	월정사 <제 4교구본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3	1	1	1	
21	태고사	경기 고양시 북한동 산1-1	1		1		●
22	석남사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석남사	2		2		
23	칠장사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2 칠장사 경내	2		2		
24	회암사	경기 양주시 회천면 회암리 산8-1	3		3		
25	용문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9-6	3		3		
26	신록사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록사	8		8		
27	심복사	경기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15	1		1		
28	선법사	경기 하남시 교산동 산10-3	1		1		
29	무봉사	경남 밀양시 내일동 37 무봉사	1		1		
30	표충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33 표충사	1		1		
31	천황사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	1		1		
32	만어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4 만어사	1		1		
33	내원사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38 내원사	2		2		
34	대원사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포리 1	1		1		

35	법계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증산리 873	1		1		
36	율곡사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4	1		1		
37	용화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595	1		1		
38	미타암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산171-2	1		1		
39	신흥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 산21	2		2		
40	통도사 <제15교구본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3	1	2		
41	관룡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4		4		●
42	불곡사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2	1		1		
43	쌍계사 <제13교구본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 쌍계사	4	1	3		
44	벽송사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산18-1 벽송사	1		1		
45	홍제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21 홍제암	3		3		
46	해인사 <제12교구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해인사	8	4	4		●
47	청량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3 청량사	3		3		
48	불굴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산55-9	1		1		
49	선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4	1		1		
50	환성사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50 환성사	1		1		
51	분황사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	1	1			
52	기림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7	1		1		
53	불국사 <제11교구본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13-5	6	4	2		●
54	석굴암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2	1	1		
55	도리사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도리사	1		1		
56	인각사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613-1	2		2		●
57	지보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상곡리 280	1		1		
58	대율사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691 대율사	1		1		
59	직지사 <제8교구본사>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6		6		
60	수도암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4		4		
61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6	1	5		
62	축서사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축서사	1		1		
63	개목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 개목사	1		1		
64	봉정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5	2	3		
65	유급사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838, 산88	1		1		
66	부석사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9 부석사	5	3	2		
67	성혈사	경북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277 성혈사	1		1		

68	흑석사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산200	1		1		
69	비로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17	2		2		
70	은해사 <제10교구본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49	2	1	1		
71	명봉사	경북 예천군 상북면 명봉리	1		1		
72	청룡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리 520-2	3		3		
73	불영사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122 불영사	2		2		
74	고운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5	1		1		
75	대비사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대비사	1		1		
76	운문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9		9		
77	대적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223	1		1		
78	대전사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1		1		
79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송림사	1		1		
80	보경사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2		2		
81	약사암	광주 동구 운림동 11	1		1		
82	용연사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915	1		1		
83	북지장사	대구 동구 도학동 620	1		1		
84	동화사 <제9교구본사>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1	9		9		
85	범어사 <제14교구본사>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3		3		
86	승가사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2-1	1		1		
87	전등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전등사	2		2		●
88	정수사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90	1		1		
89	금곡사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	1		1		
90	백련사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7	1		1		
91	무위사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2	1	1		
92	능가사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	1		1		
93	태안사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	3		3		
94	화엄사 <제19교구본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7	3	4		●
95	연곡사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354	6	2	4		
96	불회사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999	2		1	1	
97	운흥사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54	1			1	
98	금둔사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2-1 금둔사	1		1		
99	정혜사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716	1		1		

100	송광사 <제21교구본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6	1	5		●
101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48-1 선암사	7		7		●
102	홍국사	전남 여주시 중흥동 17	2		2		
103	불갑사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불갑사	1		1		
104	도갑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4	4	1	3		
105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0	1		1		
106	천관사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	1		1		
107	보림사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50 보림사	8	3	5		
108	대흥사 <제22교구본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823, 산8-1	4	1	3		●
109	미황사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	2		2		
110	유마사	전남 화순군 남면 유마리 400	1		1		
111	운주사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36	3		3		●
112	쌍봉사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195-1	2	1	1		
113	선운사 <제24교구본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97	3		3		
114	금산사 <제17교구본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28-3	11	1	10		●
115	귀신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81 귀신사	1		1		
116	백장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 실상사 백장암	2	1	1		●
117	실상사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7 실상사	8		7	1	●
118	개암사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개암사	1		1		
119	내소사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내소사	1		1		
120	화암사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2		2		
121	위봉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1	1		1		
122	안심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6 안심사	2		2		
123	승림사	전북 익산시 용포면 송천리 5 승림사	1		1		
124	불탑사	제주 제주시 삼양1동 696	1		1		
125	신원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	1		1		
126	갑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8	2		2		
127	동학사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	2		2		
128	마곡사 <제 6교구본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6-2	4		4		
129	관촉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	2		2		
130	무량사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3		3		

131	대조사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산12-1	1		1		
132	개심사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	1		1		
133	수덕사 <제 7교구본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	1	1			
134	장곡사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4	2		2		
135	고산사	충남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	1		1		
136	각연사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8 각연사	3		3		
137	법주사 <제 5교구본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10	3	7		●
138	영국사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9-1 영국사	4		4		
139	반야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51-1	1		1		
140	용암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51-1	2		2		
141	덕주사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1	1		1		
142	용화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16-1 용화사	7		7		
	기타 (7)		40	6	28		6
143	경복궁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12	2	10		●
143	창경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8	1	7		●
143	창덕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7	1	6		●
143	종묘	서울 종로구 훈정동 2-1 종묘	2	1	1		●
143	덕수궁	서울 중구 정동5-1	3	1	2		●
143	나주향교	전남 나주시 교동 32-3	1		1		
143	돈암서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2	1		1		●
	지자체 (251)		384	15	330		39
144	강릉시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181	1		1		●
145	강릉시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731	1		1		●
146	강릉시	강원 강릉시 내곡동 403-2	2		2		
147	강릉시	강원 강릉시 옥천동 334	1		1		
148	강릉시	강원 강릉시 옥천동 43-9	1		1		
149	강릉시	강원 강릉시 용강동 58-1	1	1			●
150	강릉시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1		1		
151	고성군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	1		1		
152	삼척시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	1		1		
153	속초시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24-2	1		1		
154	양양군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1	1		1		
155	양양군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1	1		1		
156	양양군	강원 양양군 서면 황이리 424	2		2		
157	양양군	강원 양양군 서면 황이리 산89	2		2		
158	영월군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	1		1		

159	원주시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44	1		1		
160	원주시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8	1		1		●
161	원주시	강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17-2	2		2		
162	인제군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90-4	1		1		
163	인제군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1		1		
164	춘천시	강원 춘천시 근화동 793-1	1		1		
165	춘천시	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162-2	1		1		
166	홍천군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8-1	1		1		
167	홍천군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8-4	5		5		
168	홍천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회망리 151-7 읍사무소	2		2		
169	홍천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회망리 376-26	1		1		
170	화천군	강원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94	1		1		
171	고양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5	1		1		
172	수원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334	1		1		
173	수원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3-1	1		1		
174	수원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138	1		1		
175	시흥시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140-3	1		1		
176	안성시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5	1		1		
177	안양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1		1		
178	여주군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9-3	1		1		●
179	여주군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20-5	1		1		●
180	여주군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산46-1	1		1		●
181	여주군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2	2		2		
182	용인시	경기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산110	1		1		
183	이천시	경기 이천시 관고동 산64-1	1		1		
184	이천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83-1	1		1		
185	파주시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9	2		2		
186	하남시	경기 하남시 춘궁동 465	1		1		●
187	하남시	경기 하남시 춘궁동 466	1		1		●
188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	1		1		
189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79-14	1		1		
190	거창군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53	1		1		
191	거창군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6-2	1		1		
192	밀양시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	1		1		
193	밀양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진리 412-1	1		1		
194	밀양시	경남 밀양시 청도면 소태리 1138-2	1		1		
195	사천시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홍사리 산48-2	1		1		
196	양산시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718-44	1		1		

197	진주시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567,1673	1		1		
198	진주시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447-1	1		1		
199	진주시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산31	1		1		
200	창녕군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455	1		1		
201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	1		1		
202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	1		1		
203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	1		1		
204	함안군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산131	1		1		
205	함안군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39	3		3		
206	함양군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768-6	1		1		
207	함양군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263	1		1		
208	함양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17	1		1		
209	합천군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1		1		●
210	합천군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9, 산1-1	1		1		●
211	합천군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659	4		4		●
212	합천군	경남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 90-3	1		1		
213	합천군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1, 365-1	2		2		
214	경주시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	1		1		
215	경주시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72, 산79	1		1		
216	경주시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89	1	1			
217	경주시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856-7	1		1		
218	경주시	경북 경주시 구황동 103	1	1			
219	경주시	경북 경주시 남산동 227-3	2		2		
220	경주시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	7	7			
221	경주시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65-1	3		3		
222	경주시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875-2	1		1		
223	경주시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1-1	3		3		
224	경주시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4	1		1		
225	경주시	경북 경주시 마동 101-2,101-3	1		1		
226	경주시	경북 경주시 배반동 964-2	1		1		●
227	경주시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8-3	1		1		
228	경주시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66-2	1		1		
229	경주시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72-6	1		1		
230	경주시	경북 경주시 보문동 752-2	1		1		●
231	경주시	경북 경주시 보문동 848-16	1		1		●
232	경주시	경북 경주시 보문동 856-3	1		1		●
233	경주시	경북 경주시 서악동 1006-1	1		1		

234	경주시	경북 경주시 서악동 705-1	1		1		
235	경주시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4-1	1	1			
236	경주시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92-1	1		1		
237	경주시	경북 경주시 성건동 129-1	1		1		
238	경주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54	1	1			
239	경주시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7	1		1		
240	경주시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9	2		2		
241	경주시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	1		1		
242	경주시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3, 55-9	2	2			●
243	경주시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3	1	1			●
244	경주시	경북 경주시 외동읍 패릉리 산17,611-4	10		10		●
245	경주시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3	2		2		●
246	경주시	경북 경주시 울동 산60-1	1		1		
247	경주시	경북 경주시 인왕동 449-1	1		1		
248	경주시	경북 경주시 인왕동 산56	1		1		
249	경주시	경북 경주시 천군동 550-2, 550-3	1		1		●
250	경주시	경북 경주시 탑동 858-6	1		1		
251	경주시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234-2	1		1		
252	경주시	경북 경주시 황남동 240-3	1		1		
253	경주시	경북 경주시 효현동 419-1	1		1		
254	고령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532	1		1		
255	고령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3-5	1		1		
256	구미시	경북 구미시 남통동 산33	1		1		
257	구미시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837-4	1		1		
258	구미시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25-1	1		1		
259	구미시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90-14	1		1		
260	김천시	경북김천시 남면 오봉리 65-1	1		1		
261	김천시	경북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 산71	1		1		
262	문경시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47-1	1		1		
263	봉화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91	2		2		
264	상주시	경북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857, 417-4	1		1		
265	상주시	경북 상주시 서성동 163-48	1		1		
266	상주시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258-3	2		2		
267	상주시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699	1		1		
268	성주군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산11-2	1		1		
269	안동시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3		3		
270	안동시	경북 안동시 성곡동 산225-1	1		1		
271	안동시	경북 안동시 안기동 152-13	1		1		
272	안동시	경북 안동시 운흥동 231	1		1		

273	안동시	경북 안동시 이천동 산2	1		1		
274	안동시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9-2	1		1		
275	안동시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108	1		1		
276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	1		1		
277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835	1		1		
278	영주시	경북 영주시 가흥동 2-15	1		1		
279	영주시	경북 영주시 가흥동 264-2	4		4		
280	영주시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1	2		2		
281	영주시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2		2		●
282	영주시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8	1		1		●
283	영주시	경북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 160-2	1		1		
284	영주시	경북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439-30,산106	1		1		
285	영천시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498	1		1		
286	영천시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499	1		1		
287	예천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	1		1		
288	예천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74-4	2		2		
289	울진군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94-1	1		1		
290	의성군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889	1		1		
291	의성군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1		1		
292	청도군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653	1		1		
293	청도군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108-1	2		2		
294	청도군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719-5	1		1		
295	청도군	경북 청도군 화양면 동천리 285	1		1		
296	광주시	광주 남구 구동 16-2	1		1		
297	광주시	광주 동구 지산동 448-4	1		1		
298	달성군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2	1		1		
299	서울특별시	서울 은평구 역촌동 8-12	1		1		
300	은평구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산51	1		1		
301	종로구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2-1	1		1		
302	종로구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5		5		●
303	종로구	서울 종로구 사직동 1-38	1		1		●
304	종로구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1	1		1		
305	종로구	서울 종로구 신영동 218-9	1		1		
306	종로구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3	1		1		●
307	종로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1		1		
308	울주군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1		1		
309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리 1420	1		1		
310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리 산16-3	2		2		

311	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 학성동 100	1		1		
312	강화군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584	1		1		
313	강화군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	1		1		
314	강진군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1, 815-1	1		1		
315	강진군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	1		1		
316	곡성군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2	1		1		
317	광양시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90-1	1		1		
318	구례군	전남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51-1	1		1		
319	나주시	전남 나주시 대호동 824(삼향사 경내)	1		1		
320	나주시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124-11	8		8		
321	나주시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1		1		
322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 593-2	1		1		
323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	1		1		
324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342	1		1		
325	보성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154-1	1		1		
326	보성군	전남 보성군 북내면 봉천리 767-1	1		1		
327	보성군	전남 보성군 읍어면 유신리 산125-1	1		1		
328	보성군	전남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326-17	1		1		
329	순천시	전남순천시낙안면상송리산2-1	1		1		
330	여수시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0	2		2		
331	영암군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산85	1		1		
332	영암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533-1	1		1		
333	영암군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산26-8	1		1		
334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	1		1		
335	군산시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2		2		
336	남원시	전북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18	1		1		
337	남원시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	12		12		
338	남원시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2-1	1		1		●
339	남원시	전북 남원시 용담읍 왕정리 494-11	1		1		●
340	남원시	전북 남원시 용담읍 왕정리 533	1		1		●
341	남원시	전북 남원시 용담읍 왕정리 481-1	1		1		●
342	남원시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92-1	1		1		
343	남원시	전북 남원시 천거동 75	1		1		
344	익산시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3-1, 79, 80-2	2		2		●
345	익산시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00-2, 동고도리 1086	2		2		
346	익산시	전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220-2	1		1		
347	임실군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734	1		1		

348	전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83-4	1		1		
349	전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1	1		1		
350	전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02번지	6		6		●
351	정읍시	전북 정읍시 망제동 산9-2	1		1		
352	정읍시	전북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116, 110-5, 110-6	2		2		
353	정읍시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43	1		1		
354	정읍시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2-2	1		1		
3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 제주시 삼도2동 983-1	1		1		●
356	공주시	충남 공주시 반죽동 302-2	1		1		
357	논산시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	3		3		
358	당진군	충남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687-1	4		4		
359	보령시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3		3		●
360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1		1		●
361	부여군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536	1		1		
362	서산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992	1		1		●
363	서산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1	1		1		●
364	서산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2	2		2		●
365	서산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50	1		1		●
366	서천군	충남 서천군 인치면 성북리 182-1	1		1		
367	아산시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1	1		1		
368	아산시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5, 255-1	1		1		
369	예산군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산62-3	1		1		
370	예산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	1		1		
371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90-2	1		1		
372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234	1		1		
373	천안시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산28-1	1		1		
374	청양군	충남 청양군 정사년 서정리 16-2	1		1		
375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37	3		3		
376	홍성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0-1	1		1		
377	홍성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7-15	1		1		
378	괴산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24-2	1		1		
379	괴산군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385-2	1		1		
380	단양군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71-11	1		1		
381	영동군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향리 135-1	1		1		
382	제천시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	1		1		
383	제천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1		1		
384	제천시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읍리 산8-14	1		1		

385	제천시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1	1		1		
386	진천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485-4	1		1		
387	청원군	충북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산46-3	1		1		
388	충주시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27	1		1		
389	충주시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7-6	1		1		
390	충주시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2	2		2		
391	충주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6	1		1		
392	충주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8	1		1		
393	충주시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360-1	1		1		

2) 강화된 보호대상 문화재 목록

세 계 문 화 유 산	· 종묘	잠 정 목 록
	· 창덕궁	· 중부지역 고대산성
	· 수원화성	· 강진 도요지
	· 석굴암과 불국사	· 공주 및 부여 역사유적지구
	· 경주역사유적지구	· 대곡천암각화
	· 고창 화순 강화도 고인돌유적	· 남한산성과 주변경관
	· 해인사 장경판고	· 익산역사유적지구
	· 조선왕릉	· 신안염전
	· 안동하회마을	*세계무형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은 제외
	· 월성 양동마을	
세 계 기 록 유 산	·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 직지심체요절	
	· 승정원일기	
	· 조선왕조의궤	
	·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 동의보감	

VI. 요청서 작성

1. 국문

1-1) 세계기록유산

강화된 보호 요청서(1)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동의보감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① 국립중앙도서관 :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② 한국학중앙연구소 장서각 : 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정동 50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동의보감은 1610년 허준에 의해 편찬되어 1613년 출간된 의학백과사전이다. 인쇄는 목판본으로 이루어졌다. 총 25권으로 이루어진 이 의학서는 5장으로 나뉘어 있다. 1장은 내경으로 인간의 신체 내부에 대한 총서이며 2장은 외형편으로 주로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질병의 징후와 인간 신체의 여러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장은 잡병편이며 다양한 기준에 따른 인간의 질병의 징후와 원인에 관하여 논하고 그 진단과 처방의 원리와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장은 탕액으로 의학적 효능을 지닌 물질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들의 채집, 처리, 처방,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의 5장 6부에 대한 의학적 이론과 처방에 대한 것도 들어 있다. 5장은 침술로 기의 흐름에 대해 논하고 침술과 그 적용, 침술의 이론과 실행, 뜸 처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의학서는 19세기까지 유래가 없던 예방의학과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정책에 대한 관념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동아시아 의학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한 권의 크기는 36.6x22.0cm이며 각 페이지는 열 줄이며 각 행은 21자의 글자가 들어간다. 각 행은 두 줄의 주가 덧붙여져 있다. 내용은 부분적으로 그림이 첨가되어 있고 표제어와 subscription으로 분류된 목차도 덧붙여져 있다.

3.C 문화재 보호

동의보감 원본은 보존을 위하여 현재 특별한 목적에 의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훈증 소독과 정밀 검사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24시간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전문연구원이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3.D 문화재의 활용

동의보감의 원문은 공개되지 않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목차, 설명,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장서각 웹사이트는 서문과 함께 서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열람이 가능하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1) 소유권: 국유

2) 관리자

① 국립중앙도서관

- 책임자: 국립중앙도서관장
- 주소: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 전화: 82-2-590-0576
- 팩스: 82-2-590-0712

② 한국학 중앙연구소 장서각

- 책임자: 한국학중앙연구소장 / 한국학 중앙연구소 장서각 소장
- 주소: 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정동 50
- 전화: 82-31-709-6672
- 팩스: 82-31-707-0573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정통성

- 국가에 의한 편찬이며 편찬자는 국가의 공식 연대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초간본은 초기부터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현재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② 세계적 중요성, 고유성 그리고 유일성

- 최초의 전문적이고 배우기 쉬운 의학 서적으로 국가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예방의학과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정책에 대한 관념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였다.
- 2000여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의학지식과 경험을 한권의 책으로 집대성하였다.
- 예방에 대한 개념을 광범위하게 이론적, 임상적 의학에 통합한 총서이다.

③ 17세기 동아시아의 총체적인 의학지식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서적이다.

④ 현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현재 보물 1085 및 1085-2로 지정되어 국내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보호되고 있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 (2차 의정서 10조 d항)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2)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백운화상불조직지심체요절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프랑스 국립 도서관

58, rue Richelieu, Paris, France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 함)은 백운화상이 75세였던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노안을 무릅쓰고 선도(禪道)들에게 선도(禪道)와 선관(禪觀)의 안목을 자각(自覺)하게 하고자 함은 물론, 선풍(禪風)을 전승(傳承)하여 법맥(法脈)을 계승케 하고자 저술한 것으로서, 그 제자 석찬과 달답이 바구니 묘덕의 사주를 받아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에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은 「경덕전등록(景德傳錄)」, 「선문염송집(禪門炎頌集)」 등의 사전부(史傳部)의 여러 불서(佛書)를 섭렵하고 역대의 여러 불조사(諸佛祖師)의 개(偈), 송(頌), 찬(讚), 가(歌), 명(銘), 서(書), 법어(法語), 문답(問答) 중에서 선(禪)의 요체(要諦)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만을 초록(抄錄)하여 찬술(撰述)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의 '직지심체'는 “직지인심 건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수신오도(修身悟道)의 명귀에서 채록한 것으로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직시(直視)하면,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본서는 우리나라의 학승(學僧)들이 대교과(大敎科)를 마치고 수의과(隨意科)에서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학습서인 것이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의 찬자(撰者)인 백운화상(白雲和尚)은 백운이 그의 호이며, 법명(法名)은 경한(景韓)이다. 고려 충렬왕 24년(1289)에 전라도 고부(古阜)에서 출생하여, 공민왕 23년(1374)에 여주(驪州)의 취암사(鷲巖寺)에서 77세를 일기로 입적(入寂)하신 분이다. 화상은 어려서 출가하여 불학(佛學)을 익히고 수도하는 데에만 전념하였다. 후에 백운화상은 중국 호주(湖州) 하무산(霞霧山) 천호암(天湖庵)의 석옥창공(石屋淸公)화상으로부터 직접 심법(心法)을 전수 받았으며, 인도의 자공(指空)화상에서도 직접 법(法)을 물어 도(道)를 깨달았던 것이다. 귀국한 뒤에는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 1301~1382)나 해근 나옹화상(海欽懶翁和

尙 1320~1376)과 더불어 대선사(大禪師)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해도 해주(海州)의 안국사(安國寺)에서 11년 동안이나 선림(禪林)의 정업(精業)에 전력하였고, 뒤에는 해주의 신광사(神光寺)에서 후학들을 계도(啓導)하였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는 조선시대 고종때 주한 불란서대리공사로 서울에서 근무한바 있는 콜랭 드 뵈랑시(Collin de Hancy)가 수집해간 장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그 후 골동품수집가였던 앙리 베베르(Henry Veber)에게 넘어갔으며 그가 1950년에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하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다. 하권은 앞장과 뒷장을 포함 총 3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째 장은 없고 2장부터 39장까지 총 38장만이 보존되고 있으며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246cm와 가로 170cm이며 장정은 한국 전통 방식인 5침안으로 제작되었다. 각장은 11행으로 되어있으며 각 행에는 글자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18자에서 20자가 들어가 있다. 사용된 활자는 중간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인데 중간 사이즈는 본문에 작은 사이즈는 주석을 다는데 쓰였다.

흥덕사(興德寺)의 창건 년대와 규모는 알수 없으나,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간기에 고려 우왕 3년(1377)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하였음을 명기(宣光七年丁巳七月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0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197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된 것이다. 그러나 흥덕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던 중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청동으로 만든 북(靑銅禁)과 청동불발(靑銅佛鉢)에 "西泉府興德寺(서원부 흥덕사; 서원은 신라때 청주의 이름)"라는 글자(名文)가 음각되어 있어 이곳이 바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한 흥덕사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 책은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는데, 이전 활자본에 비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교정이 용이하여 이후 서적의 신속한 생산과 보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활자 인쇄술에 적합한 먹, 즉 기름먹을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이 혁신한 실용적인 활판 인쇄술은 동양 인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유럽등지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3C 문화재 보호

- ① 원본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복사본은 열람가능하다.
- ② 최적보존환경
 - 온도 18-22도 / 습도 40-60% 유지
 - 자동공기정화시스템
 - 태양광차단을 위해 지하에 보관
- ③ 유지 보존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3D 문화재의 활용

4부의 복사본이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프랑스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2) 관리자: 프랑스 국립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주소: 58, rue Richelieu, Paris, France
 - 전화: 33-1-47-03-81-26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영향력

- 한국은 8세기 초반 불경의 보급을 위해 이미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다.
- 11세기에서 13세기에 팔만대장경판이 제작되었다.
- 이 금속활자는 동양 인쇄술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타브리즈를 거쳐 뉘른베르크,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마인츠에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기술발명은 중세적 관념을 근대로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② 진정성

- 정확한 저자, 제작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다.
 - * 직지는 승려 백운화상이 지었다.
 - * 책의 마지막 장과 명문을 통해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주자체로 인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1972년 ‘세계 도서의 해’ 에서 처음 공개된 후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보다 70년이 앞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임이 유네스코에 의해 공인되었다.

③ 희귀성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일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④ 사회적 가치

- 고려시대에 호국불교였던 불교가 세속화되어 가자 이에 반대하여 참선수행을 강조하며 백운화상이 펴낸 책이 직지이다.
- 이 금속활자는 이전 것에 비해 사용하기 편리하고 경제적이었으며 수정이 용이하여 서적의 생산과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 이는 유성 잉크의 발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⑤ 현재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프랑스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보존 관리된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3)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승정원일기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시 신림 9동 산 56-1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승정원은 조선 정종대에 창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다. 1623년 3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280여년간 승정원에서 처리하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취급하였던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등을 매일 기록한 것이다. 총 수량은 3,243책 333,579장에 이른다. 종이질은 닥나무 종이다.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타버리고 말았다. 또 1592년 임진왜란 이후 1623년까지의 일기도 이괄의 난 때 거의 불에 타버렸다. 인조 때 1592년 이후의 일기를 보수하였으나, 영조 20년(1744) 승정원에 불이 나면서 모두 타버렸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일기 역시 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나 보수에 최선을 다하여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연도에 따라 서술하는 편년체로 날짜순으로 배열하였고 월별로 책을 만들었는데 분량에 따라 한 달에 2책으로도 만들었다. 내용은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한달을 기준으로 책머리에 월간 경연 상황, 내전의 동향을 기록하고 승정원의 관리 및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실태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승정원에 업무 현황, 왕 및 내전의 문안, 승정원의 인사관계 등의 내용을 실었다. 고종 31년 갑오경장 이후 일기 내용은 일제에 의한 내정 간섭기 궁중기록으로서 조선의 황제의 결제를 요하는 사건과 기타 궁중 비화를 기록한 것이어서 근대사 연구의 1차 기본 사료이기도 하다.

이 책은 국가의 중대사에서부터 의례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승정원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기록이다. 당시의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 편찬을 위한 첫 번째 사료로서 그 가치가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 기록물이다.

국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일기로 국문학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국문학적 가치도 인정되고 있다.

3C 문화재 보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승정원일기 원본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3D 문화재의 활용

영인본 승정원 일기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철종 2년부터 순종융희4년(1910)까지의 일기 필사본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한 141장의 사진 복사본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전체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1) 소유자: 국가, 문화재청

- 주소: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대전정부청사
- 전화: 82-42-481-4725
- 팩스: 82-42-481-4685

2) 관리자: 서울대학교 규장각

- 주소: 서울시 신림 9동 산 56-1
- 전화: 82-2-880-5001
- 팩스: 82-2-876-4117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 승정원일기는 동아시아 군주제, 정치, 정책결정과 권력구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록 문화의 전통을 담고 있다.
- 총 3,243책 2억4천250만 글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
- 국왕 비서실에서 기록된 것으로 일본어와 일본 정부 체제와 기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외국 문명의 유입, 개항기 국가 문서의 중국어와 한국어의 혼용, 한국어와 중국어 문자의 변화 등 많은 어원적 자료를 담고 있다.

② 과학적 통계적 가치

-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288년 간의 기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음력과 양력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③ 종교적 가치

- 유교사회에 어떻게 천주교가 유입, 전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형태와 체제

- 일기 전체가 초서 필사본이며 이는 서예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국보 303호 지정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 ② 문화재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5조, 제28조에 의거, 보호되고 있다.
- ③ 문화재 보호법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4)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조선왕조실록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① 서울대학교 규장각 ② 국가 기록원 부산 지원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조선왕조실록은 건국자인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으로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정축산 사고본 1,181책, 태백산 사고본 848책, 오대산 사고본 27책, 산업본 21책 총 2,077책이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왕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매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것으로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모든 방면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

실록 편찬에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고문서 등을 정리해 둔 춘추관시정기, 전왕 재위시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일성록 등 정부 주요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이다. 특히 사초는 사관들이 국가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 인물 비평, 기밀 업무 등에 대해서도 직필하였다. 조선시대 법이 엄격하여 사초는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왕도 기록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볼 수 없게 하였다.

완성된 실록은 4개의 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되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사고실록이 소실되었으나 그때마다 재출간하여 20세기 초까지 정축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4개의 사고에 각 1부씩 전하여 내려왔다. 정축산, 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1910년 일제가 당시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하였다가 광복 후 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그대로 소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대산 사고는 일본으로 반출되었는데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어 남은 27책은 1932년 경성제국대학교(현 서울대학교)로 돌아왔고 추가 확인된 47책은 93년만인 2006년 7월 일본으로부터 반환되었다.

오대산 사고본은 기존 규장각 소장 오대산사고본과 동일본으로 2007년 2월 국보 제151호에 추가 지정되었다. 적장산 사고본 실록은 구황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갔으며 현재 서울 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태백산 사고본 848책은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으로 이관되어 보관되고 있다.

3C 문화재 보호

- ①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보존되고 있다. 일반 공개는 하고 있지 않으나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해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 ② 재난 예방책, 습도 및 온도제어 시스템 설치, 열 감지기와 화재 경보 시스템, 자동진화 시스템 설치
- ③ 기록유산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의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시에는 담당부처장은 해당 유산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④ 문화재보호법 제18조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기록 유산의 마이크로 필름이나 사진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원본 보존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3D 문화재의 활용

- ① 20장의 사진과 20장의 슬라이드
- ② 번역작업을 통해 CD-ROM, 사진, 영인본 등 다양한 형태로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관리단체)
 - ① 정족산 사고본, 오대산 사고본, 산업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 ② 태백산 사고본: 국가 기록원 부산지원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472년간 25대 간의 군주의 실록이며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걸친 역사서이다. 중국의 대청역조실록도 296년간의 실록에 불과하다.
 - ② 다루고 있는 분야가 다양하여 실로 백과사전적 실록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학예, 종교 생활로부터 천문, 지리, 음악, 과학적 사실, 자연 재해나 천문현상과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종합 역사서이며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생활기록이 담겨 있는 민족문화서이다.
 - ③ 역사기술에서 신빙성과 진실성이 매우 높은 기록물이다. 실록의 기초자료 작성과 편찬을 담당했던 사관은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받은 전문관료였다. 왕도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고 이러한 비밀 보장제

도가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보장하였다.

- ④ 활자로 인쇄된 실록은 한국의 인쇄문화의 전통과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준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실용화한 고려시대의 인쇄 문화 전통을 이어받아 활자개량에 힘쓰고 각종 도서를 출판하였다.
- ⑤ 이들 실록의 완전한 보존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왕의 실록편찬이 완료되면 4부를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관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깊은 산중에 있던 3개의 사고에 보관하였다.
- ⑥ 일본, 중국, 몽고 등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연구, 관계사 연구에 귀중한 기본자료이다.
- ⑦ 현재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국보 151호로 지정
- ②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25조, 제28조, 제40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 ③ 행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5)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조선왕조의례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 ①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②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의례는 조선왕조에서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국가 의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 행사를 행사 진행 시점에서 당시 사용된 문서를 정해진 격식에 의해 정리하여 작성한 기록물이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의례의 체계적인 편찬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례는 조선시대 600여년에 걸쳐 (1392-1910) 왕실의 주요 행사, 즉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영접 등 뿐 아니라, 건축물·왕릉의 조성과 왕실 문화활동 등에 대한 기록이 그림으로 남아져 있어 600여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총 3,895 여권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 의례는 왕실의 주요한 의식이 시기별,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조선왕조 의식의 변화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비교연구, 이해하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차도, 도설 등 행사모습을 묘사한 시각 콘텐츠는 오늘날의 영상자료처럼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예컨대 정조의 능행도(陵幸圖)는 전 여정을 15.4m에 걸쳐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시각중심적인 형태의 기록유산은 뛰어난 미술장인과 사관의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마디로 의례는 장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기록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계사 맥락에서 유교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유교는 세계의 조그만 한쪽 구석에 존재했던 문화가 아니다. 유교가 지배했던 영토는 그 면적으로 볼 때 서유럽보다도 몇 배나 컸으며 인구 수에 있어서도 유

럽, 서남아시아 및 중동을 초과하는 큰 규모였다. 유교권은 최소 14세기까지 전세계를 2~3개 권역으로 분할하던 주요 문화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야만족의 침입과 이들에 의한 점령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며 전통 의식은 원형을 점차 잃어갔다. 특히 몽골 침입 기간 동안 유교 의식을 수록한 문헌 상당수가 소멸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러한 침입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전통 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천 년 동안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교 의식을 병행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의례는 대부분의 유교사회에서 잊혀진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기록이다. 또한, 의례는 조그마한 군주국가의 기록이 아니라, 한때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유교 전통의 핵심을 대표하는 기록이다.

3C 문화재 보호

1) 규장각

- ① 규장각 자료 관리를 위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규장각 자료는 규장각 서고 외부로 반출될 수 없다.
- ② 동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진, 마이크로필름 및 복제품의 접근은 제한된다.
- ③ 동 규정 제20조에 따라 관계 직원 이외에는 누구도 서고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보존 유지 관리 예산은 8억원
- ⑤ 최적의 보존 환경 유지
 - * 소장 자료는 정기적으로 정밀검사 및 훈증소독 실시
 - * 온도와 습도는 매일 확인
 - * 자동 화재 방지 시스템과 이중 화재예방문의 설치
- ⑥ 규장각 서고는 박사급의 전문 학예관들이 관리
- ⑦ 도난 방지 시스템, CCTV 설치, 비디오 녹화, 지하저장실 설치

2) 장서각

- ① 장서각 자료 관리 규칙 7장(귀중자료 지정과 관리)의 제30조(귀중 자료 지정 기준)과 제31조(귀중자료관리)에 의해 귀중자료는 일반 자료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 2년에 1번씩은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는 단체의 장에게 보고된다.
- ② 보존 유지 관리 예산은 2억 3천만원
- ③ 고서적 관리 일정에 따라 건조와 정밀검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전된다
- ④ 고서적 전문의 1인의 박사와 4인의 학예관이 관리 팀을 이룬다
- ⑤ 이중 화재 방지 문,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 설비
- ⑥ 지진, 태풍 등 자연 재난을 감안한 건물

3D 문화재의 활용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의례 원본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허가를 필요로 하며 마이크로필름과 다른 복사본은 일반에게 공개되며 특히 이미지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1) 소유자: 국가

2) 관리자:

①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규장각

-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전화: 82-2-880-5316

- 팩스: 82-2-873-5328

②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정동 50

- 전화: 82-31-709-6672

- 팩스: 82-31-707-0573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진정성

- 의례는 국가기관에 의해 제작되었다

* 예조와 함께 의례 제작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도감에 의해 제작

* 현존 의례는 제작 이후 국가 기관에 의해 보관 전승

- 제작 과정과 제작자에 대한 정보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의해 확인됨

- 의례는 국가의 공식행사를 공식적 절차에 따라 제작한다.

- 후대의 참고를 위해 의례는 행사나 의식이 치러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모든 참가자, 준비과정, 물품등의 목록이 함께 제작된다.

- 국가 기록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의해 편집, 수정된다. 의례는 의식의 원본 기록과 동일한 성격과 권한을 갖는다.

- 의례는 제작 이후 국가 기관에 의해 보존 관리되어 왔다.

- 조선 멸망 이후 의례는 국가 시설에 보관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화부에서 관리하였다.

② 중요성

- 의례는 유교적 우주관에 입각한 예치의 실행을 묘사한 것이다.

* 유교는 동아시아의 지배적 통치 이념이며 인간성의 보편적 가치 체제를 제공

* 의례에 묘사된 의식 과정은 조선 왕조의 유교적 국가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③ 독창성

- 의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기록방식이다.

- 의례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의식과 행사의 주요 기록들을 사회 정치적 신분질서에 맞게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 각 의례는 다양한 그림과 구조를 포함한다.

④ 모든 의례는 전문가들이 그린 것이며 그림 자체가 원본 기록이 된다.

⑤ 희귀성

- 제작의 한계에 의해 소수만이 제작된다.

- 복사본도 5-9개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별 의궤는 국보 및 보물,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② 지적재산권 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보호는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되나 현재는 그 기한이 소멸되었다. 그러나 동법 5조와 6조에 의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번역물, 드라마, 기타 편찬물 등은 독립적으로 보호받는다.
-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6)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팔만대장경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해인사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고려대장경판(팔만대장경)의 제작은 한국이 13세기에 일구어낸 위대한 문화적 업적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려대장경판은 81,258 목판에 새긴 대장경판으로 아시아 전역에서는 유일하게 완벽한 형태로 현존하는 판본자료다.

고려대장경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불교 대장경판으로 산스크리트어에서 한역된 불교대장경의 원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대장경판은 인도 및 중앙아시아 언어로 된 경전, 계율, 논서, 교리 및 불교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집대성하여 한역한 내용과 더불어 중국어가 원문인 일부 문헌을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 엄청난 규모로 볼 때 이러한 대장경판의 제작은 상당한 국고 및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에 소장되고 있는 고려대장경판과 제 경판 87,000여장의 목판은 1098년부터 1958년까지의 오래 시간에 걸쳐 완성된 경판들로써 국가제작판과 사찰제작판으로 나뉜다. 국가제작판은 고려대장경으로 81,258판 5,200여 만자에 달하고, 사찰제작판은 5,987판이다.

고려대장경판은 이미 사라진 초기 목판제작술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한편, 고려시대의 정치, 문화, 사상의 흐름과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역사기록물이기도 하다. 경판 표면에는 옷칠을 하여 글자의 새김이 760년이 지나도록 생생한 상태로 남아 현재까지 인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려대장경은 당시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모든 불교 경전의 내용을 집대성한 가장 방대한 문헌으로 동아시아 지역 당대 최고의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송나라 대장경을 비롯하여 고려대장경 이전에 중국 및 일본에서 제작된 경전과 비교해 볼 때 고려대장경의 학술적 내용 및 품질 관리에 투입된 심오한 노력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놀라운 수준이다.

수기스님 등이 초조대장경과 송나라 대장경과 거란 대장경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철저히 교정하여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고려대장경은 아시아 각국 대장경의 원본으로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비교할 대상이 없다. 불교 대장경 가운데 가장 정확한 대장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247년 완성된 이 고려대장경의 교정 기록을 30권 분량에 담고 있는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은 고대 동아시아 학자들이 수천 권에 달하는 경전의 내용을 어떻게 대조 및 편집하여 한 권의 경전을 탄생시켰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현존하는 유일한 기록이다. 수기대사의 교정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기록은 그가 2세기 후에 본문비평학이라는 서양 학문을 창시한 에라스무스(1466-1536)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통찰력을 소유한 인물로 어려운 내용을 유창하고 평이하게 풀어쓰는 능력이 뛰어났음을 잘 보여준다.

고려대장경판은 1237-1248년에 제작된 것이지만 훌륭하게 보존되고 있으며 현재도 인쇄할 수 있다. 소장하고 있는 목판의 수량도 87,000여 장이 된다. 고려대장경보다 먼저 제작된 북송대장경과 고려 초조대장경 그리고 거란본 대장경은 거의 전래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주림(法苑珠林),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와 내전 수함음소(內典隨函音疎) 등은 고려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고 다른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해인사는 11세기 초기부터 900년간 출판 인쇄 문화를 선도하면서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끌었던 곳이다. 현재 해인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판은 그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곳의 경판은 중국에까지 그 천재성이 알려진 원효의 저술 등 한국의 위대한 고승들의 저술 등이 있고,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판화가 각 시대별로 갖추어져 있는 등 세계에서 유일하고 희귀한 가치를 지니는 경판이 대부분이다.

3C 문화재 보호

- ① 팔만대장경판의 보관소인 장경판전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 목판은 보존을 위하여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 ② 팔만대장경보존연구소를 창설하고 보존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현재 해인사에 소재하며 4명의 승려와 3명의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팔만대장경 보존 책임기관은 해인사이다.
 - 팔만대장경의 목판본의 상태를 점검한다
 - 대장경 및 보관서고의 훼손, 변형, 부패 등을 수리 복원한다.
 - 정기적인 청소와 청결상태 유지를 통해 오염과 물리적 훼손을 예방한다.
- ④ 팔만대장경 보관소인 장경판전의 최적 보존 환경을 유지한다.
 - 장경판전 격자창을 통한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 온도 18-22도 유지
 - 습도 50-70% 유지

3D 문화재의 활용

- ① 팔만대장경 연구소는 2000년에 팔만대장경을 모두 디지털화하였으며 CD-ROM과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유니코드를 만들고 다양한 글자체와 팔만대장경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정보통신부의 지원 하에 '고려팔만대장경 지식기반'을 보급하고 연구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개인(해인사)

2) 관리자: 해인사

-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 전화: 82-55-934-3095
- 팩스: 82-55-934-3096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진정성

- 대장경판은 각 목판마다 제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목판의 맨 가장자리에 쓰여있으며 새긴 장소와 시간, 경판을 조각한 사람의 이름, 대장경판 사업에 기부한 사람의 이름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1241년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는 고려정부가 부처의 힘을 빌어 몽고의 침입을 막아내려는 기원을 담아 대장경판 제작에 직접 관여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 팔만대장경의 제작과 그 과정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과 그 외 다른 사서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② 목판제작 기술의 우수성

- 팔만대장경은 13세기 당시 동아시아의 목판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목재를 처리하고 조각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의 정확성은 목판본의 질과 인쇄의 질을 통해 증명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판본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었으며 이 목판본 자체가 목판 인쇄술의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희귀성

- 팔만대장경판은 당시 다양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던 불경 중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목판본은 이것이 유일하다.
- 제작된 지 760여년이 지났지만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해 팔만대장경과 그 보관장소인 장경판전은 국보 206호로 지정 보호된다.
- ② 동법 6조에 의거, 해인사 일대의 가야산이 역사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③ 장경판전 및 500m까지 일대는 동법 8조에 의해 문화유산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조에 의해 이 지역 내에서는 임의로 현상을 변경할 수 없다.
- ④ 문화재 보호법과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 신축건물이나 허가 없이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 (2차 의정서 10조 d항)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8)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훈민정음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간송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이 책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왕의 명령으로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 집현전의 8학자가 중심이 되어 만든 한문해설서이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 이라고도 하고,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 이라고도 한다.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구성을 보면 총 33장 3부로 나누어, 제1부는 훈민정음의 본문을 4장 7면으로 하여 면마다 7행 11자씩 실려있다. 제1부는 세종이 지은 것으로 책의 본문에 해당된다. 본문의 내용은 새문자를 창제한 목적을 천명한 훈민정음 서문과, 새문자 28자를 초성11자로 나누어 차례로 예시하고 설명한 다음에 이들을 결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예구로 되어 있다. 제2부는 훈민정음해례를 26장 51면 3행으로 하여 면마다 8행 13자씩 쓰여있다. 제2부는 세종의 명령에 따라 젊은 학자들이 지은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그것은 새문자의 제작원리를 설명한 제자해, 음절 두음을 표기하는 자음 17자를 설명한 초성해, 모음 11자를 설명한 중성 해, 음절말지음을 설명한 종성해, 초성·중성·종성이 결합하여 음절을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한 합자해, 새문자로서 단어를 표기한 예를 보인 용자해의 6장으로 나뉜다. 제3부는 정인지의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을 3장 6면에 1자 내려신고, 그 끝에 ‘정통 11년’ (1446)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 책에는 세종어제 서문과 훈민정음 음가 및 운용법을 밝힌 예의편이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해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25년(1443)에 왕이 직접 만들었으며,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책에서 서문과 함께 정인지가 근작(謹作)하였다는 해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한글의 제작원리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본이다.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글과 같이 일정한 시기

에 특정한 사람이 이미 존재한 문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고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새 문자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출판한 일은 유례가 없었던 역사적인 일이었다.

훈민정음, 곧 한글은 28자로 된 알파벳으로, 오늘날에는 4가지가 안 쓰이고 24자만 쓰이는데, 한국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기와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문자체계이다. 문자체계 자체로도 독창적이며 과학적이라고 인정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훈민정음은 전체 분량이 본문 4장, 주석과 정인지의 서문 29장으로 된 33장에 지나지 않으나, 이론 전체가 정연하고 서술이 과학적인 내용의 책이다. 문자를 만든 원리와 문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 나타나는 이론은 현대의 세계 언어학자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쓰였다고 되어 있어 늦어도 음력 9월 10일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이 책의 출판일을 기념하여 한글날로 제정한 것이나 유네스코에서 문맹퇴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세종대왕상을 주는 것은 이 책의 문화사적 의의를 나타낸다.

훈민정음을 서지학적으로 살펴보면 본체가 33장, 표지가 2장으로 된 책인데, 세로 32.3cm, 가로 20cm의 크기로 되어 있다. 장정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5침안으로 된 선장본이다. 책의 크기가 당시 중국과 일본의 책들보다 크다. 이 책은 유려한 글씨로 정료하게 새긴 목판으로 인쇄되어 있다. 사용된 종이나 먹도 우수하여 한국의 15세기 출판 문화의 우수함이 드러나 있다. 책장은 각기 2면이 인쇄되어 있는데, 인쇄된 1면의 크기는 세로 23.3cm, 가로 16.5cm이다. 이 책에는 구두점과 성조 표시의 구두점이 사용되어 있다. 세종이 창제한 새 글자는 오늘날까지 자형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나 이 책의 자형이 가장 초기의 모습이다.

3C 문화재 보호

- ① 훈민정음 원본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복사본은 열람가능하다.
- ② 보존환경
 - 온도 18-22도 / 습도 40-60% 유지
 - 태양광 완전 차단
 - 오동나무 상자에 진공 보관
- ③ 재난 및 위급 상황
 - 열감지기, 화재 경보 시스템 및 자동 진화장치 설치
 - 위급상황시, 문화재 보호법 71조에 의거 안전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 ④ 보수
 - 문화재 보호법 제18조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원본 보존 및 마이크로필름, 복사본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3D 문화재의 활용

- 공개되지 않음.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개인(전성우)
 - 주소: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 전화: 82-2-762-0442
- 2) 관리자: 전성우
- 위와 같음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영향력

-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표기 방식과 문법체제를 가진 한국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 표기체제의 완성
- 일반 국민들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됨으로써 획기적인 문화발전을 가져왔다.
- 훈민정음 반포일을 한글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문맹퇴치에 공헌 사람에게 수여하는 세종대왕상 제정에 기여

② 진정성

- 정확한 제정과 반포일 확실
 - * 이 책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쓰였다고 되어 있어 늦어도 음력 9월 10일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
 -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이 책이 1446년 음력 9월에 출판되었다고 기록
- 종이의 제작 방식, 잉크 등이 15세기 중반의 것임이 확인

③ 희귀성

- 세계적으로 자국의 언어를 표기하는 표기체계를 발명하는데 성공한 유례가 없다.
- 이 책은 1446년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였던 세종의 본문과 주석이 있는 유일한 현존본이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70호 지정되었다.
- ②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다.
 - 문화재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 제25조에 의해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1-2) 세계문화유산

강화된 보호 요청서(1)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경주 역사유적지구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경주시 일원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천년(BC 57 - AD 935)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있는 불교 유적, 왕경(王京)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일본의 교토, 나라의 역사유적과 비교하여 유적의 밀집도, 다양성이 더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합역사지구로서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 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능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유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경주 남산은 야외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신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신라 건국설화에 나타나는 나정(蘿井), 신라왕조의 종말을 맞게 했던 포석정(鮑石亭)과 미륵곡 석불좌상, 배리 석불입상, 칠불암 마애석불 등 수많은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다.

월성지구에는 신라왕궁이 자리하고 있던 월성, 신라 김씨왕조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鷄林), 신라통일기에 조영한 임해전지, 그리고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시설인 첨성대(瞻星臺)등이 있다.

대능원지구에는 신라 왕, 왕비, 귀족 등 높은 신분계층의 무덤들이 있고 구획에 따라 황남리 고분군, 노동리 고분군, 노서리 고분군 등으로 부르고 있다. 무덤의 발굴조사에서 신라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관, 천마도, 유리잔, 각종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황룡사지구에는 황룡사지와 분황사가 있으며, 황룡사는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나 발굴을 통해 당시의 웅장

했던 대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40,000여 점의 출토유물은 신라시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산성지구에는 A.D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활산성이 있는데 신라의 축성술은 일본에까지 전해져 영향을 끼쳤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C 문화재 보호

- ①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 유지비는 국가 예산 70%와 지역기금에서 30%가 지원된다.
- ② 지방지정 문화재의 경우 보수 유지비는 구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 ③ 장기보호정책
 -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 대책 강화 마련
 - 고고학 발굴을 비롯한 고학적 연구 프로그램 운영
- ④ 과학적 조사를 통한 선별적 보수와 기념물 유지 관리 프로그램 운영
- 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 이용 및 접근을 감시한다.

3D 문화재의 활용

- ① 도시 전체가 역사 유적 박물관으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역이다. 이 지역은 크게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능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 지구로 나뉘어 지며 이들 각 지구별로 관광 코스가 개발되어 고대 신라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② 경주지역은 많은 문화 관련 NGO가 있으며 각 NGO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특히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여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 경주시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경주의 문화유적은 주로 6세기에서 10세기의 것으로 신라의 불교 예술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 ② 경주는 서쪽과 북쪽으로 뻗어 있으며 남쪽은 도시의 종교문화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남산에 면해 있어 도시 계획은 항상 남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남산 기슭과 시내를 감탄할 만한 자연공원을 형성한다. 남산은 경주의 지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주변에는 수많은 불상, 탑, 사찰들이 모여 있다. 경주는 많은 가로 공원, 넓고 잘 다듬어진 역사유적지, 리조트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 ③ 남산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신라시대의 수많은 역사 유물이 남아 있는 성스러운 장소이다.
 - ④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2) 관련 국내법(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경주시내 60여개의 유적지와 기념물이 문화재로 지정

- ②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법령: 제12조, 제18조
 - 국립공원법 제4조와 제5조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
 - 이들 지역의 어떠한 개발도 엄격히 규제되며 도시계획법에 의해 보호구역 주변의 모든 개발은 제한받는다.
 - ③ 지정 지역 내의 각 문화재에는 100m의 완충지역을 둔다.
 -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이들 지역 내에 모든 건축행위는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④ 보존지역 주변 2km 이내의 지역에서는 자갈 및 기타 골재 채취가 금지된다.
 - ⑤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2)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고창, 화순, 강화도 고인돌 유적지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① 고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산63외

② 화순: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68-1외, 춘양면 대신리외

③ 강화도: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의 하나인 고인돌은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기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상에 책상처럼 세운 탁자식(북방식)과 큰 돌을 조그만 받침돌로 고이거나 판석만을 놓은 바둑판식(남방식)이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적인 분포권에서 가장 밀집된 곳으로 그 중 우리나라가 그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0여 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집분포도,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조, 정치체계는 물론 당시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고인돌 유적은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 고창고인돌유적

전라북도 고창군 죽림리와 도산리일대에 매산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로 약 1,764m 범위에 442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10톤 미만에서 300톤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탁자식, 바둑판식, 지상석곽형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아산면 상갑리 일대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의 남쪽 한계선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2) 화순고인돌유적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의 계곡을 따라 약 10km에 걸쳐 500여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어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견되어 보존상태가 좋다. 또한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보여주는 채석장이 발견되어 당시의 석재를 다루는 기술, 축조와 운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화순군 효산리 모산마을에서 월곡제, 춘양면 대신리로 넘어가는 보성재 양쪽 계곡 지역에 청동기시대의 바둑판식(남방식) 고인돌 230~500기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고인돌, 돌방무덤(석실분), 독무덤(옹관묘), 돌널무덤(석관묘), 널무덤(토광묘)을 확인하였고, 석기류, 토기류, 청동기류 치레거리(장신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주변의 암벽에서 고인돌의 덮개돌을 떼었던 흔적이 남아 있어, 고인돌을 만들었던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대신리 산 중턱에는 길이 7m, 높이 4m, 무게 약 200여 톤이나 되는 커다란 덮개돌이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주변의 자연 경관도 잘 보존되어 있어 한국 고대 문화와 생활상 비교·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3) 강화고인돌유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근리, 삼거리, 오상리 등의 지역에 고려산 기슭을 따라 12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는 길이 7.1m, 높이 26m의 우리나라 최대의 북방식 고인돌이 있으며 우리나라 고인돌의 평균고도보다 높은 해발 100m~200m까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강화군 하점면 부근에는 40여 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이 중 부근리 고인돌이라 부르는 규모가 큰 탁자식 고인돌이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전체높이는 26m이며, 덮개돌은 길이 65m, 너비 52m, 두께 1.2m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이 고인돌에 대한 발굴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근 삼거리에 있는 고인돌에서 무문토기조각과 간돌검(마제석검), 돌가락바퀴(방추차)를 비롯한 유물들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삼거리 유적과 비슷한 유물들이 들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00년 12월 고창, 화순 고인돌 유적과 함께 강화 고인돌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3.C 문화재 보호

- ① 이 지역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 ②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보존의 실행과 준비는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 ③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대학박물관과 연계하여 관련 학술 연구, 조사, 발굴을 담당한다.
- ④ 문화재의 관리에 과학적 조사, 주변 환경의 보호, 체계적 모니터링, 안내 및 교육 체계(안내판, 진입로, 주차,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 지역사회 참여, 축제 기획 등) 등을 포함한다.
- ⑤ 보수 관리 비용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앙정부 예산과 일부는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 된다.

3.D 문화재의 활용

일반에게 공개되며 대표적인 관광지역의 하나이다. 각 지역마다 지역 축제와 연계되어 고인돌 축조 재

현 행사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유
- 2) 관리자: 화순군, 고창군, 인천시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역사적 사회적 가치

-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적인 분포권에서 가장 밀집된 곳으로 그 중 우리나라가 그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0여 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집분포도,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고인돌은 선사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구조, 정치체계를 물론 당시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고인돌 유적은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②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군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돌이 어떻게 채석이 되고 운반되었으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그 형태가 변화되어 갔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③ 진정성

- 현재의 고인돌은 대부분이 선사시대에 건설된 이후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일부 농부들에 의해 해체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사용된 돌은 원래의 자리에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어서 복원이 어렵지 않다.

2) 관련 국내법(2차 의정서 10조 b항)

① 각각 사적 제137호, 제391호, 제410호 지정

② 문화재 보호법상 사적 혹은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호

- 어떠한 형태의 개발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된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석굴암, 불국사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① 석굴암: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② 불국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번지 등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N35 46 60 E129 20 60

3B 문화재 상세설명

① 석굴암

석굴암은 서기 751년 신라 경덕왕 때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하기 시작하여 서기 774년인 신라 혜공왕 때 완공하였으며, 건립 당시의 명칭은 석불사로 칭하였다.

석굴암의 석굴은 백색의 화강암재를 사용하여 토함산 중턱에 인공으로 석굴을 축조하고 그 내부 공간에는 본존불인 석가여래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벽에 보살상 및 제자상과 금강역사상, 천왕상 등 총 39체의 불상을 조각하였다. 석굴암은 전실, 통로, 주실로 이루어졌다. 방형 공간인 전실에는 팔부중상과 금강역사상이 있고, 사천왕상(四天王像)이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면 궁륭(Dome)천정으로 짜여진 원형공간의 주실이 나온다. 석굴암의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평면방형의 전실에는 좌우로 4구씩 8부신장을 두고 통로 좌우 입구에는 금강역사상을 조각하였으며, 좁은 통로에는 2구씩의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주실 입구에는 좌우로 8각 석주를 세웠고 이곳을 지나면 평면원형의 주실로 본존은 중심에서 약간 뒤로 안치되어 있으며 입구 좌우로부터 천부상 2구, 보살상 2구, 나한상 10구로 주벽을 채우고 본존 정후면에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있다. 주실의 중앙에는 석가모니대불이 있고, 벽면에는 입구에서부터 범천상(梵天像)과 제석천상(帝釋天像), 보현(普賢)·문수(文殊)보살상, 그리고 십대제자상(十代弟子像)이 대칭을 이루도록 조각되어 있다. 석굴암의 석굴은 장방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360여 개의

관석으로 원형주실의 궁륭천장 등을 교묘하게 구축한 건축 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조각에 있어서 원숙한 조법과 사실적인 표현에서 완벽에 가까운 석가여래상, 10구의 얼굴과 전신이 화려하게 조각된 십일면관음보살상, 인왕상의 용맹, 사천왕상의 위엄, 주실 내의 보살들의 유연 우아한 모습, 나한상들의 개성 있는 표현 등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 것이다. 특히, 주실 내에 봉안되어 있는 굽타양식의 본존불 석가여래불은 고요하고 결가부좌한 모습, 가늘게 뜬 눈, 온화한 눈썹, 미간에 서려있는 슬기로움, 금방이라도 말할 듯한 입과, 코, 길게 늘어진 귀 등 그 모든 것이 내면에 깊은 숭고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조성된 것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미를 대표하고 있다.

일찍이 당나라의 현장(AD602~664)이 17년간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성지를 순례한 후 지은 풍물지리지 성격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룬 바로 그 자리에 대각사(大覺寺)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정각을 이룬 모습의 불상이 발을 꼬여 오른발 위에 얹고, 왼손은 살 위에 뉘었으며 오른손을 늘어뜨리고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대좌의 높이는 당척 4척2촌이고 넓이는 1장2척5촌이며 상의 높이는 1장1척5촌, 양 무릎폭이 8척8촌, 어깨폭이 6척2촌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석굴암의 본존불 크기와 이 기록이 일치하고 있는데, 현장이 보았던 대각사의 그 불상은 현존하지 않고 있어 석굴암에 역사적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천체를 상징하는 둥근 공간에 이르면 한가운데에 높이 350cm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지닌 석가모니 대불이 동해를 향해 앉아 있다. 얼굴과 어깨를 드러낸 옷의 주름에 생동감이 있어 불상 전체에 생명감이 넘친다.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가늘게 뜬 눈과, 얇은 미소를 띤 붉은 입술, 풍만한 얼굴은 근엄하면서도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손모양은 하마촉지인(降摩觸地印)으로 왼손은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오른손은 무릎에 걸친 채 검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어 모든 악마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친 승리의 순간, 즉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성도상(成道像)이라고 한다.

감실은 주실에서 위치로 보아 지상계와 천상계의 중간을 뜻한다. 이는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보살이 각자(覺者)인 여래와 무명(無明)중생의 중자적인 존재라는 점과 잘 어울린다. 미륵보살상의 오른쪽 어깨, 손목, 오른쪽 무릎으로 이어지는 직삼각형이 안정감을 주는 반면 세운 무릎, 비스듬히 엮은 팔, 숙인 얼굴이 그리는 곡선은 변화와 운동감을 주고 있다.

전실 벽면에 있는 8구의 팔부중상은 무사의 성격을 띠고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신들이며, 치마를 입은 금강역사상 또한 불법을 수호하는 한 쌍의 수문장으로서 상체의 근육이 발달한 용맹스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금강으로 만든 방망이를 들고 있다하여 금강역사라 칭했다.

석가모니 대불이 앉아 있는 곳인 둥근 주실 뒷벽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 나타나는 십일면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의 아름다운 자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머리둘레에 열구의 얼굴이 화려하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눈길을 끄는데,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표정, 화려하게 전면을 장식한 영락(璎珞구슬이나 귀금속을 꿰어 만든 장신구) 장식, 유려하게 흘러내린 천의(天衣), 손가락 발가락의 미묘한 움직임, 왼손은 한 송이 연꽃이 꽃혀있는 병을 들고 오른손은 내려서 영락을 잡고 정면관의 자세로서 있는 모습에서 화려함과 원숙함을 느끼게 한다.

8세기 중엽 통일신라 문화의 황금기에 건립된 석굴암은 불교사상과 매우 발달한 수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건축 기술, 뛰어난 조형감각으로 완성되었다. 우리가 석굴암에서 느끼는 장엄미와 숭고미는 이러한 바탕과 그 속에 내재하는 조화율에 있다 하겠다.

석굴암은 석가모니가 정각 즉,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가시적인 건축과 조각으로 재현한 것이며, 조각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기교나 부자연스러움없이 생명력이 넘치며 원숙한 조법과 탁월한 예술성이 돋보인다. 절대적인 경지인 정각을 통해 인간 석가모니는 형이상학적 존재인 석가여래가 되고, 속세는 법계라는 이 상향이 된다.

석굴암 석굴은 국보 제2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석굴암은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다.

② 불국사

불국사는 석굴암과 같은 서기 751년 신라 경덕왕때 김대성이 창건하여 서기 774년 신라 혜공왕때 완공하였다. 토함산 서쪽 중턱의 경사진 곳에 자리한 불국사는 심오한 불교사상과 천재 예술가의 혼이 독특한 형태로 표현되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기념비적인 예술품이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린 불국,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사바세계와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및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불국사의 건축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하나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청운교, 백운교, 자하문, 범영루, 자경루, 다보탑과 석가탑, 무설전 등이 있는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보교, 연화교, 안양문 등이 있는 구역이다.

불국사 전면에서 바라볼 때 장대하고 독특한 석조구조는 창건당시 8세기 유물이고 그 위의 목조건물은 병화로 소실되어 18세기에 중창한 것이며, 회랑은 1960년대에 복원한 것이다. 불국사의 석조 구조는 길고 짧은 장대석, 아치석, 둥글게 조출된 기둥석, 난간석 등 잘 다듬은 다양한 형태의 석재로 화려하게 구성되어었는데 특히 연화교와 칠보교의 정교하게 잘 다듬은 돌기둥과 둥근 돌난간은 그 정교함, 장엄함과 부드러움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불국사의 높이 82m의 삼층석탑인 석가탑은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의 균형이 알맞아 간결하고 장중한 멋이 있으며, 높이 10.4m의 다보탑은 정사각형 기단위에 여러 가지 정교하게 다듬은 석재를 목재건축처럼 짜맞추었는데 복잡하고 화려한 장엄미, 독특한 구조와 독창적인 표현법은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국사는 사적·명승 제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불국사내 주요 문화재로는 다보탑(국보 제20호), 석가탑(국보 제21호), 청운교와 백운교(국보 제23호), 연화교와 칠보교(국보 제22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 비로자나불(국보 제26호)등이 있으며, 불국사는 1995년 12월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다.

3C 문화재 보호

① 석굴암

- 정부 기금은 석굴암의 관리, 활용, 보존, 수리 등을 위해 사용되며 문화재보호법 33조에 의해 입장료 수익이 위의 활동에 충당된다. 또한 주변 환경 정리, 보존 및 수리, 화재 예방, 일반 공개 등을 위해 사용된다.

- 석굴암의 온도와 습도 조절 장치를 통해 안정된 보존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연구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3D 문화재의 활용

- 이 지역은 경주국립공원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역사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경주는 고대 신라의 수도로 수많은 역사 문화 유물을 간직하고 있어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역사문화의 학습장이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1) 석굴암

- ①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 ② 관리자: 경주시

2) 불국사

- ① 소유자: 국가
- ② 관리자: 경주시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석굴암, 불국사는 신라시대 전성기의 최고 걸작으로 그 조영계획에 있어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며 불국사는 불교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다.
- ② 인류보편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석굴암은 국보 70호, 불국사는 사적 502호로 지정
- ② 문화재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석굴암 및 주변 지역이 문화재보존 지구로 지정
- ③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에 의해 허가없이 어떠한 변경도 허락되지 않는다.
- ④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해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
- ⑤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통사찰로 지정
- ⑥ 자연환경보존법 제 13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동법 제23조에 의해 야생동식물 보호지구 지정 보호
- ⑦ 자연공원법 제14조에 의해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동법 13조에 의해 지정지역 내에 건물이나 시설의 신축은 제한
- ⑧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지역이며 동법 시행규칙에 제2조에 의해 지정 지역 내

에 예정된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필요

⑨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직책

날짜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조선왕릉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아래 표 별첨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지 역	지 구	개 수	묘호 및 능호	소재지
서울	정릉	1	제1대 태조왕비(신덕왕후) 정릉	성북구 정릉동
	현인릉	2	제3대 태종 현릉, 제23대 순조 인릉	서초구 내곡동
	선정릉	2	제9대 성종 선릉, 제11대 중종 정릉	강남구 삼성동
	태강릉	2	제11대 중종왕비(문종왕후) 태릉 제13대 명종 강릉	노원구 공릉동
	의릉	1	제20대 경종 의릉	성북구 석관동
경기도	동구릉	9	제1대 태조 건원릉, 제5대 문종 현릉	구리시 인창동
			제14대 선조 목릉	
			제16대 인종왕비(장렬왕후) 휘릉	
			제18대 현종 승릉	
			제20대 경종왕비(단의황후) 혜릉	
			제21대 영조 원릉, 제24대 헌종 경릉	
			츠존 문조(제24대 헌종 부) 수릉	
	홍유릉	2	제26대 고종황제 홍릉	남양주시 금곡동

			제27대 순종황제 유릉	
	광릉	1	제7대 세조 광릉	남양주시 진접읍
	사릉	1	제6대 단종왕비(정순황후) 사릉	남양주시 진접읍
	영녕릉	2	제4대 세종 영릉, 제17대 효종 영릉	여주군 능서면
	서오릉	5	제8대 예종 창릉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추존 덕종(제9대 성종 부) 경릉	
			제19대 숙종 명릉	
			제19대 숙종왕비(인경왕후) 익릉	
			제21대 영조왕비(정성왕후) 홍릉	
	서삼릉	3	제11대 중종왕비(장경왕후) 희릉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제12대 인종 효릉, 제25대 철종 예릉	
	온릉	1	제11대 중종왕비(단경왕후) 온릉	양주군 장흥면
	파주삼릉	3	제8대 예종왕비(장순왕후) 공릉	파주시 조리읍
			제9대 성종왕비(공혜왕후) 순릉	
			추존 진종(제22대 정조 양부) 영릉	
	파주장릉	1	제16대 인조 장릉	파주시 탄현면
	김포장릉	1	추존 원종(제16대 인조 부) 장릉	김포시 풍무동
	융건릉	2	사도세자(제22대 정조 부) 융릉	화성시 태안읍
			제22대 정조 건릉	
강원도	장릉	1	제6대 단종	영월군 영월읍

* 북한(개성시) 소재 조선 왕릉: 제1대 신의왕후 제릉 / 제2대 정종의 후릉

3B 문화재 상세설명

조선 왕조는 1392년에 고려 왕조가 끝난 이후 시작되어 5백 년 이상의 지속된 역사를 지녔다. 조선 왕조 시대에 있었던 총 27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일컬어 조선 왕릉이라 한다. 한국의 조선시대(1392~1910) 왕실과 관련되는 무덤은 ‘능(陵)’ 과 ‘원(園)’ 으로 구분된다. 왕릉으로 불리는 능(陵)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 을 말하며,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 을 말한다. 조선왕릉 42기를 살펴보면, 폐위된 두 명의 왕의 무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10대 연산군, 제15대 광해군) 조선왕릉은 전체 42기 가운데 북한에 있는 2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있다. 조선 왕릉 40기는 모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조선왕릉’ 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 전통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문화유산이다. 특히 조선시대 때 강조되었던 ‘조상숭배’ 라는 유교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왕의 무덤을 신성화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 죽은 왕의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고 참배함으로써 죽은 왕에 대한 숭배 뿐 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왕의 권위까지도 더불어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은 강원도 영월의 장릉, 경기도 여주의 영릉과 녕릉 3기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도

읍지인 한양에서 40km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조선왕릉이 퍼져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크게 서울 시내와 서울 동쪽, 서쪽으로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왕실의 능역을 그 당시 도성인 한양을 중심으로 반경 4킬로미터 밖에서 40킬로미터 안에 두도록 하는 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들을 풍수적 길지로써, 현 시대에도 서울 도심 속에서 녹지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조선시대의 국가통치 이념인 유교와 그 예법에 근거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크기, 문인과 무인 공간의 구분, 석물의 배치, 기타 시설물의 배치 등이 특색을 띠고 있다. 특히 왕릉의 석물 중 문인석, 무인석의 규모와 조각양식 등은 예술성을 각각 달리하며 시대별로 변하는 사상과 정치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뛰어난 문화유산에 속한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하나의 우주세계를 반영하도록 조영되었다. 능역의 공간은 속세의 공간인 진입공간(재실, 연못, 금천교), 제향공간(홍살문, 정자각, 수복방), 그리고 성역공간(비각, 능침공간)의 3단계로 구분되어 조성되었는데, 이는 사후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영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엄격하게 관리된 왕릉 내부와 주변의 녹지와 산림은 당시에든 주요한 생태계로 작용하여 왔으며, 특히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한국의 대도시 서울 주변 지역의 생태적 안정성과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생태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능원은 600여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조의 능원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통치철학과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능원공간 조영 형식의 변화, 관리공간 영역의 변화, 조형물 특성의 변화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릉제례는 조선왕조 6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사상인 유교의 충과 효를 상징하는 예제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오늘날까지 왕실 후손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3C 문화재 보호

- ① 조선왕릉은 국립아카이브에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동시에 능지의 선별, 왕릉의 형태, 수리 등 관련 역사적 기록을 망라하고 있다.
-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매일 유지 보수 팀이 상태를 점검한다.
- ③ 왕릉은 문화재청이 최종 지휘, 감독하며 5개의 관련 문화재 부서가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문화재 전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 전주이씨 종가, 유지관리 팀 그리고 지방정부의 문화재 담당부서이다.
- ④ 종합적인 관광정책이 2007년에 수립, 시행되고 있다.
- ⑤ 2년마다 진정성에 근거한 유지, 보존, 관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3D 문화재의 활용

- ① '한가족 문화유산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끌어내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 ② '조선왕릉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왕릉의 연혁, 역사 등을 교육하고 왕릉에서 행해지는 제례 및 행사를 공지하고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조선왕릉’은 조선왕조의 독특한 장묘 문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당시 조선왕조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을 바탕으로 타 유교 문화권 왕릉들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선왕릉’은 5백년 이상 존속한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이다.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뿐 만아니라, 조선시대의 예술적 독창성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끝으로 조선 왕릉에서 세기를 걸쳐서 지속되어 온 제례의식이다. 1910년 조선왕조가 막을 내린 이후로부터 전주 이씨 종약원으로 인해 현재까지 왕릉 제례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 외에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종묘 또한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왕릉’은 조선시대에 강조되었던 조상숭배의 전통문화가 이어져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6월 30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왕릉’ 40기전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② 다른 유교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조선시대의 자연과 우주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왕릉과 관련한 중요하고 독특한 장례 전통을 만들어냈다.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탁월한 신성공간이 조상을 숭상하는 의식 절차를 위해 창조되었다.
- ③ 조선 왕릉은 다른 시대와 구분되는 조선시대의 특징들이 석재의 규모 뿐만 아니라 공간적 배치, 건축적 구성 그리고 그 활용에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다.
- ④ 조선시대 왕실의 제례의식은 조선시대 600년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정치적 혼란기를 제외하고 왕실에 의해 매년 국가의 제례일에 거행되었다. 또한 조선왕조는 선왕의 신위와 위패를 모시는 ‘종묘’를 설립, 유지 관리하여 왔다.

2) 관련 국내법(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70년 18개 지역 40기의 왕릉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 ② 문화재 보호법과 국토이용관리법
 - 이들 지역 내의 개발은 사적과 경관보호를 위해 금지된다.
 - 완충지역내의 개발은 문화유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지역의 경우, 지방정부의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며 최종 승인은 중앙정부가 한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종묘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2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종묘는 태조 3년(1394) 10월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다.

56,503평의 경내에는 종묘정전을 비롯하여 별묘인 영녕전과 전사청, 재실, 향대청 및 공신당, 칠사당 등의 건물이 있다. 정전은 처음에 태실 7칸, 좌우에 딸린 방이 2칸이었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고쳐 짓고, 그 후 영조와 현종때 증축하여 현재 태실 19칸으로 되어있다.

영녕전은 세종 3년(1421)에 창건하여 처음에는 태실 4칸, 동서에 곁방 각 1칸씩으로 6칸의 규모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광해군 즉위년에 10칸의 규모로 지었으며 그 후 계속 증축하여 현재 16칸으로 되어 있다.

현재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정전 뜰앞에 있는 공신당에는 조선시대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전에서 매년 춘하추동과 설달에 대제를 지냈고, 영녕전에는 매년 춘추와 설달에 제향일을 따로 정하여 제례를 지냈으나 현재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을 정하여 종묘

제례라는 제향의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제사드릴때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을 포함하는 종묘제례악이 거행되고 있다.

종묘의 주전인 정전은 건평이 1,270㎡로서 동 시대의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로 추정되며, 종묘의 건축 양식은 궁전이나 불사의 건축이 화려하고 장식적인데 반하여 유교의 검소한 기풍에 따라 건립된 특수목적용 건축물이다.

종묘는 한국의 일반 건축물과 같이 개별적으로 비대칭구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의례공간의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정전과 영녕전의 기단과 처마, 지붕의 높이, 기둥의 굵기를 그 위계에 따라 달리 하였다.

중국 주나라에서 시작된 종묘제도는 7대까지 모시는 제도로 시작되어 명나라 때에 와서 9묘 제도로 확대 되었는데 중국의 태묘에서는 태실이 9실에 불과하나 한국의 종묘만은 태실이 19칸인 매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면이 매우 길고 수평성이 강조된 독특한 형식의 건물모습은 종묘제도의 발생지인 중국과도 다른 건축양식으로 서양건축에서는 전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건축유형이다.

종묘제례는 종묘인 의례공간과 함께 의례절차, 의례음식과 제기, 악기와 의장물, 의례음악과 의례무용 등이 조화되어 있으며, 1462년에 정형화된 형태를 500년이상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적 의례문화라고 할 수 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에 나타난 의례 절차, 음악, 무용 등은 중국의 고대문명을 바탕으로 형성된 하, 은, 주 시대의 의례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대문화의 특징과 의의를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고대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종묘제례악은 기악, 노래, 춤으로 구성되는데 세종때 처음 짓고 세조때 다듬은 보태평과 정대업 22곡을 연주하고 그 동작이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것이 특징인 일무 등의 춤을 춘다. 신라향가나 고려가요가 오늘날 가사만 전하여 지는데 비하여 종묘제례악은 500년 전의 선율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하고 있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종묘는 조선시대의 전통건물로서 일반건축이 아닌 신전건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많은 현대 건축가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종묘의 뛰어난 건축적 가치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칭하여지고 있을 만큼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종묘는 동시대 단일목조건축물 중 연건평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나, 장식적이지 않고 유교의 검소함이 깃든 건축물이다. 중국의 종묘가 9칸인데 비해 19칸의 긴 정면과 수평성이 강조된 건물 모습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건축물이며, 동양 고대문화의 성격과 특징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가 담긴 유산이다. 정전과 영정전 및 주변 환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종묘는 사적 제12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 정전(국보 제227호), 영녕전(보물 제821호),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가 있으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종묘의 종묘제례와 음악·춤도 그 원형이 잘 계승되어,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3C 문화재 보호

- ① 종묘의 일반 공개는 허락되나 정전 내부는 출입이 금지된다.
- ② 문화재청의 종묘관리사무국이 종묘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한다. 23명의 직원이 있으며 보수팀은 35인으로 구성되어 종묘의 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 ③ 예산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이루어진다.
- ④ 입장료 수입은 모두 종묘의 보존과 보수에 충당된다.

3D 문화재의 활용

일반에게 공개되며 서울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되며 매년 세계무형문화재에 등재된 종묘제례가 이곳에서 행해진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 종묘
 - 주소: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2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진정성

- 종묘는 16세기 이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 동아시아 목조 건축적 특징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로서 종묘는 여러 차례의 해체와 재건축 과정을 거쳤지만 그 건축 재료와 건축 기술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정성을 유지해왔다.

① 영향력

- 종묘는 수세기 동안 한국의 건축, 정원, 주변 경관 그리고 관련 예술의 발전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

② 건축적 가치(세계문화유산 기준 iii)

- 대청속의 비대칭: 종묘는 대칭적인 공간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비대칭적 구조이다. 부속 건물들은 대칭적으로 정전의 양쪽에 서 있지만 동측 벽은 열려있고 서측 벽은 닫혀있다. 본 건물의 대칭적 외관은 부속건물의 비대칭성과 조화를 이룬다. 이는 한국 전통건축의 독특한 특징이다.
- 기능과 형태의 조화: 종묘는 수평선이 강조되는 건축이다. 벽과 지붕도 수평선을 강조한다. 수직선의 벽보다는 수평선의 지붕이 강조되는 건축이다.
- 탁월한 공간 배치: 종묘의 정전과 영녕전의 내원의 섬돌은 거친 화강암 판석, 짙은회색의 돌로 덮인 신로, 다양한 기단 등 매우 단순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월대는 황이 사용하던 상징적 길인 신로와 구별되는 직사각형의 단으로 비어 있다. 이 두 요소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비해 매우 작지만 전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신성 공간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이질적 요소들은 모두 배제하여 종묘의 신성성과 장엄함을 강조하였다.

③ 역사적, 사회적 가치(세계문화유산 기준 vi)

-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이는 조상에게 제사지내고 조선왕조의 유교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이다. 유교 사회에서 새로운 왕조가 성립했을 때, 왕이 조상을 위한 신전과 사직단을 짓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 왕실의 조상 종묘의례는 유교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충과 효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왕실에 의해 거행되었으며 이는 조선 왕조 500백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조선왕조의 멸망 이후에는 전주 이씨 가문에 의해 이 전통이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종묘는 제왕을 기리는 유교사당으로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의례 공간이며 이곳에서 의례와 음악과 무용이 잘 조화된 종묘제례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종묘제례는 현재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 보호법 제6조와 7조에 의해 1963년 사적 제125호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
- ② 문화재보호법 20조에 의해 유적지의 변경은 제한된다.
- ③ 국토이용관리법 13조에 의해 자연환경보존지구,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해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창덕궁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N37 33 E126 59

3B 문화재 상세설명

창덕궁은 조선왕조 제3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이며 창건시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편전인 선정전, 침전인 회정당, 대조전 등 중요 전각이 완성되었다. 그 뒤 태종 12년(1412)에는 돈화문이 건립 되었고 세조 9년(1463)에는 약 6만2천평이던 후원을 넓혀 15만여평의 규모로 궁의 경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에 공사가 끝났으나 다시 1623년의 인조반정때 인정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가 인조 25년(1647)에 복구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화재가 있었으며, 1917년에 대조전 과 회정당 일곽이 소실되어 1920년에 경복궁의 교태전·강녕전 등 많은 건물을 철거하여 창덕궁으로 이관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 중 궁궐 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정문인 돈화문으로 광해군 때 지은 것이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때 정궁으로 사용한 후 부터 188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피 온 법궁이었다. 창덕궁 안에는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인 돈화문, 신하들의 하례식이나 외국사신의 접견장소로 쓰이던 인정전, 국가의 정사를 논하던 선정전 등의 치조공간이 있으며, 왕과 왕후 및 왕가 일족이 거처하는 회정당, 대조전 등의 침전공간 외에 연회, 산책, 학문을 할 수 있는 매우 넓은 공간을 후원으로 조성하였다.

정전 공간의 건축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여 높게 하였고, 침전건축은 정전보다 낮고 간결하며, 위락공간인 후원은 자연지형을 위압하지 않도록 작은 정자각을 많이 세웠다.

건물배치에 있어 정궁인 경복궁, 행궁인 창경궁과 경희궁에서는 정문으로부터 정전, 편전, 침전 등이 일직선상에

대청으로 배치되어 궁궐의 위엄성이 강조된 데 반하여, 창덕궁에서는 정문인 돈화문은 정남향이고, 궁안에 들어 금천교가 동향으로 진입되어 있으며 다시 북쪽으로 인정전, 선정전 등 정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편전과 침전은 모두 정전의 동쪽에 전개되는 등 건물배치가 여러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자연스런 산세에 따라 자연지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산세에 의지하여 인위적인 건물이 자연의 수립 속에 포근히 자리를 잡도록 한 배치는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완전한 건축의 표상이다. 또한, 왕들의 휴식처로 사용되던 후원은 300년이 넘는 거목과 연못, 정자 등 조원시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적으로 또 조경사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후원은 태종 5년(1405) 창덕궁을 창건할 때 후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창경궁과도 통하도록 하였다. 창덕궁 후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조원 시설로서 자연적인 지형에다 꽃과 나무를 심고 못을 파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건물을 배치하였다. 160여 종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며 300년이 넘는 오래된 나무들도 있다. 울창한 숲과 연못, 크고 작은 정자들이 마련되어 자연경관을 살린 점이 뛰어나다.

대부분의 정자는 임진왜란때 소실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정자와 전각들은 인조 원년(1623)이후 개수·증축된 것이다. 이 곳에는 각종 희귀한 수목이 우거져 있으며, 많은 건물과 연못 등이 있어 왕과 왕비들은 이곳에서 여가를 즐기고 심신을 수양하거나 학문을 닦고 연회를 베풀었다.

창덕궁은 조선시대의 전통건축으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건축과 조경이 고도의 조화를 표출하고 있으며, 정궁인 경복궁이 질서정연한 대청구도를 보이는데 비해 창덕궁은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유로운 구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창덕궁과 후원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장소로, 동양조경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조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

창덕궁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궁궐지」, 「창덕궁조영의궤」, 「동궐도」 등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1830년경에 그린 「동궐도(국보 제249호)」가 창덕궁의 건물배치와 건물형태를 그림으로 전하고 있으며, 궁궐사와 궁궐건축을 연구 고증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창덕궁은 사적 제1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돈화문(보물 제383호), 인정문(보물 제813호), 인정전(국보 제225호), 대조전(보물 제816호), 구선원전(보물 제817호), 선정전(보물 제814호), 회정당(보물 제815호), 향나무(천연기념물 제194호), 다래나무(천연기념물 제251호)등이 지정되었다. 창덕궁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3C 문화재 보호

- ① 창덕궁은 창덕궁관리 사무소가 관리한다.
- ② 모든 보존 및 보수 행위는 권위있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
- ③ 보수 관리 예산은 전액 정부예산이다.

3D 문화재의 활용

- ① 창덕궁의 연혁과 후원, 궁궐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창덕궁 연경당, 규장각, 약방 등에서 여름방학 기간중에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개최한다.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

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 ② 궁궐 내는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창덕궁의 후원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 창덕궁관리사무소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영향력

수세기에 걸쳐 한국의 건축, 조경 그리고 경관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창덕궁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건축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희귀성

현재 남아있는 한국의 궁궐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자금성이나 일본의 나라에 있는 고쇼성이 비견될 만한 궁궐이나 두 궁궐이 평지에 지어진 것인데 반해 창덕궁은 굴곡이 진 지형을 활용하여 각 전각을 배치한 독특한 건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 2) 관련 국내법(2차 의정서 10조 b항)

① 사적 제122호 지정

- ②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자연환경보존지구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없이 어떠한 변경도 허락되지 않는다.

③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해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 ④ 문화재보호법 제6조와 제7조에 의해 역사지구로 지정되어 기존 상태에 공식허가 없이 어떠한 변경도 허락되지 않으며 주변 20m는 공식보호지구가 된다.

-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한국의 역사마을-안동과 양동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1) 안동하회마을

안동하회마을은 조선 중기인 1600년대부터 풍산류씨들이 모여 주택과 서원 등을 건축하고 마을을 조성한 풍산류씨의 집성촌이다. 하회(河回)마을은 낙동강의 줄기가 S자모양으로 회류(回流)하는 특수한 경계(景柵)로도 저명하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집성촌은 전국 여러곳에 형성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소멸되거나 변형되어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안동하회마을은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반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양진당과 충효당, 북촌택과 서원건축의 백미인 병산서원과 같은 옛 건축물들은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주변 자연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낙동강의 넓은 강류가 마을 전체를 동·남·서 방향으로 감싸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연화부수형' 또는 '태극형'이라는 명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풍산류씨 겸암과(풍산류씨 14대손인 겸암 류운룡의 대종가 계열)와 서애파(조선 선조때 명재상 서애 류성룡의 지파)가 살고 있다. 마을은 중앙 길을 중심으로 북촌과 남촌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북촌의 대표적인 주택으로는 양진당(보물 제306호)과 북촌택(중요민속자료 제84호)이, 남촌의 대표적인 주택은 충효당(보물 제414호)과 남촌택(중요민속자료 제90호)이 있다. 남촌의 충효당(忠孝堂)과 남촌택(南村宅), 북촌의 양진당(養眞堂)과 북촌택(北村宅)은 그 역사와 규모에 있어 남·북촌 서로 쌍벽을 이루는 대규모이며 전형적인 가옥들이다. 그 외 많은 건축들은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생활상과 발달된 집 구조 등을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마을에는 크고 작은 양반집들과 노비들의 주택인 가람집들, 그리고 원지정사와 병산서원과 같은 독특한 건축

들이 자연친화적인 마을구성과 건축배치를 이루면서 산재해 있다. 안동하회마을은 마을구조, 가옥배치 등이 조선중기 이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생활문화와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문화유산이다..

이 마을의 관습으로서 다른 마을과 색다른 것으로 별신(別神)굿놀이와 강상류화(江上流火)인 줄불놀이가 있다. 별신굿과 별신굿때 쓰이던 하회탈, 부용대에서 벌어지는 줄불놀이 같은 독특한 민간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별신굿은 동제(洞祭)와는 달리 연례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3년, 5년, 10년에 한번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짐과 아울러 신탁(神託)이 내려짐으로써 행해지던 오신행사(娛神行事)이다. 12월 말에 준비가 시작되어 정월 초에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마을의 비동족 농민들이 행하던 놀이로서 1928년의 행제 후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그 잔존자에 의해 명맥이 다시 이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전래하는 우리나라의 가면극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줄불놀이는 칠월 십오일 부용대하(芙蓉臺下)의 시회(詩會)에 곁들인 일종의 뱃놀이로서 그 비용은 동족성원들이 부담하고 비동족들의 노력제공으로 행해지던 놀이이다. 동족집단의 성원만이 참가할 수 있었던 놀이로서 시회와 강상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돋운다는 면에서 별신(別神)굿이나 다른 제의(祭儀), 놀이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이 마을의 특기할만한 관습이라 하겠다. 별신굿에 쓰이던 탈들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제작 연대를 고려 시대로 추정하고 있어 마을의 역사가 뿌리 깊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양동마을

양동마을은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서 형산강을 따라 동북 포항 쪽으로 16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된 민속마을이다. 지리적으로 기록할만한 것은 이 형산강 줄기와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동해북부선 철도, 그리고 광활한 안강평야(安康平野)와 경주와 포항이 모두 40리쯤의 거리라는 것, 서쪽으로는 60리쯤 영천(永川)을 지나 대구(大邱)로 연결된다는 것 등이다. 옛날에는 형산강의 물도 깊어서 선박이 일상 내왕(來往)했으므로 수운편(水運便)도 좋은 편이고 해산물의 교역도 쉽게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초기에 입향(入鄕)한 이래 지금까지 세거(世居)해온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양대 문벌을 이루고 있다. 넓은 안강평야에 풍수지리상 재물복이 많은 지형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제법 큰 양반 가옥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 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큰집들이 30동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종가일수록 산등성이의 높고 넓은 터에 위치하고 파종가들은 좀 낮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도 반가의 배열 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산상 반가들은 과거 술거노비(率居奴婢)의 주거(住居)이던 행랑채를 두거나 또 외거노비(外居奴婢)의 살림집인 가랍집을 주위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대개 초가들이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공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양동마을 내에 보물이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은 모두 15가호(家戶)인데 그중 가장 오랜 예는 손동만씨의 서백당(書百堂)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반가들의 기본구조는 대개 ㅁ자형이거나 ㄷ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간혹 ㅁ자 외에 대문(大門)앞에 행랑(行廊)채를 둔 예도 있다. 예외적인 것으로 혼합배치 양식으로 ㄱ자나 一자집을 여러 동 혼합 배치하는 예도 있으나 내부구조에 있어 공통적으로 영남지방의 특색을 보이는 것은 안방과 부엌의 횡접(橫接)관계, 작은사랑과 안사랑의 구비(具備), 안대청(大廳), 사랑대청의 원주사용(圓柱使用), 지붕합각(合閣)의 처리 등이며 간혹 중부(中部), 서울식인 안방, 부엌의 하접형식(下接形式)이나 동(棟) 배치의 분산 등 예외적인 것도 있다. 대체로 집의 배치나 구성 따위가 영남지방 가옥이 지니는 특색을 띠고 있다.

마을 자체는 안강평야에 임(臨)한 셈이나 서향한 좁은 골 안에 다시 남향해서 물자형(勿字形)으로 이루어진 산골

의 산등성이나 골에 집들이 산재해 있다. 그 가옥들 중에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 만큼 다수의 가옥이 규모를 갖춘 와즙반가(瓦葺班家)들이며 그 집단부락인 점에 큰 특색이 있다 하겠다. 그 반가들은 모두 산등성이나 중허리에 터를 잡았고 산에는 샘이 귀하여 식수는 거의 모두가 산하(山下)에서 길어 올려다가 사용한다는 점도 이 마을의 특색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양동마을은 번성 당시의 마을 구성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위치(穴자 형상의 위치)에 배치된 주요 건물들은 모두 보물(무침당 등 3건)과 중요민속자료(수졸당 등 11건)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곳은 중요민속마을 지정 이후 엄격한 고증에 의해 보수·관리되고 있어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산계곡을 따라 펼쳐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양동마을은 수많은 전통건축물과 양반가문의 예법, 혼례, 장례, 제사 등의 생활문화전통이 그대로 보존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속마을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3C 문화재 보호

3D 문화재의 활용

안동과 양동 마을은 현재에도 다양한 유교문화와 전통 생활 방식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좋은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박물관이자 문화 체험장으로 일반에게 공개 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개인
- 2) 관리자: 안동시 및 개인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① 대표성과 진정성

- 하회, 양동의 두 마을은 한국의 씨족마을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조선 전기 씨족마을 형성기의 두 가지 전형적인 사례이다.
- 하회, 양동의 두 마을은 전통적인 풍수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 각각 한국 씨족 마을 입지의 두 가지 전형인 강가 입지와 산기슭 입지의 대표적이고 우수한 사례이다.
- 하회, 양동의 두 마을은 생산영역, 생활영역, 의식영역으로 구성되는 한국 씨족마을의 전통적인 공간구성을 기능적이고 경관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 하회, 양동의 두 마을은 조선시대의 가장 시기가 이르고 뛰어난 살림집, 정사, 정자, 서원 등의 건축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 하회, 양동의 두 마을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학술적, 문화적 성과물인 고문헌과 예술작품을 보관하고, 전통적인 가정의례와 특징적인 마을 행사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있는 가장 훌륭한 사례이다.
- 201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하회마을의 건축물과 무형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사적 및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 보호된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해인사 장경판전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해인사,
경상남도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3B 문화재 상세설명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 대장경판 8만여 장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장경판전은 정면 15칸, 측면 2칸이나 되는 큰 규모의 두 건물을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장경판전 남쪽의 건물을 수다라장, 북쪽의 건물을 법보전이라 하며 동쪽과 서쪽에 정면 2칸, 측면 1칸의 작은 규모의 동·서사간판전이 있다.

건물을 간결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판전으로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충족시켰을 뿐 장식적 의장을 하지 않았으며, 전·후면 창호의 위치와 크기가 서로 다르다. 통풍의 원활, 방습의 효과, 실내 적정 온도의 유지, 판기의 진열 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점은 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장경판전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조선 세조 3년(1457) 아명으로 판전 40여 칸을 중창하였고 성종 19년(1488)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30칸의 대장경 경각을 증건한 뒤 보안당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광해군 14년(1622)에 수다라장, 인조 2년(1624)에는 법보전을 중수하였다. 장경판전은 가야산 중턱의 해인사에 위치한 관계로 서기 1488년 조선 초기에 건립된 후 한 번도 화재나 전란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보존 가치가 탁월한 팔만대장경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장경판전은 세계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며, 해인사의 건축기법은 조선 초기의 전통적인 목조건축 양식을 보이는데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건물 내 적당한 환기와 온도·습도조절 등의 기능을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판전에는 81,258장의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 글자 수는 무려 5천2백만 자로 추정되는데 이들 글자 하나하나가 오자·탈자 없이 모두 고르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그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현존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재이다.

대장경판은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에서 새긴 목판이다. 대장경은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으로서 불교경전의 총서를 가리

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에 판각되었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 하며 또한 판수가 8만여 판에 이르고 8만4천 법문을 수록했다 하여 8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고려 현종(1009~1031) 때 새긴 초조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에 불타버려 다시 새겼다가 재조대장경이라 일컫기도 한다.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려자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고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기 위하여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경판을 다시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대장경판은 당초 경상남도 남해에서 판각하여 강화도 대장경판당으로 옮기고 보관하였으나 고려 말 왜구의 빈번한 침범으로 조선 태조 때인 1388년 현재의 해인사 장경판전에 옮겨 보관 중이다. 이 대장경판은 개태사의 승통인 수기(守其)가 북송판과 거란본 및 우리의 초조대장경을 대조하여 오류를 바로잡은 대장경이다.

이규보가 지은 <대장경판군산기고문>에 보면 현종 2년(1011)에 거란병의 침입 때 대장경을 새겨 거란병이 물러갔음을 상고하고, 몽고의 침입으로 이 대장경판이 불타버려 다시 새기니 몽고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달라는 염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장경판은 고종 24년(1237)부터 35년(1248)까지 12년 동안 판각하였는데 준비기간을 합치면 모두 16년이란 기간이 걸려 완성 된 것이다.

해인사 동·서사간판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교 경전은 국가에서 새긴 고려대장경판과는 달리, 고려시대에 사찰에서 새긴 고려각판이다.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경·율·논 삼장을 집대성하였기에 세계불교연구의 귀중한 문헌으로, 이 대장경은 일본이 산수대장경을 만들 때 표준으로 삼았으며, 중국에도 역수입되고,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도 전해져 세계불교 연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국보 제5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서는 대장경판 81,258권(국보 제32호), 고려각판 2,725권(국보 제206호), 고려각판 110판(보물 제34호)이 있다. 이 중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3C 문화재 보호

- ① 장경판전은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내부는 들어갈 수 없고 외부의 격자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 ② 책임관리 관청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환경부이며 이들 관청의 협력하에 보호, 관리된다.
- ③ 장경판전의 보존은 196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리되고 있다.

3D. 문화재의 활용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 전화:
- 2) 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위와 같음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국보 제5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장품으로는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판 81,258판, 국보 제206호인 고려각판 2,725판, 보물 제734호인 고려각판 110판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소장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②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 그리고 고도로 정교한 인쇄술의 극치를 엿볼 수 있는 세계 불교경전 중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경전이며, 장경판전은 대장경의 부식을 방지하고 온전한 보관을 위해 15세기경에 건축된 건축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보존과학 소산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③ 세계문화유산기준 (IV), (VI)
 - (IV) 팔만대장경판은 정교한 솜씨로 판각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판각한 것처럼 일정하다.
 - (VI) 장경판전은 오로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된 매우 드문 사례이며 18세기와 19세기 일본과 중국의 경우보다 뛰어나다.
 - (VI)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삼보사찰 중 하나로 특히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사찰이다. 법보는 불법의 토대를 마련하는 불경을 의미한다.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팔만대장경판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 ④ 과학적 가치
 - 장경판전의 건축양식은 매우 과학적인 디자인이다. 자연적으로 통풍, 습도 및 온도를 조절하여 대장경판 보존을 위한 최적상태가 되도록 고안되었다.
 - 자연 통풍을 위해 창문 틀을 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건물 내부에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과 후면의 상단부의 창문과 하단부 창문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고안되었다. 상단부 창문은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며 하단부의 창문을 통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거 국보 제52호로 지정
- ② 문화재보호법 제6조와 동법 부속 규정 제3조에 의거, 사찰 주변 1858 헥타르의 지역과 가야산이 역사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 ③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의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사찰' 로 지정
- ④ 국립공원법 제4조에 의해 사찰주변은 가야산국립공원으로 지정
- ⑤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해 문화재보존지구로, 국토관리이용법 제13조에 의해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

-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수원 화성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N37 16 20 E127 00 30
--

3B 문화재 상세설명

수원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선왕인 영조의 둘째왕자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의 팔달산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수원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의 둘레는 5,744m, 면적은 130ha로 동쪽지형은 평지를 이루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있는 평산성의 형태로 성의 시설물은 문루 4, 수문 2, 공심돈 3, 장대 2, 노대 2, 포(鋪)루 5, 포(砲)루 5, 각루 4, 암문 5, 봉돈 1, 적대 4, 치성 9, 은구 2등 총 48개의 시설물로 일곽을 이루고 있으나 이 중 수해와 전란으로 7개 시설물(수문 1, 공심돈 1, 암문 1, 적대 2, 은구 2)이 소멸되고 4개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수원화성 축성과 함께 부속시설물로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였으나 전란으로 소멸되고 현재 화성행궁의 일부인 낙남헌만 남아 있다.

수원화성은 규장각 문신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만든 성화주략(1793년)을 지침서로 하여, 재상을 지낸 영종추부사 채제공의 총괄아래 조심태의 지휘로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축성 시에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특수하게 고안·사용하여 장대한 석재 등을 옮기며 쌓는데 이용하였다.

수원화성은 축조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성곽의 일부가 파손·손실되었으나 1975~1979년 까지 축성직후 발간된 "화성성역의 궤"에 의거하여 대부분 축성 당시 모습대로 보수·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원화성은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수문(화홍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현재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고,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도시 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년전 성의 골격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축성의 동기가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경제적 측면과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성곽자체가 "효"사상이라는 동양의 철학을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 외에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가지는 성으로 이와 관련된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다.

성곽의 전돌, 건조물의 기와 등이 독특한 방법으로 제작되어 있어 현재의 기술로 이를 재현하기 어려워 보수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수원화성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 성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성벽은 외측만 쌓아올리고 내측은 자연지세를 이용해 흙을 돋우어 메우는 외축내탁의 축성술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곽을 만들었으며, 또한 수원화성은 철학적 논쟁 대신에 백성의 현실생활속에서 학문의 실천과제를 찾으려고 노력한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벽돌과 돌의 교축, 현안·누조의 고안, 거중기의 발명, 목재와 벽돌의 조화를 이룬 축성방법 등은 동양성곽 축성술의 결정체로서 희대의 수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당대학자들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동서양 축성술을 집약하여 축성하였기 때문에 그 건축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축성 후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례"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성곽축성 등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원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공심돈 등이 있다.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3C 문화재 보호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보수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연구소를 두어 연구, 보존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하며 연구 조사 결과는 보존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② 보존비용은 국비에서 지출된다.
- ③ 화성은 주변 성곽, 성문, 망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곽 내는 문화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법규에 의해 관리, 보호된다. 그리고 성곽 주변으로 보호지구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존 완충지구로 간주한다.
- ④ 보존 보호의 책임은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기도청이 협력한다.

3D 문화재의 활용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 수원시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화성은 수세기 동안 한국 건축, 도시 계획, 경관 그리고 관련 예술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성은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의 전형이며 군대건축사의한 획을 긋는 건축이다. 화성은 군사, 정치 그리고 상업적 기능을 결합한 중국이나 일본의 성곽과는 다른 것이다.
- ② 화성은 18세기 한국의 건축사와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차원에서 중요한 발전을 보여준다. 당시의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동서양의 군사시설 요소를 잘 활용하여 축성되었다.
- ③ 화성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왕에 즉위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희생된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 200년이 흐른 지금도 매년 이를 기리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 ④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2) 관련 국내법(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문화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동법 제2조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되어 화서문은 문화재 보호법 제6조에 의해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② 문화재보호법 6조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팔달문과 화서문도 동법 제 4조에의해 보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 ③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해 화성의 191 헥타르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있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1-3) 잠정목록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강진 도요지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외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동경 126° 26'--47' 북위 34° 29'--31'
--

3B 문화재 상세설명

강진 대구면 용운리·계율리·사당리·수동리 일대에는 고려시대 청자와 도기를 구웠던 183개의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보존상태가 좋은 98개의 가마터를 사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남쪽은 바다와 가까워 해로를 통한 수송이 발달했고, 북으로는 크고 작은 산과 가까워 땀감이 풍부하였다. 또한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와 규석이 산출되어 도자기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용운천 좌우에 집중적으로 가마터가 있는데, 용운천 상류에 위치한 용운리에는 75곳의 가마터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이 중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마터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엽에 성립된 초기 청자가마터로서 청자의 기원과 초기청자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 가마터에서는 중국의 월주요(越州窯)와, 요주요(耀州窯), 여요(汝窯)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각들이 발견된다.

계율리는 현재 59곳의 가마터가 남아 있으며, 대체로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후반까지 고려 전기와 후기에 양식화된 상감 청자 조각이 많이 발견된다.

용운천 하류의 비교적 넓은 들에 있는 사당리에는 43곳의 가마터가 있으나, 하천의 침식과 개간·도굴들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당리 당전마을의 가마터는 최고 수준의 청자가 만들어지던 고려 중기와 후기인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곳에서 생산되었던 도자기는 우수한 비색과 상감기법을 보여주는 고려청자 최고 전성기의 것으로 평가된다. 청자 절정기의 비색과 상감청자를 비롯한 고려청자의 여러 특징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곳이다.

수동리는 사당리 남쪽의 들판에 있는 마을로 6곳의 가마터가 있으며, 14세기 무렵의 고려후기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생산된 도자기의 형태와 기법이 다양하고, 유약의 색과 모양도 매우 다채롭다. 이처럼 대구면 일대의 도요지는 고려시대 전 시기의 가마터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구조에 있어서도 각 시기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진 도요지는 1914년부터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오고 있다. 이곳의 가마터들은 최초 발견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발굴된 요지(窯址) 중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던 가마 1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전 복원되어 있다.

3C 문화재 보호

3D 문화재의 활용

- ① 매년 청자문화제를 개최하여 도자기를 체험하고 한국의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문화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도요지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용운리 일대 15만㎡에 도요지 기념관, 도자공방체험동, 가마 및 치유동, 생태습지, 기념품 판매장, 숙박시설 등을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 ③ 세계적 문화유산인 강진군 도요지 일대를 전통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공간으로 조성, 지역발전의 새로운 명소로 재정비한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유
- 2) 관리자: 강진군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청자 절정기의 비색과 상감청자를 비롯한 고려청자의 여러 특징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곳이다.
 - ② 고려시대 전시기(10세기~14세기)의 도요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출토되는 도자기 조각들은 기형(器形)과 기법, 채색 등이 다양하여 고려사기의 발생 및 그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적 제6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진 도요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징과 한국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 제6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공주 부여 역사 지구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시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공주: N36 26 36 E127 0534 부여: N36 16 07 E126 55 41
--

3B 문화재 상세설명

1) 공주

공주와 부여 역사지구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시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유적지이다.

한국의 고대는 백제, 고구려, 신라 3국이 공존하던 시기로 기원전 1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이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 중후기의 수도였으며 따라서 당시 세련된 문화를 자랑하던 백제의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다. 행정적으로 공주와 부여는 별도의 지역이면 거리상 30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지역이다. 두 지역은 금강을 끼고 있어 무역과 국방상 유리한 지역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당시 동아시아와 문화와 문물교류가 활발하였다.

초기 백제는 한강 유역에 수도를 정하였으나 5세기경에 공주로 천도하였으며 다시 6세기 중반에 부여로 이전하였다.

공주의 중요한 백제 유적으로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석촌리 고분군 그리고 고마 나루터가 있다. 부여에는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 청산성, 청마산성 영정리 사지 그리고 구드래 지역이다.

공산성은 웅진성과 주변 시설이 위치한 곳이다. 이 성은 백제 이래로 조선시대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수, 재건되었다. 그 결과 백제 토성과 조선의 석조성이 함께 있어서 토성에서 석조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송산리 고분군은 무녕왕릉으로 유명하며 이 왕릉은 삼국시대 왕릉 중 매장되어 있는 왕과 건축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고분이다. 약 4,000여 점의 유물은 백제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고대 동아시아 연구를 위

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송산리 고분군의 6번 고분과 무령왕의 고분은 벽돌로 지어졌는데 이는 당시 백제가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수산리 고분군은 백제의 지배층의 무덤이다. 금동관, 금동신발 그리고 도자기와 같은 당시 귀족들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 또한 백제와 중국의 폭넓은 교류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2) 부여

부여의 부소산성은 사비시대(AD538~660)의 왕궁지로 알려져 있다.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은 후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정림사지에는 백제시대의 5층 석탑이 자리잡고 있다. 정림사지석탑이 축조되기 전에는 대분의 탑은 목조탑이었다. 그러나 정림사의 창건이후 목조탑은 점차 석탑으로 변화하였으며 이 사지의 석조탑은 최초의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내성은 도시내부를 둘러싸고 있다. 성은 왕국과 왕의 권위를 보여주하고자 건축되었다. 나성축조에 적용된 기술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청마산성은 백제의 대표적인 산성이다. 이 산성은 내성과는 달리 수도 전역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되었다. 이는 백제 시대에 다양하게 축조된 성들의 중요한 자료이다.

3C 문화재 보호

- ① 과학적 조사 및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원형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유지 보수를 위해 해당 기관, 지역민, 학술 단체가 참여한 종합계획에 따라 보존 관리가 행해진다.
- ③ 공주 부여 지구는 중앙의 완벽한 통제 하에 개발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불법적 개조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문화재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3D 문화재의 활용

도시전체가 고대 백제 문화재의 보고로서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2010년부터 세계대백제전이 개최되어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다양한 전통공연, 해외 예술공연, 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 공주시, 부여시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공주 부여 역사지구는 고대 한국이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일본과 유사한 건축적 기술적 특징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건축문화를 수용하여 백제만의 양식을 발전시켰고 이를 일본에 전해주었다.
- ② 이 지역은 고대 한반도에서 꽃피웠던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당시 백제가 중국, 일본과는 다른 백

제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보여준다.

- ③ 공주부여 역사지구에는 다수의 산성과, 탑 그리고 사찰이 남아 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탑과 사찰은 고대 동아시아의 불교 전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산성들은 탁월한 건축적, 기계적 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전 지역 및 해당지역 문화재가 국보, 보물 및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② 역사유적지 보존법에 의해 공주와 부여지역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남한산성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N37 28 44 E127 10 52

3B 문화재 상세설명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해발 480m지점에 궁궐을 포함한 200여개의 건축물과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한산주에 주장성(일명 일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의 남한산성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기록은 없으나 조선 『세종실록지리지』에 일장산성이라 기록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 성남 그리고 하남시에 걸쳐있다. 남한산성과 주변지역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군대시설의 양식과 축성기술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은 7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성곽과 많은 사찰, 역사적 건축물이 남아 있다.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갖춘 것은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의 난을 겪고 난 인조 2년(1624)이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왕이 이곳으로 피신하였는데, 강화가 함락되고 양식이 부족하여 인조는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그 뒤 계속적인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시설은 동·서·남문루와 장대·돈대·보 등의 방어시설과 비밀통로인 암문, 우물, 관아, 군사훈련 시설 등이 있다. 남한산성은 각종 시설이 잘 정비되어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시설이 잘 된 곳으로 손꼽힌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행궁이라 불리는 임시 궁전이다. 인조는 행궁 외에 종묘와 사직을 지어 실제 왕궁과 같은 기능을 하게하였으며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이곳 남한산성 행궁에 머물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백제 전기의 유적이 많이 있어 일찍부터 백제 온조왕 때의 성으로도 알려져 왔다.

3C 문화재 보호

- ① 남한산성의 복구와 보존은 '중정 남한지'와 같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수행된다. 국가 지정 문화재 규정에 따라 산성의 가능한 한 원재료와 축성당시의 기술로 재건축과 복구가 이루어진다.
- ② 유형 문화적 요소와 더불어 민속신앙과 전통주 제조와 같은 무형적 전통이 문화유산의 통합을 이루며 지역 문화재 전수자들을 통해 활발하게 전수되고 있다.

3D 문화재의 활용

남한산성과 주변 건물 및 유적지는 발굴 복원 후,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서울 근교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지이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유
- 2) 관리자: (재)경기문화재단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남한산성은 백제, 신라, 고구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 방위 시설의 기능하였으며 산성 내의 행궁은 종묘와 사직단을 갖춘 유일한 임시 궁궐이다. 왕의 남한산성 행차는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다. 또한 건축 양식과 기술의 측면에서 백제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적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남한산성은 건축 기술 과 마을 조성 계획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 ② 남한산성의 축성 역사는 사회 종교적 맥락에서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방어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독특하고 특별한 가치가 있는 군사, 행정 건물군을 보유하고 있다.

2)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남한산성은 사적 57호, 남한산성 행궁은 사적 48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염전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신안군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영광: N35 15 58 E126 19 56
신안: N34 59 35 E126 10 34

3B 문화재 상세설명

전라남도 신안군과 영광군에 위치한 염전은 갯펄을 이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이다. 전라남도는 한국 소금 생산의 중심지이다. 신안군은 천일염 소비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광군의 생산품은 산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광군의 소금은 젓갈을 담그거나 해산물, 굴비 혹은 민어 등을 절일 때 사용한다. 젓갈이나 해산물 절임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음식을 염장하는 방식이다.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두 지역에서 사용되는 처리과정은 생산과정에서 서로 매우 다르다. 신안군의 소금은 대개 쓴맛이 제거된 후 시장에 출시되는데 이는 약 1년이 소요되며 반면에 영광군의 소금은 3년간의 쓴맛 제거 기간을 거친 후 대부분 젓갈이나 굴비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한국의 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그리고 결정지로 구성된다. 그 외에 해주, 함수조, 소금 저장고 그리고 염전 노동자들을 위한 거주시설이 있다. 저수지는 바닷물을 가득 채우는 곳이고 증발지는 태양과 바람으로 소금의 염분도를 높이는 시설이며 결정지는 염수를 소금결정체로 만드는 곳이다. 해주 혹은 함수조는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이는 우기를 대비한 시설이다. 여기에서 생산된 소금 결정체는 남아있는 쓴맛을 제거하고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2년에서 3년 정도 저장고에 보관한다.

신안군과 영광군의 염전은 19세기 조선시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바다소금을 만드는 법이 처음 전해졌다. 사실상 원래 이 지역은 갯펄에 미리 저장되어있던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방식인,

당시 널리 보급되었던 ‘바싹 마른 소금’ 생산 방식을 위한 중요 생산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전통의 존속은 이 지역이 소금 생산의 천혜의 적격지이기 때문이다. 염전은 주로 한국의 서부 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 5대 중요 간석지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간석지는 많은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 하구의 다양한 생물 종은 소금의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물의 함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천일염은 한국의 소금공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한다. 그리고 소금은 전통적으로 한국 샤머니즘에서 정화의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 민속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소금은 군사적 목적, 건축 그리고 의복에도 사용되어 왔다.

염전은 갯벌과 인간의 생활 영역을 나누는 경계이다. 이는 자연과 문화의 양쪽에 모두 걸쳐있다. 갯벌은 물고기의 서식지로서 물고기의 생산성, 오염물질의 자연정화, 경관적 가치 그리고 홍수조절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곳은 멸종위기에 있는 물떼새와 검은얼굴 저어새와 같은 철새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염전의 지속은 곧 지역의 생태계, 경제 그리고 지역문화의 지속을 의미한다.

소금은 다른 나라의 간석지에서도 생산되지만 이들 지역은 간석지, 태양 그리고 바람과 같은 자연조건이 인간의 창조성과 화합을 이루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비록 간석지의 활용, 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전력 공급의 발전 등 다른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변화가 있어왔지만 자연환경과 천연 소금 생산 방식은 살아있는 산업 유산으로서 이들 염전노동의 탁월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3C 문화재 보호

3D 문화재의 활용

염전은 단순한 문화 유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천일염의 보급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일반인 대상의 염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과 연계된 관광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염전박물관이 있어 염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사유
- 2) 관리자
 - ① 신안군 염전: 신안군
 - ② 영광군 염전: 영광군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간석지를 활용한 소금 생산은 그 생산 과정에서 간석지의 화학적, 물리적 구성을 고려한 창조적 접근이다.
 - ② 염전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또한 바닷물 활용의 탁월한 사례이다. 염전은 인간이 일상생활에

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오랫동안 자연환경을 활용해온 살아있는 문화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등록문화재 360, 362호 지정 관리되고 있다.
- ② 신안군 염전은 갯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익산역사지구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전라북도 익산시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왕궁리 지구: N35 59 23 E127 03 18 미륵사지지구: N36 00 43 E127 01 51 입점리지구: N36 02 34 E127 01 58
--

3B 문화재 상세설명

익산역사지구는 백제의 수도였던 지역으로 왕릉 등의 유물이 남아 있다. 익산은 한반도의 남서부지역으로 선사 시대 이래로 지역적으로 금강과 만경강 사이에 위치하여 농업과 무역으로 번성하였던 곳이다. 백제 무왕이후 수도로서 기능하였으며 중국 등 선진 문명과 교류하며 풍부한 문화적 물질적 자산을 갖추었다. 고대 왕국의 수도들은 종종 대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길을 통해 주변도시와 연결되어 있었다.

수도는 궁궐, 왕릉, 종교시설 그리고 성을 갖추고 있다. 시대의 부침 속에서도 잘 남아있는 익산의 지리적 문화적 유산은 고도로 융성했던 고대 수도의 다양한 특징을 잘 지니고 있다.

익산 역사지구는 백제시대의 왕궁리 궁터, 익산 왕릉, 재석사지, 미륵사지, 사자사지, 영동리 유적지, 태봉사지 석조 삼존불상, 익산 토성, 저토성, 미륵산성, 용화산성, 낭산산성, 주거지터, 백제 시대 토기가마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유적지들은 모두 익산이 고대 수도였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동시에 입점리 고분군의 고분들은 수도와 지방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고 통치하였는지를 보여준다.

3C 문화재 보호

3D 문화재의 활용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 익산시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 ① 고대 수도로서 지리적 특징과 더불어 원래의 통합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고대 수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② 이 지역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은 고대 문명이 각각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관계는 어떠한지 보여준다. 정원과 화장실 유물, 미륵사의 건축적 양식, 왕궁리 궁터와 입점리 고분군 출토의 중국 토기 그리고 제석사지의 불상 등은 7세기 초 한국, 중국, 일본의 활발한 무역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 ③ 익산역사유적지구는 7세기의 백제인과 그들의 문화가 매우 독특하고 세련되었음을 보여준다. 미륵사지는 사찰 건축에서 3금당 3탑의 가람배치를 갖는 세계 유일의 예이다. 이 사찰은 미륵사상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다. 왕궁리 5층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함은 7세기 초 이래 백제 문화의 탁월한 세련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④ 익산 역사 유적지구 유물에 대한 기록은 수많은 사서에서 발견된다. 이 유적지의 대부분은 모두 삼국사기의 무왕조, 관음응험기, 고려사와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그리고 대동여지와 같은 역사나 구전에 언급되거나 암시되어 있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익산 지역의 대부분이 사적, 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시도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강화된 보호를 위한 요청서

1. 요청국

2. 제출일

작성자

기관 : e-mail:
 이름: fax:
 주소: 전화번호:

3. 필수사항

3A 문화재의 확인(가능하면 사진, 지도 포함)

문화재명 : 중부내륙산성군

문화재의 위치 혹은 저장 장소:

위도와 경도 혹은 UTM 좌표(지리적 위치): 삼년산성: N36 29 14 E127 44 32 상당산성: N36 39 40 E127 32 25 미륵산성: N36 48 07 E127 54 42 충주산성: N36 57 23 E127 58 42 장미산성: N37 03 42 E127 54 09 덕주산성: N36 52 08 E128 05 54 온달산성: N37° 04'37 E128° 29'53

3B 문화재 상세설명

이들 산성은 한반도 중부인 충청북도에 위치한 국방상 요충지에 있는 유적들이다. 이들은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산성의 중요 특징들을 보여준다.

한국은 '산성의 나라'로 불린다. 한국인의 조상은 산이 많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독특한 방어시설을 발전시켰다.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는 2,400여개의 크고 작은 산성들이 발견되었다. 그중 212개의 산성유적지가 충청북도에 남아있다.

한국의 산성은 설계와 축조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하며 산성의 초기 형식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외침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산성은 한국인의 탁월한 문화적 능력에 의해 이룩된 역사적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한반도 전역에 산성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적이고 독특한 산성들은 이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 산성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산성들은 과거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들이다. 특히 중부지역에서 번성했던 문화와 인접한 고구려의 최남단 지역의 문화나 중국의 당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당시의 군사 시설에 대한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독특한 형태이다. 한반도 중부지역의 산성은 다양한 형태 속에서 독특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시대에 걸쳐 차별화된 건축 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고대 이래로 공격과 방어의 군사적 전략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축성기술에 있어서 이들은 주변 국가의 산성과 비교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중부에는 7개의 대표적인 산성이 있는데 보은의 삼년산성, 청주의 상당산성, 충주의 충주산성과 장미산성, 제천의 덕주산성 단양의 온달산성 그리고 괴산의 미륵산성이 그것들이다.

삼년산성(사적 제235호)은 기록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산성으로 신라 자비왕 13년(470)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3년 만에 완성하고, 소지왕 8년(486년)에 개축한 석축산성이다. 『三國史記』에는 축성기간이 3년이 걸렸기 때문에 삼년산성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성의 길이는 1,680m이고 성의 내외벽은 납작한 자연석으로 한층은 가로쌓기를 하고 한층은 세로쌓기를 하여 매우 견고하며, 높이는 13~20m로 지형에 따라 다르다. 성 내외벽은 돌을 이용하여 쌓거나 흙을 다져 쌓는 두 가지 축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성안에는 형식이 다른 문지(門址) 4개소와 웅성 7개소, 우물터 5개소, 수구지(水口址) 등의 시설이 있다. 1983년 발굴조사 당시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조각과 각종 유물이 발견되어 이 성이 신라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삼년산성이 위치한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성의 견고함과 수성의 용이함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의 견고함은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을 통해 확인이 할 수 있으며, 삼년산성의 성벽축조방식은 우리나라 고대 축성법 연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청주의 상당산성은 중세에서 근대 시기의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역사유적지 집중지로서 제천 덕주산성, 충주의 충주산성, 장미산성 그리고 문경새재는 모두 군사적 목적의 국방시설로서 한 경관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유적지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교통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이 교통로는 고대 이래로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역사유적과 전설, 종교적, 제의적 유적 등 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단양의 온달산성은 고구려의 남진과 신라의 북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이 산성은 고구려와 신라 각각의 독특한 축성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괴산의 미륵산성은 고려 중기에 축성된 것으로 중세 산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3C 문화재 보호

3D 문화재의 활용

3E 책임 기관에 관한 정보

- 1) 소유자: 국가
- 2) 관리자: 청주시, 보은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3F 강화된 보호 승인을 위한 근거

1)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2차 의정서 10조 a항)

① 세계유산적 가치

- 삼년산성은 지형의 특징을 고려해서 축조한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포곡(包谷)형 산성으로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견고하게 축성한 성벽은 우리나라 고대 산성의 축성법 연구 자료로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 청주의 상당산성은 지방도시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산성으로 요새의 특성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상당산성이 처음 지어진 것은 삼국사기와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청북도 군사기지로 정해짐에 따라 조선시대 숙종 42년(1716)과 현종 2년(1836) 간에 9번에 걸친 보수가 있었다.
- 충주의 충주산성은 6세기에서 7세기 경까지 사용되었던 산성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문화적 현상과 방어전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석조로 축성된 다른 성과 마찬가지로 오르막길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위치에 축조되었다.
- 제천의 덕주산성: 덕주산성은 4중의 내성과 외성의 구조를 가진 한국 유일의 산성이다. 덕주산성은 지형과 주변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산성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덕주산성 주변에는 다양한 불교와 민속종교 유적지로 사자빈신사지의 석탑, 미륵사지, 덕주사 그리고 월광사지 등이 있다.
- 단양의 온달산성: 온달산성은 강변에 축조된 석조 산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성벽에는 북쪽 가장 아래지점까지 통하는 사다리꼴 모양의 뽕족한 배수구가 있다. 북문의 동쪽 부분에는 독특한 사각형의 돌출부가 있다. 북문과 동문에는 함정문이 달린 문이 그대로 남아 있다.
- 충주의 장미산성: 장미산성은 성 안에서 적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석포환 저장고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성벽에 돌출된 목조 보루가 있으며 이는 시기가 고구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산성은 근처의 중원 고구려비와 탄금대의 백제 토성과 연관이 있다.
- 괴산의 미륵산성: 중세 축조된 산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잘 보존된 미륵산성은 고려시대 널리 퍼진 다양한 건축법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미륵산성은 성문과 대규모의 중심성을 방어하기 위해 바깥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당시의 축성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② 이들 7개의 산성 하나 하나는 주변의 산과 수로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최대한 활용한 독특한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들 산성들은 모두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당시의 군사적, 건축적, 축성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두 역사적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많은 연구조사와 보존노력 덕분에 이들 산성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들 산성주변에는 고대 고분과 전통신앙, 종교 그리고 민간신앙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유적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산성은 탁월한 가치를 지닌 역사 유적지들이다.

2) 관련 국내법 (2차 의정서 10조 b항)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 삼년산성: 사적 235호

- 상당산성: 사적 212호
- 충주산성: 충청북도 기념물 31호
- 덕주산성: 충청북도 기념물 35호
- 온달산성: 사적 264호
- 장미산성: 사적 400호
- 미륵산성: 사적 401호

3)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당사국은 문화재를 군사적 목적이나 군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2차 의정서 10조 d).

당사국의 책임 담당자의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
날짜 _____

2. 영문

1-1) 세계기록유산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Printing wood blocks of Tripitaka Koreana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Chiil-li 1-gu Gaya-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Tripitaka Koreana (Goryeo Dynasty Tripitaka) are the world's only extant collection of wooden printing blocks for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are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A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including Buddha's discourses and sutras (rules of discipline) given in his lifetime and commentary by scholars in subsequent

generations, is generally called a Tripitaka, and in Korean it is also called a Daejanggyeong. This Tripitaka is also known as the Goryeo Daejanggyeong because it was carved during the Goryeo Dynasty (918~1392) or the Palman Daejanggyeong (Eighty Thousand Tripitaka),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printing blocks in the collection.

Stored in the buildings of Janggyeong Panjeon Hall in Haeinsa Temple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Tripitaka Koreana was completed by scribes between 1236 and 1251. In terms of its scholastic excellence (comparing, proofreading, adjusting, and arranging), it is recognized as the most comprehensive example of the woodblock printing technique in all known Buddhist scriptures of that time. Most of the subsequent Tripitakas produced in Japan, China, and Taiwan were based on the Goryeo Dynasty Tripitaka of Haeinsa Temple. In addition to the 81,258 wooden printing plates of the Tripitaka, the Janggyeong Panjeon Hall also stores 5,987 miscellaneous woodblocks of Buddhist texts, history, and scholastic research that were inscribed between 1098 and 1958.

The Goryeo Dynasty Tripitaka is a priceless example of the early woodblock printing technique. Lacquered using sap from the lacquer tree, the woodblocks have excellent durability and can still print crisp copies 760 years after their creation.

The total 87,000 woodblocks that make up the Goryeo Dynasty Tripitaka, as well as the miscellaneous woodblocks, record nearly the entire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that exist in Asia. Based on the value of their content and the excellent state in which they have been preserved.

World significance, uniqueness and irreplaceability

The Tripitaka Koreana is the only existing example of a Tripitaka in the form of wooden printing blocks. Only a portion of the contents of the Chinese North Song version, the Kitan version, and the Chojo Daejanggyeong (First Daejanggyeong, the edition predating the Tripitaka Koreana) of the Tripitakas produced prior to the Tripitaka Koreana survive to date, much less the original wooden printing blocks, which have been lost. That such a great number of wooden printing blocks have been completely preserved and transmitted to date, along with various techniques and cultures of printing, is a testament to the uniqueness of the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scriptures as a cultural asset.

The Tripitaka Koreana exemplifies the pinnacle of East Asian woodblock printing techniques. The level of precision and technique of the time, in processing of wood, engraving, printing is verifiable from the quality of the woodblocks and the resulting prints. With these technologies as a foundation, new scripture woodblocks could be created and distributed continually; the woodblocks of the miscellaneous scriptures area direct testament to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oodblock printing technologies over time

The Tripitaka Koreana has received the best of evaluations throughout its history as an excellent standard critical edition of the Tripitaka. The renowned Buddhist monk Sugi (d.u), charged with the task of preparing the text of the Tripitaka Koreana,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tripitakas of the Chojo Goryeo Daejanggyeong, the Chinese Northern Song version, and Kitan Liao version, and made thoroughgoing corrections and collations intended to make the most complete and authoritative edition of the Tripitaka. The ‘Goryeoguk sinjo daejang gyojeong byeollok’ (Supplementary record of collation notes to the new carving of the great canon of the Goryeo Dynasty) written by Sugi in 1247, preserves in detail the records of this editing and collation process, compiled in thirty fascicles (gweon). They are the only extant records detailing how East Asian Buddhist scholars in the pre-modern era went about the task of collating and editing multiple recensions of thousands of scriptures into a definitive canon. The efforts of Sugi, reviewing each volume of the various Tripitaka and collating and editing the multiple recensions of thousands of scriptures resemble the practice of the modern Western textual criticism. This achievement, done more than two centuries before the work of the traditionally recognized founder of modern textual criticism Erasmus (1466-1536), shows the application of Sugi’s editing philosophies in a far more flexible, facile and astute manner than that of Erasmus (See the following quotation).

Although all the other woodblock Tripitakas have since been destroyed and lost, the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have been excellently preserved to the present and are fully capable of creating beautiful prints even now, despite being produced near 760 years ago from 1237-1248. While only portions of the prints from other Tripitakas were circulated, the many prints of the Tripitaka Koreana were made and circulated as a complete set to all parts of Asia, serving as the standard text for East Asian Buddhists and scholars.

As seen in the points above, the Tripitaka Koreana not only represents the range of

knowledge and the dynamical nature of the scholarly community in East Asia in the 13th century, but in the process of continued publishing through photocopy and digitization even in the present serve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knowledge transmission from past to present.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Although the Janggyeongpanjeon, the storage facilities for the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scriptures are open to view by the public every day of the week excluding Tuesdays, the actual woodblocks are strictly restricted from public view in the interests of their preservation.
- ii) Optimum condition for Janggyeongpanjeon In order to extract precise and accurate data about insulation, humidity, amount of light exposure, weather and temperature changes within the Janggyeongpanjeon, attempts are being made to install a comprehensive preservation system.

① Janggyeongpanjeon was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② Building structure

Category	Preservation site
Air	By natural ventilation
Temperature	18~22 degrees Celsius
Relative humidity	50~70%
Luminance	Natural sunlight through the storage facility latticework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 i) The Tripitaka Koreana Research Institute digitized the full text of the Tripitaka Koreana in 2000 and distributed the text on CD-ROM and the internet
- ii) The Tripitaka Koreana Research Institut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search services and deploying a 'Tripitaka Koreana knowledgebase,'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Haeinsa Monastery
- ii) Administrator: Haeinsa Monastery
 - ① Address: 10 Chi-inni Gaya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 ② Tel: +82.055.934.3095
 - ③ Fax: +82.055.934.3096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Authenticity
 - It is possible to identify bibliographic data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the Tripitaka Koreana on each woodblock. There is a production record on the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that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year and place of inscription, names and related information about the inscriber, as well as names and deeds of any benefactor that donated for the making of the particular block. Such information is located at the margins of each woodblock.
 - The Dongguk Isangguk-jip (Anthology of Writings by Mr. Lee in the East Country) written by Yi Gyu-bo and published in 1241, records that the Goryeo dynasty directly led the commission of the task of creating a woodblock Tripitaka in the wishes of protecting the ravages to the country by Mongolian invasion through religious power.
 - The creation and history of the Tripitaka Koreana is mentioned in detail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the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other historical records.
 - ② The Excellence of woodblock printing technique
 - The Tripitaka Koreana exemplifies the pinnacle of East Asian woodblock printing techniques. The level of precision and technique of the time, in processing of wood, engraving, printing is verifiable from the quality of the woodblocks and the

resulting prints. With these technologies as a foundation, new scripture woodblocks could be created and distributed continually; the woodblocks of the miscellaneous scriptures are a direct testament to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oodblock printing technologies over time.

③ Rarity

- The Tripitaka Koreana is the oldest complete canon of Buddhist scripture, that was edited, compiled, and collated from the various Tripitakas of the time that did not survive to the present.
- Even in materials and technique, the Tripitaka Koreana was produced with the finest woodblock printing technology of the time. This is attested in part by the near-complete preservation and quality of the woodblocks that even today allow beautiful prints to be made, more than 760 years after its production.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Under the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Article 4), the Janggyeongpanjeon (Woodblock Storage House Complex),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and other woodblock scriptures at Haeinsa were designated in December 20, 1962 and are to date maintained as National Treasures 206.
- ② Furthermore, under the Article 6 of the above Act, a 1,856ha parcel of and in Mt. Gayasan, including and surrounding Haeinsa Monastery, was designated and is to date maintained as a Historic and Scenic Site.
- ③ The area up to 500 meters from the Janggyeongpanjeon was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rea (Article 8)
- ④ It is limited from any arbitrary changes to its current condition(Article 20).
- ⑤ Prevention of damage to the surrounding area of the Janggyeongpanjeon: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and the "National Park Management Act", the area surrounding the Janggyeongpanjeon is designated as a protected area that prohibits changes to the environment such as unauthorized damage to the neighboring forests or the creation of new buildings.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Hunmin Jeongeum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97-1, Songbuk-dong, Songbuk-ku, Seoul, Kansong Art Museum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manuscript published in the ninth lunar month of 1446, contains the promulgation by Sejong the Great, the fourth king of the Choson Dynasty (reigned 1418-1450), of the Korean alphabet of the same name, now called han-gal, the development of which he completed in 1443. It also contains the Haerye, or Commentaries, later explanations and examples by scholars of the Hall of Worthies, including Chong In-Ji's So, or Postface. This edition is therefore often referred to as the Haerye Edition of Hunmin Chongun.

Sejong had scholars of the Chiphyonjon, or Hall of Worthies, such as Chong In-Ji, Ch'oe Hang, Pak P'aeng-Nyon, Shin Suk-Chu, Song Sam-Mun, Kang Hui-An, Yi Kae, and Yi

Sol-Lo, write commentaries on and examples of the new orthography in Chinese, and compile them with his own simple explanation of the new script in a book with the same name as the alphabet itself and his own explanation of it, Hunmin Chongum.

Hunmin Chongum is made of 33 leaves, three parts, printed on both sides, with one front cover and one back cover. The first part which written by King Sejong was consists of 4 leaves 7sides and each side had 7 lines and 11 letters.

This work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written by King Sejong himself, contains a preface setting at his purpose in creating the new alphabet followed by the main text, which explains each of the 28 letters, with examples of consonant-vowel combinations. The second part, written by Jeong In-ji and seven other scholars of Jiphyeonjeon, consists of six chapters: 'An Explanation of the Design of the Letters,' which expounds the phonetic and philosophical principles by which the new letters were made, 'An Explanation of the Initials,' which presents the 17 consonants which appear in syllable-initial position, 'An Explanation of the Medials,' which presents the 11 vowels, 'An Explanation of the Finals,' which presents the consonants appearing in syllable-final position, 'An Explanation of the Combining of the Letters,' which demonstrates how the initials, medials, and finals are assembled to form syllables, and 'Examples of the Use of the Letters,' which shows words written with the new letters. These are followed by a postface by Jeong In-ji.

Hangeul, as this alphabet has come to be known, is unique among the world's writing systems in having been created at a specifiable time by identifiable people, without any direct influence from already existing writing systems, to become a national written language. Moreover, no other writing system has ever been promulgated in an explanatory volume. Hangeul originally had 28 letters, but four letters have dropped out of use, leaving 24 letters, 14 consonants and 10 vowels.

Hunmin Chongum is made of 33 leaves, printed on both sides, with one front cover and one back cover. It is 32.2 cm high and 20cm high and is bound with five saddle stitches, following the style of the traditional Korean book binding. It is larger than Chinese or Japanese books were at that time, as was usually the case with Korean books. Because of the larger size, most Korean books were bound with five saddle stitches while Chinese and Japanese books were bound with four saddle stitches.

The numbers of characters per vertical line and the number of lines per page in the first section, the main text written by Sejong the Great,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second section, the commentaries by the scholars of the Hall of Worthies including Chong In-Ji's Postface. In the four leaves of the main text there are 11 characters in one vertical line and eight lines on the page. But in the 29 leaves of the scholars' commentaries there are 13 characters in one vertical line and eight lines on the page. This is another way of distinguishing the main text from the commentaries.

Each leaf is printed as two pages, on either side. Each page is printed within a space of 23.3cm x 16.5cm. Considering the book size there are rather large margins on the top, bottom, left, and right. We can infer that people of the time rather emphasized the aesthetic viewpoint, with blank margins like the spacious backgrounds of Eastern paintings, instead of the economic viewpoint.

The style of writing in the Korean alphabet has changed over the centuries, but in this book we see Sejong's original "font". The print in this edition is "Gothic" in the sense that all strokes have uniform thickness, as is true of Chinese seal characters. Consonants in the initial positions are composed with straight strokes or strokes turned nearly at right angles. Vowels, in the medial position, consist of the fundamental vowels. The rectangular original "font" became more cursive from the mid 15th century. This style harmonized well with the cursive Chinese characters.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i) A photocopy is ideal for public showings.

ii) Preservation environment

① Temperature of the depository: A temperature of 18-22 is maintained. Humidity of the depository: A hydrostatic humidity of 40-60% is maintained.

② The storage container in depository: Hunmin Chongum is kept in an airtight box of paulownia wood, which is the most adequate material to preserve Korean rice paper.

iii) Prevention of disasters:

① Installation of heat sensor and fire alarm system, and automatic extinguisher.

- ② Protection in case of emergency: If it is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documentary heritage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emergenc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may take necessary measure including moving to safe place, etc. with 71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v) Recovery plans:

- ① Training program to qualify specialists to produce and maintain microfilm and photocopies and to restore the original e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and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It is not opened to the public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i) Ownership: Jeon, Sung-Woo (private)

① Address: 97-1, Songbuk-dong, Songbuk-ku, Seoul, 136-020;

② Tel.: 02-762-0442

ii) Administration: same above.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① Influence

- There is something they had been unable to do with Chinese characters.
- people to learn and use writing with great ease and their culture began to develop on a new dimension.
- The Korean government in 1946 set October 9 as Hang-gul Day

- Contributing to UNESCO's movement to eradicate illiteracy and the UNESCO gives peopl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eradication of illiteracy is called the Sejong Prizee

② Authenticity

- Obvious Making evidence of Hangul and Promulgation day
 - There is no record of publication in the book but Chong In-Ji's Postface is said to have been written in the first third of the ninth lunar month of 1446
 - Annals of King Sejong records that the book was published in the ninth lunar month of 1446, so it is clear that it was published in 1446.
- Moreover the form and contents all support publication in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and the book's paper and ink, together with the structure of its frame, attest to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③ Rarity:

-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 are very few successful cases of the invention of a new orthography.
- This book is the only extant copy of Sejong's main text with the notes he had the scholars of the Hall of Worthies write, which was published in 1446.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Hunmin Chongum is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No. 70.
- ② Relevant particulars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eservation laws are as follows: Article 1 of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Article 2, 4, 14, 15, 19 of the same Act.
- ③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Baegunhwasang Buljo Jikji simche yo jeol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58, rue Richelieu, Paris, France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Baegunhwasang Chorokbuljo Jikjisimcheyojeol" contains the essentials of Zen Buddhism compiled by Priest Baegun in the 21st year of King Gongmin(1372) at the age of 75. It is apparent that the ideas inherited from his teacher Seogok Cheonggong, a Zen(Buddhist Mediation) master, continue and transmit to this work. It was printed into the metal type by his students Seokchan and Daldam under the auspices of Myodeok, who was a Buddhist nun, in the seventh lunar month of 1377 at Heungdeoksa Temple of Cheongju city.

Jikji comprises of historical biographies such as Gyeongdeok jeondeungnok and Seonmun

yeomsong, which were to be studied by the student monks after completing the study of the teaching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Zen, including Buddha's sayings from his last moments, letters of praise, letters and poems on drawings, educational phrases and sentences, songs, writings, orthodox teachings, and dialogues. It introduced all kinds of literature for providing an understanding of Buddhism, and one hundred and forty-five Priests and Monks of India, China, and Korea are related in the contents of the book.

The key words of the title of the name of the book, "jikji simche" were derived from the famous phrase about attaining enlightenment through the practice of Zen, "Jikji insim gyeonseong seongbul" meaning the attainment of an enlightened state by direct appeal to the mind. It also means that when we come to see through Zen what the mind is, then we come to understand that mind to be that of Buddha. Because human nature is pure from the beginning, when the mind sees that it is pure and practices asceticism, one becomes a part of Buddha and one's mind becomes that of Buddha. In other words, when one is enlightened through Zen, one's mind becomes Buddha. The old priest put together a book of high standard by selecting only the essentials of Zen to teach and propagate to pupils.

Priest Baegun, who was an author, was born in the 24th year of King Chungryeol(1282) in Gobu, Jeollabuk-do province and passed away in the 23rd year of King Gongmin(1374) at the age of 77 at Chwiamsa Temple of Yeosu-gun. Priest Baegun entered the priesthood when he was young and devoted to religious ansterities. He inherited the ideas from Seogok Cheonggong, a Zen(Buddhist Mediation) master, and learned doctrines from Priest Jigonghwasang of India. After returning home from abroad, he stood abreast with National Preceptor Taego Bowoo and Priest Naonghwasang Hyegeun as Royal Mentor.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book left Korea were as follows. It had been in the collection of Collin de Plancy, a charg d'affaires with the French Embassy in Seoul in 1887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The book then went into the hands of Henri Vever, a collector of classics, and when he died in 1950, it was donated to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where it has been ever since. Although Buljo jikji simche yojeol consists of two books, the first volume has not been found yet and only the second volume is currently kept at the National Library in France.

It originally consisted of 39 chapters, of which the first chapter is missing. Although we do

not know the year Cheongju Heungdeoksa Temple was built or its size, there is an inscription on the last page that the second volume of Jikji was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at Cheongju Heungdeoksa Temple during the reign of King U in 1377. The time was about 70 years earlier than the Gutenberg Bible printing in Germany. It was introduced in one of the articles of the UNESCO Courier in 1972 that the work is the oldest extant example of printing with movable metal type in the printing history of the world.

However, no one knew the exact location of Heungdeoksa Temple until a drum and Buddhist bowls made of bronze and inscribed with the word Heungdeoksa Temple were unearthed. The location of Heungdeoksa Temple, where the book was printed, was confirmed when the museum of Cheongju University excavated the site in 1985.

The book was printed using metal type, which makes printing technology more convenient, economic, easier correcting, and makes production of books quicker. Also, it served as momentum to invent an oiled ink which is appropriate to print metal type. This practical printing method invented by Korea influenced the history of Oriental printing, and it is thought that it was spread to Europe. It is the world's oldest movable metal type printing evidence available and shows us an important technical change in the printing history of humanity. According to these values, the book was registered as Memory of the World in September 2001.

Jikji was printed in two volumes; the first volume has not been found yet and the second volume has been kept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The second volume consists of total 39 chapters and printing on both sides and the size of volume 24.6cm in length and 19.0cm in width.

Each chapter was 11 lines and each line had from 18 letters to 20 letters. Used printing type was two and middle size used for the text and small size used for the note.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The original is not opened to the public. But a photocopy is available.
- ii)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this documentary heritage.
 - ① Temperature: 18-22 degrees Celsius/ Relative humidity: 40-60%
 - ② Automatic air-conditioning system

③ Stored underground away from sunlight

iii) Preservation budget: By the budget of National Library in France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There are four photocopies.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i) Ownership: Bibliothèque que nationale de France

ii) Administration: Bibliothèque que nationale de France

① Address: 58, rue Richelieu, Paris, France

② Tel: 33-1-47-03-81-26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① Influence

- Woodblock printing ha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propagation Buddhism at the beginning of the 8th century in Korea.
- Huge projects to print Korea Tripitaka were carried out in the 11th and 13th centuries
- This printing method influenced the history of Oriental printing, and it is thought that it spread to Nuremberg-Strassburg-Mainz via Tabriz.
- The invention of printing with movable type was the turning point, which led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medieval mind into the modern one.

② Authenticity

- The author is known with when and where it was produced.
 - Jikji was written by Priest Baegun.
 - Although we do not know the year the temple was built or its size, there is an

inscription at the last page that the second volume of Jikji were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at Cheongju Heungdeok-sa Temple in 1377.

- The time was 70 years earlier than the Gutenberg Bible printed in Germany. It was introduced in one of the articles of the UNESCO Courier in 1972 that the work is the oldest extant example of printing with movable metal type in the printing history of the world.

③ Rarity

- It is the oldest extant printing materials with movable metal printing type.

④ Social value

- Buddhism, a national religion, had become corrupt at the end of the Goryeo Kingdom. During this time, some priests and monks particularly from Imje Sect, one of the many branches of Buddhism, sought to purge and revive it. Jikji was compiled by Priest Baegun to reduce Buddhist secularism
- one of the reasons Buddhism had become corrupt - and get the Buddhists to focus on meditating again.
- This book was printed using movable metal type, which is more convenient and economical and easier to correct than earlier methods.
- This methods contributed to the fast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books.
- It gave people an incentive to invent oil-based inks, which are optimal for printing.

⑤ It is registered on UNESCO World Memorial Heritage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It is kept and supervi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Dongui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664, Banpo-ro, Seocho-gu, Seoul
- Jangseoga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50, Unjung-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Donguibogam (Dong-ui-bo-gam), or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Eastern Medicine”, was written by Heo Jun (1539~1615, also known as Uiseong Heo Jun) in the early 17th century, following an order from King Seonjo. Donguibogum is an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that presents not only the Korean medical theories of the time, but also medical theories that from all over East Asia. It has 25 volumes and was printed by wooden blocks. Donguibogam is easy to consult: each disease is described, followed by recommended

methods of treatment. The texts below the headings were not written by the author himself, but were taken from other medical reference books. Donguibogam is very highly regarded and a great deal of its prestige stems from the author's informative explanatory notes that accompany each text, as well as the detailed citations identifying the source of each of the texts contained in the 25 volumes.

- ① Naegyeong (Overview of the Inner Body): This chapter explains the worldview of Bogam and its model of the human body, including the elements of jeong (essence), gi (energy), shin (spirit), and hyeol (blood), together with the “five viscera and six bowels,” or the internal organs controlling mind and body.
- ② Oehyeong (External Appearance): This chapter addresses the medical functions of visible parts in the human body and the related indicators of diseases.
- ③ Japbyeong (Various Diseases): This chapter explains the causes and symptoms of human diseases according to various standards, and outlines the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of diagnosis and treatment.
- ④ Tang-aek (Liquid Medications): This chapter describes in general the substances that have medicinal effects, in addition methods of collection, processing, prescription, and usages. Also found in this chapter are pharmaceutical theories and medications that correspond to the “five viscera and six bowels” and to meridian pathways.
- ⑤ Acupuncture: This chapter discusses meridian pathways and regions/acupoints through which gi (energy) flows; different types of medical needles and their applications; the theory and practi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guidelines for maximizing the efficacy of treatment.
- ⑥ The size of one volume measures 36.6×22.0cm. Each page has ten lines, with each line containing 21 characters. Each line is accompanied by two-line notes. The text is accompanied with visual materials at some parts. Also attached is a detailed table of contents which classifies the entries and subscriptions in a systematic manner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The two sets of Bogam are kept in an ideal environment with regular inspections and

fumigation, in addition to an around-the-clock storage surveillance system

ii) Specialized research officials conduct regular maintenance.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i) Anyone can look up the table of contents, bibliographic explanations and images of Bogam anywhere he/she can have access to the Internet by visiting the websi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i) Although reading of the original is limited, the website of Jangseohak offer all of the bibliographic data together with introduction, as these are available in the form of microfilm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i)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① Person in charge: Chief Executiv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② Contact information

- Address: 664, Banpo-ro, Seocho-gu, Seoul (137-702), Republic of Korea

- Telephone: 82-2-590-0576

- Facsimile: 82-2-590-0712

ii) Jangseoga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① Persons in charge: President of the Academy of the Korean Studies / Head of Jangseogak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② Contact information

- Address: 50, Unjung-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463-791), Republic of Korea

- Telephone: 82-31-709-6672

- Facsimile: 82-31-707-0573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① authenticity

Bogam was Edited by a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editor was Confirmed by the chronological State records. Bogam was preserved in the national archives and managed by a designated government authority from the very beginning.

② World significance, Uniqueness and Irreplaceability

Bogam is the first-ever specialized yet easy-to-learn textbook of medicine ordered by the ruler of the state to be edited in order to proclaim the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as a goal of national health care project

- Bogam is a synthetic compilation of diverse schools of medical or clinical knowledge that had been invented and developed for two thousands year in East Asia in one set of volumes
- Bogam is the unequalled compendium that incorporates on a wide scale the idea of prevention into theoretical or clinical medicine by turning to the Yangsaeng (life-breeding) principle

③ Bogam reflects the history of medical knowledge and clinical skills in East Asia. It is a summation of medical knowledge spanning ancient times to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and it has since served as an essential medical reference for treating illness and disease.

④ Bogam was registered as Memory of the World.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They are designated as Treasure No. 1085, 1085-2 and are under the custody of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covers 472 years (1392-1863) of the history of the reigns of 25 kings, from the dynasty's founder King Taejo to King Cheoljong. In chronological order, the king's everyday affairs, court functionaries' everyday reports to the king, the king's commands, and other daily matters dealt with in the public offices are compiled in 1,893 chapters in 888 books.

To keep up the compilation of Joseon Wangjo Sillok involved many historians, historiographers, and censors, who were responsible for writing daily drafts, editing them,

and printing the resulting volumes. These writers participated in every national conference and kept records of the actual details of national affairs that were decided in discussion between the king and officials.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of maintaining secrecy wer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Their daily records were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Chunchugwan Office of Annals Compilation. Except for the historians, nobody was allowed to read them, not even the king. Any historian who disclosed the contents was severely punished as a felon. The regulations and ordinances governing historiography were very strict.

When a king died, a temporary office of annals compilation was set up and the annals of his reign were published posthumously and preserved in the historical archives under rigorous management. To further safeguard them, a set of the annals was deposited in each of the four archives located in four key mountainous locations nationwide: the Jeongjoksan, Taebaeksan, Jeoksangsan, and Odaesan Archives. Some were reduced to ashes during the Japanese and Qing invasions but were reconstructed and reprinted.

There are 2,077 existing volumes that were collected from the archives: 1,181 from the Jeongjoksan Archive, 848 from the Taebaeksan Archive, 27 from the Odaesan Archive, and 21 scattered copies called Sanyeopbon. They were all registered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in October 1997.

The Joseon Wangjo Sillok cover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politics and diplomacy, military affairs, law, economics, industr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social systems, customs and manners, arts and crafts and religion. These enorm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unprecedented accuracy, serve as an encyclopedia of the Joseon society. Their beautiful font types also show the advanced printing methods of Korea from early on. Today they are indispensable materials for the study of Korean history while providing diverse resources for the study of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the China, and Mongolia.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i)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are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No.151 under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The original works are not allowed to be displayed for public viewing, for their proper preservation with the exception of special permission.

- ii) Installation of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ystem, heat sensor and fire alarm system and automatic halon extinguishing system.
- iii) If it is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documentary cultural property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emergenc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may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moving it to a safe place,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 iv) A training program to qualify specialists to produce and maintain microfilm and photocopies and to restore the original e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and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 i) 20 photographs and 20 slides
- ii)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lready have been transferred to microfilms and CD-ROMs for public viewing.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Korea government
- ii) Administration:
 - ① Chongjoksan Sagobon, Odaesan Sagobon and Sanyoppon: Seoul
 - ② T'aebaeksan Sagobon: Pusan
- iii) Contact
 - ① Chongjoksan Sagobon, Odaesan Sagobon and Sanyoppon
 - Address: San 56-1, Shillim 9-dong, Kwanak-ku, Seoul, 151-742
 - ② T'aebaeksan Sagobon: Pusan
 - Address: San 126, Koje 2-dong, Yonsan-ku, Pusan, 611-072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ese annals record historical facts about 25 kings over 472 years.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are among the most detailed and comprehensive historical records in the world. Daecheongyeokjosilok of China records only 296 years. These annals are greatly superior to any of the Chinese annals such as those of the Ming dynasty in scope, in detail and in every other respect. These Choson annals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extensive collection of historical documentary records in the world.
- ② With the kings as the central figures, the annals are daily records of the overall history and culture of the Choson Dynasty, covering politics, military affairs, the social system, law, economics, industr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customary arts, crafts, religion, etc.
- ③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is reliable. The main authors of Draft History were two historiographers, two assistant historiographers and four censors. These writers are professionals with the delegation of independence and freedom. Nobody was allowed to read Draft History and Daily Records except historiographers. Even the king was not excepted. The regulations and ordinances governing historiography were very strict. The annals were printed and then preserved in the historical archives under rigorous management.
- ④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at first were in manuscript form, then printed with movable bronze type and wooden type. Most movable-type printing in those centuries used the best quality paper, fonts, bindings, etc. Every one of the annals is a model of the Korean culture and technology of its time.
- ⑤ The condition of preservation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is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To ensure their safe transmission to posterity, copies were placed in historical archiv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Each document were copied with 4 manuscript then one was being preserved at Seoul and other three were being

preserved each archives.

- ⑥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record all the contents of Korean policy, culture and technology as well as Korea'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Therefore it is the important materials for the research of East Asia.
- ⑦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are registered on the UNESCO World Memorial Heritage.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① Joseon Wangjo Shillok was registered on National Treasure No. 151

② Legal provisions:

Cultural Properties Preservation law Article 1, 2, 4, 25, 28, 40

③ Administrative provision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Seun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Seunjeongwon, the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was responsible for keeping Seun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These diaries are a detailed record of the daily events and official schedules of the court, from the Joseon Dynasty's first king, King Taejo, to its 27th and last, King Sunjong. Through the vicissitudes of time, only 3,243 diaries are extant. The existing diaries have detailed information on 288 years of the Joseon Dynasty, from March 12, 1623 (the 1st year of the 16th king, King Injo) to August 29, 1910 (the 4th year of the 27th king, King Sunjong).

Seungjeongwon Ilgi has the largest amount of authentic historical recordings and state secrets of the Joseon Dynasty. Also, it served as the primary source to Annals of Joseon Dynasty, thus, its historical value is even greater than that of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Its content contains the entire picture of Seungjeongwon, a pivotal office in a royal court, taking care of not only important national events, but also simple routines as well. The king's appointments including gyeongyeon, or discussions with scholars on the Confucian and other Chinese classics, meetings with court functionaries, administrative acts, and affairs in the queen's inner palace were listed in the preface to a monthly diary. The names of the royal secretaries and of the scribes are recorded in every day's diary. Recorded underneath the list are the names of daily deputy officials and their attendance or absence.

The details of the main text are written in the order of the daily tasks of the Seungjeongwon, daily regards to the king and his queen, the king's gyeongyeon, the Seungjeongwon's personnel affairs, reports from different ministries, and the king's commands. On general principle, the daily records were supposed to be compiled into one diary every month. But most diaries recording the earlier period of a king were rather roughly written, so that two to five months were compiled into one diary. Later in a reign the content tended to increase, so that two diaries might be needed for one month.

The keeping of diaries began in the founding year of the Joseon Dynasty, but those of the kings before King Injo were burned to ash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and by palace fires. Thus, the extant 3,243 diaries are preserved. Seungjeongwon Ilgi vividly represents an Eastern monarchial sovereign system, politics, policy making, and power structure, while at the same time containing an invaluable legacy of documentary culture.

Seungjeongwon Ilgi, recorded by royal secretaries and scribes, provides etymological data, as well as changes in Korean and Chinese writing, the co-use of Chinese and Korean in state documents around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nation's ports, the influx of foreign civilization including the Japanese language and government system, and other diverse sources of information (social and cultural value).

It covers 288 years of weather observation from the 17th to 21st centuries. It also makes possible the accurate comparison of the lunar and the solar date (scientific and statistical

value).

It shows how Catholicism started to take root under the time-honored Confucian society and the reaction of the authorities (religious value). Diaries written after the Political Reform of 1894, the 31st year of King Gojong, record Japan's intervention in domestic affairs. They include the compulsory agreement requested of the Joseon king and other behind-the-scenes history in the court, making them primary historical sources for the study of modern times of the Far East.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original copies of Seungjeongwon Ilgi, housed in the Gyuganggak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viewing is not allowed.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scanned and provides through the Internet the hand-written copies by the Annals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Yi Royal Household Office of the Seungjeongwon Ilgi that cover from the 2nd year(1851) of King Cheoljong to the 4th year(1910) of King Sunjong. and the 141 photocopies compiled by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1961-1977) from the original Seungjeongwon Ilgi are available for public reference.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i) Ownership: Korean government,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① Address: Daejeon Government Complex, 920, Dunsan-dong,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② Tel: 82-42-481-4725

③ Fax: 82-42-481-4685

ii) Administrator: Gyujanggak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① Address: San 56-1, Sillim 9-dong, Gwanak-gu, Seoul Metropolitan City

② Tel: 82-2-880-5001

③ Fax: 82-2-876-4117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① Social and Cultural Value

- Seungjeongwon Ilgi vividly represents an Eastern monarchical sovereign system, politics, policy making, and power structure, while at the same time containing an invaluable legacy of documentary culture
- For any single documentary heritage, the size of Seungjeongwon Ilgi is unprecedented in the world: about 242.5 million characters in 3,243 diaries.
- Seungjeongwon Ilgi, recorded by royal secretaries and scribes, provides etymological data, as well as changes in Korean and Chinese writing, the co-use of Chinese and Korean in state documents around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nation's ports, the influx of foreign civilization including the Japanese language and government system, and other diverse sources of information

② Scientific and statistical value

- It covers 288 years of weather observation from the 17th to 21st centuries. It also makes possible the accurate comparison of the lunar and the solar date.

③ Religious Value

- It shows how Catholicism started to take root under the time-honored Confucian society and the reaction of the authorities.
- The entire diaries are the showcase displaying unique and numerous hand-written styles in grass characters, which will make them precious references in the calligraphic history in the world.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① It wa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303.

② The relevant Article No. 1, 2, 4, 19, 25, and 28 unde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③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Uigwe –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 The Uigwe at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Jangseogak Uigwe are preserved inside a separate building on the Jangseogak sit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Uigwe, which literally means “a model for rituals”, records through text and illustrations all the major state ceremonies and event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is guide not only covers royal weddings, funerals, and banquets, but it also contains instructions for how to construct for royal buildings and burial sites, and guides for the cultural activities of the royal family, as well as the various other state events, which were systematically organized according to the traditions. This kind of record is not confirmed in

the same Confucianism culture such as China, Japan and Vietnam.

In addition to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protocols for events, the Ugwe also includes a list of the people in charge, the number of staff, including their position and responsibilities, items used, and expenditures for each event. Accompanying the texts are colored illustrations of major items used and sketches of events, creating a fascinating visual record. Entries in the Ugwe cover politics, economy, architecture, fine arts, science, language, fashion, and cuisine, making it a valuable document for studying various historical fields. It is a vital document for recovering information on the lost royal culture of the past. In fact, the current restorations of Changdeokgung, Changgyeonggung, and Gyeonghuigung palaces are based on the Ugwe records. Traditionally, the first copy was handed to the king, while five to ten other copies were distributed to relevant departments for safekeeping. Produced with the utmost care on high-quality paper and protected by silk covers, the king's copy has outstanding artistic value. During the French invasion of 1866, 296 of the King's reference books, which were kept in Oegyujanggak (the former Royal Library) on Ganghwa-do island, were seized. They are now kept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Banchado is an illustration that shows a grand procession and the order of the participants, which was decided according to their position in society. It offers a glimpse into the various details of royal processions, in terms of both scale and content.

A Banchado illustration can also be seen at the Cheonggyecheon stream in Seoul. There the Banchado illustration is reproduced as a mural 2.4 meters high and 186 meters long. It is located in the area below the Samil Building in Cheonggye 2-ga. It depicts the 8-day royal parade of King Jeongjo (22nd king of Joseon Dynasty, 1752~1800) and his mother Hyegyeonggung Hongssi, on their journey to Hwaseong Fortress in Suwon and to Yungneung, the burial site of his father, Crown Prince Sado Seja (or posthumously designated King Jangjo). Created by leading artists of the time, this and other illustrations are priceless examples of Korean art.

Recognized for their uniqueness in the world, the 3,430 books of the Joseon Dynasty.

Ugwe refers to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all the official Protocols for performing important state ceremonies, from their preparations and procedures to the award-giving at the end of those functions. Immediately after the ceremony, an Ugwe would be compiled

and published by a Dogam, an independent temporary government office, or in modern standards, a committee, created to deal with national matters of the greatest importance, such as the funeral of a king or palace construction. In general, five to nine copies were made of each Ugwe including one for the king, one each for the four national archives located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nd one for Yejo (the Office of Protocol).

Ugwe reveals the canon of the state concerning several national ceremonies. Each one provides a detailed description of a particular ceremony, including the expenses and implements needed, so that later generations could refer to it as a guide in performing the ceremony the same way.

To produce Ugwe, a temporary government office known as a Dogam was created. The Dogam edited related documents according to an established format and compiled them into books intended for viewing by the king. The documents were named Ugwe at the time they were first created.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i) Kyujanggak

- ① According to Article 3 (location of materials) of the specification for managing Kyujanggak materials, no Kyujanggak materials (ancient classical books) may be kept outside of the Kyujanggak stack room.
- ② According to Article 13 (access limitations) of the same specifications, access to the originals of photos, microfilms, or duplicates is restricted.
- ③ According to Article 20 (access to the stack room) of the same specifications, no one other than employees concerned may access the stack room.
- ④ Facilities: 4 floors above ground and 1 floor underground; reinforced concrete Rahmen structure building (total area: 9,567 m²)
- ⑤ Staff: 6 curators, and 6 professional assistants

ii) Jangseogak

- ① According to Article 30 (Criteria for Designation of Valuable Materials) and Article 31 (Management of Valuable Materials) of Chapter 7 of the regulation for managing

Jangseogak materials(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Valuable Materials), valuable materials must be separated from ordinary materials, maintained in a secure area, and inspected at least once every two years.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must be reported to the President.

- ② Facilities: 2 floors above ground and 1 floor underground (Total area: 8,132m²)
- ③ Manpower: 3 professionals, and 4 librarians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In principle, the original copies of all Uigwe are not open to the public for the sake of preservation and security. However, exceptions can be made for special purposes and microfilms and other media copie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particular, the images are available via the Internet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i) Kyujanggak,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① Persons in charge: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of Kyujanggak,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② Contact information:
 - Address: San-56-1, Sinrim-dong, Gwanak-gu, Seoul
 - Phone: +82-2-880-5316
 - Fax: +82-2-873-5328

ii) Jangseoga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① Persons in charge: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President of Jangseoga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② Contact information:
 - Address: 50, Unjung-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 Phone: +82-31-709-6672
 - Fax: +82-31-707-0573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① Authenticity

- Uigwe were created by a national institution.
 - Uigwe were compiled by Dogam, temporary government offices which were implement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creating the Uigwe, and other government offices such as Yejo (the Office of Protocol).
 - The extant Uigwe were managed and handed down by national institutions from its early stages.
- Information on the authors and its creation process can be confirmed in the Joseonwangjo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of the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both of which are already registered as Memory of the World.
- The Uigwe were created based on official primary records of the particular rite or ceremony, while maintaining the format of the original documents. Only the format of the arrangement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Uigwe system
- For its practical use as a reference, the Uigwe offered not only a clear description of how ceremonies, rites and rituals should be performed, but also a comprehensive listing of all the human resources, preparations and materials required.
- It was modified and edited by an official government office (a Dogam) authorized to create the document. By dint of the authority of its producer, the result of its transformation into a Uigwe had the same nature and authority as the original records of the ceremony.
- From the moment an Uigwe was produced, it was continuously managed and preserved by government offices responsible for storing documents.
- After the demise of the Joseon Dynasty these materials were stored in state facilities, and after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were managed by agencie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② Importance

- Uigwe are a compilation of documents used as references for conducting important state

rituals based on Confucianism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styles of the Joseon Dynasty.

- The Ugwe describes the implementation of Yechi (禮治, rule by civility) based on the universal Confucian ideology.
- Confucianism was the dominant ideology of East Asia for political purposes as well as offering a universal value system for humanity at the same time.
- The Ugwe clearly shows how Confucianism was implemented in the Joseon Dynasty.

③ Uniqueness

- As a system for compiling records, the Ugwe presents a unique format without precedent.
- Standardized Ugwe were created according to fixed rules, classifying the primary records of a ceremony or event into various grades resembling that of the socio-political hierarchy of rank. After classification, the Ugwe were then compiled according to date.
- The Ugwe is a record of the highest form in a society based on a Confucian class system.
- In the Korean system of hierarchical class ranking, even methods of recording information possessed characteristics of rank and position.
- The Ugwe system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primary documents, and information was delivered in a systematic structure to fit the bureaucratic society.
- Most Ugwes contain a variety of illustrations and schemas.

④ Only professional certified painters and printers of the times were employe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the Ugwe.

⑤ Scarcity

- Only a limited quantity was produced.
- Only a limited number of copies (5-9 copies) was produced.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According to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each Ugwe wa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Treasure, Important Folklore Material.

- ② As copyrights are protected for 50 years after the death of an auth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of the Copyright Act,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is already over. However, according to Articles 5 and 6 of the Copyright Act, secondary works of the original, such as translations, arrangements, transformations, dramatizations, film productions, and edited works are protected as independent works.
-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Changdokkyng Palace Compound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Seoul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N37 33 E126 59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Changdeokgung was built in the 5th year (1405) of the reign of King Taejong of the Joseon Dynasty, as a separate palace of Gyeongbokgung, the original main palace of the dynasty. Located to the east of Gyeongbokgung, it has also been called Donggwol, the east palace. Gyeongbokgung and Changdeokgung were burned dow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Changdeokgung was reconstructed in 1609 and served as the royal seat for 300 years until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In 1592,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Palace was burned down, along with many other important structures in Hanyang. When the seven year war was over, Changdeokgung Palace was in ruins. The ruler of the period, Sonjo, initiated its reconstruction in 1607, and this work was completed in 1610, during the reign of his successor, Kwanghaegun, when it once again became the seat of government and the royal residence, a role that it was to play for 258 years. It underwent some vicissitudes during that period – during the Qing invasion of 1636, the occupation of Kanghwa Island by a French fleet in 1866, and during a US reprisal attack in 1871, principally from fires, but reconstruction was always faithful to the original design.

Overall, Changdeokgung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quarters, residential quarters and a rear garde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quarters encompass Donhwamun, the front gate, which is the oldest existing palace structure, Injeongjeon, the throne hall, and Seonjeongjeon, the administrative hall. The residential quarters include Huijeongdang and Daejojeon, the king's and queen's bedchambers, the royal kitchen, the infirmary and other annexes. The rear garden has exquisite pavilions, the court archives, a library and lotus ponds.

There is a garden at the rear landscaped into a series of terraces planted with flowering trees and flowers.

When the main Palace complex was built, the area of some 20ha to the north, on the slope of the mountain, was left in its natural woodland state, but in 1459 Sejo ordered it to be extensively landscaped, to create the Piwon (secret garden), for the use of the royal family and their court. When the Palace was rebuilt after its destruction during the war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in 1592–98, the garden began to be embellished with pavilions and other features.

Changdeokgung is well tuned to its natural backdrop of hilly terrain and lush woods. Taking advantage of the surroundings, the palace's magnificent halls, pavilions, and rear garden are laid out in a rather liberal way, which makes it a landmark of palace architecture and garden landscaping.

The rear garden is adorned with precious trees, some of which are now 300 years old. It represents the zenith of Korean garden landscaping techniques. The royal family and court functionaries enjoyed both reposeful moments and garden entertainment here.

For the unique configuration of its palatial buildings and its rear garden, showing an ideal example of Oriental architecture yet quite distinct from the Chinese Zijin-cheng Palace, Forbidden Palace, or the Japanese imperial palace, Changdeokgung was registered on UNESCO's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in December 1997.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The site is managed by the Changdokkung Palace Administration Office.
- ii) Overall supervisory responsibility rests with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 iii) Funding for all aspects of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site is provided from the national budget.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 i) During summer vacation, Cultural School is operated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cultural heritage of the palace with its history, architecture and garden. Additionally, the cultural school carries out field trip to deepen the awareness of cultural heritage.
- ii) The Palace open in scheduled time, guided by cultural interpreters. And the garden of the palace is opened to those who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or: the Changdeokgung Palace Administration office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As a major cultural heritage, Chongdokkung Palace has had ad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architecture, garden and landscape planning, and related arts for many centuries.

It reflects sophisticated architectural values, harmonized with beautiful surroundings.

Palaces (and Changdokkung in particular) were built with the utmost care for architectural achievement, creative design, and landscaping, in order to demonstrate the authority of the king over the nation.

- ② Both the Imperial Palace in Beijing (China) and the Gosho Palace in Nara (Japan) differ fundamentally from Changdokkung, however, since they are laid out formally and symmetrically on level ground, whereas the layout of Changdokkung conforms with the uneven natural topography of a mountainside.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It is designated a historic site 122.
- ② It is designated as a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 in conformity with Article 13 of the National Land Utilization and Management Act.
- ③ Designation as a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Zone under the terms of Article 18 of the Urban Planning Act
- ④ Designation as an Historic Sit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6 and 7 of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means that any changes to its existing state require official authorization. There is a formal protection zone of 20m around the entire site.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Dolmen Sites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 Koch' ang-gun County, Chollabuk-do Province
- Hwasun-gun County, Chollanam-do Province
- Kangwha-gun County, Incheon Province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Dolmens are large burial monuments, which are numerous in Asia, Europe and North Africa. Korea has the greatest number of dolmens in the world. These are of great archaeological value for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on the prehistoric peoples who erected them, and their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beliefs and worship rituals, arts and celebrations and other secrets.

Dolmens appear to have arrived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Bronze Age. In East Asia two main groups have been recognized,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form: the table type (the “northern” type) and the go-board type (the “southern” type).

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 have the highest density and variety of dolmens in Korea. About 30,000 dolmens spread all over the Korea. People marvel at not only their numbers, but also the diverse types: the table type, known as the northern type, the go-board type, known as the southern type, the capstone type and others.

With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dolmen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designated dolmen sites as historical sites or provincial monuments, and performed precis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surveys and scientific excavations.

Dolmen sites were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00.

1) Koch'ang Dolmen Site

The Chungnim-ri dolmens, the largest and most diversified group, centre on the village of Maesan. The capstones of the dolmens here are 1-5.8m in length and can weigh 10-300t. A total of 442 dolmens has been recorded, of various types, based on the shape of the capstone. The dolmens around Sanggap-ri with the northern type has an academic value as it is located at the Northern Limit Line

2) Hwasun Dolmen Site

The Hwasun dolmens are located on the slopes of low ranges of hills, 10km along the Chisokkang river and about 500 dolmens have a good conditions. Also a stone quarry was founded and it presumes to have important value to show the construction process of stone, covering technology, construction and transport.

There are about 230~ 500 dolmens of the go-board type (southern type) at the both sides of Boseonjae valle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ite, dolbang grave (seoksilbun), dokmudeom (onggwanmyo), dolneolmudeom (cist), and neolmudeom (togwangmyo) were confirmed and the ornaments of stone, pottery, bronze and various artifacts have been excavated.

In a number of cases the stone outcrops from which the stones making up the dolmens

were quarried can be identified

Capstone on the Daesin-ri hill slope is the greatest one with the length 7m, height 4m, weighing about 200 tons. This dolmen site is very important to compare and research for Korean ancient culture as the surrounding of the site is well-preserved.

3) Kanghwa Dolmen Sites

These sites are on the offshore island of Kanghwa, once again on mountain slopes and about 120 dolmens are located.

The largest dolmen of northern type in Korea with the length 7.1m and height 2.6m is located in here, they tend to be higher than those in the other sites with the 100-200meters above sea level.

Bugeunri dolmen with the table type among about 40dolmens around Hajeommyeon have been designated as historical sites in 1964. The size of Bugeunri dolmen is 2.6m full height and the length of capstone 6.5m, width 5.2m, the thickness of the granite is 1.2m.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This areas are opened to the public.
- ii)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and conservation policies at national level rests with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 iii)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an agency of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carries out academic research, field survey, and excavation(in association with university museums).
- iv) Management cover scientific research(survey, inventory, selected excavation, palaeo environmental studies),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selective clearance of vegetational cover, routing of visitors purchase of neighbouring farmland to prevent incursions, etc), systematic monitoring, and presentational aspects(signage, access roads and parking, interpretation facilities,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organization of festivals and other events onsite.
- v) Funding for repair work i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Other sources of funding are the revenues from admission fees to the sites.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It is a representative tourist areas opening to the public. In each area, Various programmes such as local festival and the reconstruction event of Dolemen m are operated.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All the properties belong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ion: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and conservation policies at national level rests with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 ① Chollabuk-do, Koch'ang-gun;
 - ② Chollanam-do, Hwasun-gun;
 - ③ Incheon Metropolitan City;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e Korean dolmens constitute what is probably the largest and is certainly the most representative assemblage of these exceptional examples of prehistoric culture in East Asia. There are about 30,000 dolmens all over the country. There are comparable dolmen cemeteries elsewhere in east Asia, notably in China and Japan. However, the types represented is more restricted in both cases. The Korean groups contain a greater diversity of types, and are also larger than any others in the region. These are of great archaeological value for the information that they provide about the prehistoric peoples who built them and their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beliefs and rituals, arts and ceremonies, etc.

The Koch' 'ang, Hwasun, and Kanghwa sites contain the highest density and greatest variety of dolmens in Korea, and indeed of any country. They also preserve important evidence of how the stones were quarried, transported, and raised and of how dolmen types changed over time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Dolmens were registered on UNESCO's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① The three sites are designated Historic Sites of Local Monument No. 137, 391, 410

② They ar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 Any form of development of intervention requires authorization and the carrying out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The sites are also designated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s under the National Land Use Management Law and similar constraints apply.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10 Chi'in-ri, Gaya-myeon, Hapcheon-gun, Kyeongsangnam-do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N35 47 60 E128 5 60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Janggyeong Panjeon complex is the oldest part of the temple and houses the 81,258 wooden printing blocks from the Tripitaka Koreana. Although the exact construction date of the hall that houses the Tripitaka Koreana is uncertain, it is believed that King Sejo expanded and renovated it in 1457. The complex is made up of four halls arranged in a rectangle and the style is very plain because of its use as a storage facility. The northern hall is called Beopbojeon (Hall of Dharma) and the southern hall is called Sudarajang (Hall of Sutras). These two main halls are 60.44 meters in length, 8.73 meters in width, and 7.8

meters in height. Both have fifteen rooms with two adjoining rooms. Additionally, there are two small halls on the east and west which house two small libraries.

The Haeinsa woodblock depositories were built in the 15th century and are the only buildings in the World built for the sole purpose of storing the Tripitaka (“Three Baskets”) woodblocks. They are also one of the largest wooden storage structures in the world. The depositories were built in the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al Style of the early Choson period and are unparalleled not only for their beauty but also for their scientific layout, size, and faithfulness to function, ie the preservation of the woodblocks. They were specially designed to provide natural ventilation and to modulate temperature and humidity, adapted to climatic conditions and thus Preserving the Precious woodblocks for some five hundred years undamaged by rodent or insect infestation.

The Haeinsa Tripitaka woodblocks were carved an appeal to the authority of the Buddha in the defence of Korea against the Mongol invasions. They are recognized by Buddhist scholars around the world for their outstanding accurate and superior quality. The Tripitaka Koreana is by far the most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laws, and treaties extant today, a fact clearly evident in the Japanese use of them as the basis for their compilation of the Taisho Shinsu Daizokyo. Chinese Buddhist scholars have also used the Tripitaka Koreana as a reference in their compilations. China is also compiling Its own Tripitaka based on the Tripitaka Koreana.

The Haeinsa Janggeong Panjeon depositories house the world’ s most complete and accurate version of the Tripitaka, the Complete Buddhist canons. They were carved to replace the first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carv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onjong (reigned 1010-31) in the hopes of protecting the Koryo kingdom from invasion by the Khitan People Of Mongolia. The first Set Of Woodbloks were carved during the Mongol invasion of 1232. The Seat Of the Koryo court was moved to Kanghwa Island in that year, at the beginning of a long episode of resistance. The project began in 1237 with the woodblocks for two volumes, comprising a total of 113 books, and wasCompleted twelve years later with the woodblocks for the three-book index, making a total of 1496 Volumes (6568 books) of Buddhists teachings, sutras, and rules.

The woodblock depositories are the most important buildings in the Haeinsa Temple

complex. They are located at a higher level than the main hall (Taejokkwangjon), which houses the main Buddha of the temple, and the other thirty buildings of the complex. They consist of four buildings, arranged in a rectangle on the slope of Mount Kaya. The two largest buildings, each measuring 15 kan long and 2 kan wide (the kan is a traditional unit of measurement of the space between two pillars, equivalent to c 1.8 m), are Sudarajang to the South-West and poppojon to the north-east. There are two smaller buildings (Sagango) at the east and West ends of the depository, 2 kan long by 1 kan wide, used to house woodblocks carved at the Haeinsa Temple.

The Temple of Haeinsa and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were add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1995. The UNESCO committee noted that the buildings housing the Tripitaka Koreana are unique because no other historical structure was specifically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artifacts and the techniques used were particularly ingenious

The former of the personage length petal to do designation was managed at national treasure 52nd unit, as for major general cultural property Buddhist Sutras with 1995 December UNESCO world-wide cultural heritage the 81,258th petal which sells (national treasure 32nd unit), the consideration printing block 2,725th petal (national treasure 206th unit), (treasure 734th unit) there was registered a consideration printing block 110th petal.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Janggyeongpanjeon is open to the public, but not allowed to enter inside. Instead, in can be watched through windows.
- ii) The responsible national agency is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Collaborating institutions ar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aegu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fice),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korea National Parks Authorit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aegu regional Office of Environment).
- iii) The general condition of the structures is good, though repairs are needed to some of the shelves on which the wood blocks are stored.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Korean Buddhist Chogye Order, Haeinsa temple
 - ① Address: 10 Chiin-ri, Gaya-myeon, Hapcheon-gun, Kyeongsangnam-do
- ii) Administrator: Korean Buddhist Chogye Order, Haeinsa temple
 - ② Same above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e Haeinsa Changgyong P' 'ango (depositories) wa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52.,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as National Treasure No 32., Goryeo wood blocks as National Treasure No 206. and Treasure No 734.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and collections were registered on UNESCO World Memorial Heritage.
 - ② The Korean version of the Buddhist scriptures (Tripitaka Koreana) at the Haeinsa Temp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most Complete corpus of Buddhist doctrinal texts in the world, and is also outstanding for the high aesthetic quality of its workmanship. The buildings in which the scriptures are housed are unique both in terms of their antiquity so far as this specialized type of structure is concerned and also for the remarkably effective solutions developed in the 15th century to the problems posed by the need to preserve woodblocks against deterioration.
 - ③ The woodblocks are also valuable for the delicate carv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so regular as to suggest that they are the work of a single hand.
 - ④ The depositories at Haeinsa are extremely rare in that they were built for the express purpose of housing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18th and 19th century buildings for the same purpose in China and Japan are inferior in design and construction. They are also among the largest wooden structures in the world.

⑤ Scientific Value

- Several ingenious preservation techniques are utilized to preserve the wooden printing blocks. The architects also utilized nature to help preserve the Tripitaka.
- Janggyeong Panjeon faces southwest to avoid damp southeasterly winds from the valley below and is blocked from the cold north wind by mountain peaks. Different sized windows on the north and south sides of both main halls are used for ventilation, utilizing principles of hydrodynamics. The windows were installed in every hall to maximize ventilation and regulate temperature. The clay floors were filled with charcoal, calcium oxide, salt, lime, and sand, which reduce humidity when it rains by absorbing excess moisture which is then retained during the dry winter months. The roof is also made with clay and the bracketing and wood rafters prevent sudden changes in temperature. Additionally, no part of the complex is exposed to sun. Apparently, animals, insects, and birds avoid the complex but the reason for this is unknown.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Law, the Haeinsa Changgyong Pango(depositories) as National Treasure 52.
- ② Article 6 of this Law, supported by Article 3 of the statutory regulations pertaining to it, designate the 1858ha area around the temple complex, including Mount Kaya, as an Historical Site Scenic Area.
- ③ Haeinsa Temple is also registered as a "Buddhist temple with historical significance" under the terms of Article 3 of the Traditional Buddhist Temple Preservation Law.
- ④ The surrounding area is designated as Mount Kaya National Park under Article 14 of the National Park Law.
- ⑤ A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Zone under Article 18 of the Urban Planning Law, and a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 under Article 13 of the law of National Land Use Management.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Historic Villages of Korea - Hahoe and Yangdong
--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257 hahoe-ri, Pungcheon-myeun, Andong City, Gyung-sangbuk-do
--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1) Hahoe village

Hahoe village is an example of a new yangban settlement being formed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by three clans, Heo, An and Ryu. In the 16th century the Ryu clan produced distinguished politicians and scholars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architecture of the village, particularly the study halls.

The village is sited on the upper reaches of the Nakdonggang River where it loops around

Mount Hwasan. The name Hahoe means the river meanders. The Nakdonggang River flows south into the Korean Strait and drains most of north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s. The river water allowed the region to prosper from rice production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e nominated area consists of the village, some of the cultivated fields, the lower slopes of the mountain behind, and the edges of the river on the opposite banks of the river, on which is the Hwacheonseowon Academy. Also in the nominated area is the Byeongsansseowon Confucian Academy, a discrete site approximately 3km east of the village joined to the main site by the buffer zone.

The village centre is a small mound on the upper slopes of which is Yangjindang House, the head family house. In plan, this mound is seen as the centre of a lotus flower with the pistils or stamens extending outwards from it. The road linking Yangjindang House to Chunghyodang house,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a branch of the family, forms the main axis of the village. Spread out round the village are yangban, or aristocratic houses, with their facades built to face a good view, and surrounding each of these are clusters of commoners' thatched roof houses.

The village and its main noble houses were set out to reflect pungsu principles, in their orientation towards protective mountains.

The descriptive text in the nomination dossier mainly concentrates on the houses of the nobility. ICOMOS notes that there is little description of the collection of commoners' houses, the spaces between buildings or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with its forests, agricultural fields and valued views.

As an exotic custom of the village to other villages, Hahoe Pyolshin-Gut T'al-nori(男師神) and Gangsangryuhwa(江上流火)- Julbulnori- are an exotic custom of the village to other village. There are unique folklores such as Hahoe Pyolshin-Gut and the Hahoe masks, Julbulnori in Buyongdae.

Unlike other Rituals, Hahoe Pyolshin-Gut T'al-nori did not given every year. It had held at 3 years, 5 years, and 10 years as an event of entertaining deities when the condition was better than before financially and an oracle came. The preservation of Hahoe Pyolshin-Gut T'al-nori had started in the end of December and it held at early January of next year.

Hahoe Pyolshin-Gut T'al-nori getting together with the life of Korean nation was finally interrupted in 1928. It is assumed that Hahoe Pyolshin-Gut T'al-nori is the oldest one among mask drama in Korea.

Only same family can take part in the Julbulnori and it can be called a special custom as it tickle to develop great spirit(浩然之氣) unlike other rituals or noris. These masks used for the Hahoe Pyolshin-Gut T'al-nori were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Although the time of production is not identified exactly, only can be presumed as the Koryo Dynasty Periods, we can imagine the village has a long history.

2. Yangdong village

There are 15 house which were designated as treasures or Important Folklore Materials in Yangdong village and Seobaekdang House estimated to be oldest one. Most of the basic structure of these noble family house is the type of ㅍ or the type of opened ㅍ. And the structure of some house has servants' quarters front of the main entrance.

The village lies at the mouth of a narrow valley between the many folded ridges of Mt Seolchangsang to the northwest and Seongjubong Peak to the south-east, through which flows the Yangdongcheon stream, a tributary of the Allakcheon stream which flows into the larger Hyeongsangang River. With the guardian mountain at its back, the village faces out across the Allakcheon stream to a wide plain within which is the Angang Field - the main agricultural fields of the village.

Most of the noble family house nestled under the hills or alongside of mountains and there was a water shortage therefore, every house had to carry water from the lower part of the mountain.

Yangdong village well kept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time being of expansion of the village. Main builds which well arranged in terms of pungsu principles, are designated as Treasures and Important Folk Materials. Yangdong village has the original figure owing to critical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natural beauty of the Yangdong village remains untarnished and also many traditional buildings and the manner, wedding ceremony, funeral ceremony, and ancestral rites of noble family are well preserved. The village is evaluated the one of the well preserved folk

villages.

At the time of being of designation, the name of the Yangdong village was 'Wolsung Yangdong village'. As the name of "Kyeongju" has been used since the Koryo Dynasty Periods and "Wolsung" used for the limit period for administrative expediency. Therefore, the name of the village had changed to "Kyeongju Yangdong village".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It is opened widely to the public and also many experience programmes are carried out. Various Confucian Culture and traditional way of life still remain intact in Hahoi and Yangdong. It functions as a field trip site for education. Whole town is a museum and cultural education site.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government
- ii) Administrator: Andong-si, Yandong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Hahoe and Yangdong has the longest history among the clan villages in Korea and each of them is the typical example of clan villages in the early days of Joseon Period.
 - ② These two villages are excellent examples which follow the traditional Fengsui principles and each represents the layout along the river and the layout of slope respectively.
 - ③ Hahoe and Yangdong is the very rare example to maintain the traditional space and

landscape of clan village in Korea functionally and intactly which consists of the production area, living area and ceremonial area.

- ④ These two villages are the only example which have a lot of architecture such as residential houses, study halls, pavilions and Confucian Academy.
- ⑤ Hahoe and Yangdong preserve old literature as academic and cultural outcomes and works of art by Confucianists in Joseon Dynasty and maintain traditional family rites and characteristic village event successfully up to now.
- ⑥ Hahoe and Yangdong were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in 2010.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According to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architecture, intangible heritage are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Treasure, Historic site and Important Folklore materials.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Hwasong Fortress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190 Yeunmu-dong, Jang'an-gu, Suwon-si, Gyunggi-do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N37 16 20 E127 00 30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Crown Prince Sado Seja, son of the 21st Choson ruler Yongjo, was the victim of a court conspiracy and unjustly condemned and executed by his father. When Sado's son Chongjo succeeded Yongjo in 1776, he had his father's remains exhumed and buried in a tomb on Mount Hwasan, which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auspicious geomantic site. He built Yongjusa Temple nearby for the repose of his soul, and moved the seat of government to the foot of Mount P'altalsan in Suwon. Chongjo had another reason for moving his seat of government. By doing so he would be able to bring factional strife to an end, to enhance

the authority of the throne, and provide greater security for the court within the walls of the new fortress that he caused to be built.

The massive walls of the Fortress, 5.74km in length, enclose an area of 130ha which includes the foot of Mount P' 'altaisan. They follow the topography of the land, rather than taking up a regular or symmetrical form. The walls take into account the general use of artillery at this time. There were originally 48 defensive features along the length of the walls - four gates, floodgates, observation towers, command posts, multiple-arrow launcher towers, firearms bastions, angle towers, secret gates, beacon towers, bastions, and bunkers - and most of these survive intact. The height of the walls, which are slightly concave up to rampart level, varies between 4m and 6m, depending on the topography. The parapet, averaging 1.2m in height, is crenellated. Each merlon has three gun embrasures.

This was laid out in accordance with the work by Chong Yag-Yong, a leading scholar of the School of Practical Learning (Shirhak). Published in 1793 under the title *The Strategy of Fortifications* (Songwha Chulyak), this influential work covered both eastern and western developments in military architecture. Building was completed between January 1794 and September 1796, under the supervision of Chae Jae-Gong, a former minister and magistrate of Yongjungch' 'u Prefecture. Cranes, pulleys, and other special pieces of equipment were designed and built specially for the project, which is described in detail in *Archives on the Construction of Hwasong Fortress* (Hwasong Songyok Uigwe).

Various other structures were built around the Fortress, including the Hwasong Country palace and Sajiktan, the altar for sacrifices to the guardian deities of the state. These were burned down during the course of later wars and rebellions, and only Nangnamhon Hall, an annex of the Country palace, has survived to the present day. Parts of the Fortress were destroyed or damag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 but the availability of the Archives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fortress to be restored to its authentic original form.

Hwasong Fortress has had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ing and related arts for many centuries. It is the epitome of this type of structure in the Far East and is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military architecture. It differs from fortresses in China and Japan in that it combines military, political, and

commercial functions.

The fortress sprawls on both flatland and hilly terrain, something seldom seen in neighboring China and Japan. It is designed to serve political and commercial as well as military functions. Under the influence of Silhak, or Practical Learning, which was the new trend of thought gaining ground at the time, the fortress was built scientifically utilizing newly invented construction equipment. Fortification facilities were enhanced by properly combining stones, bricks, and wood and by incorporating drainage, rampart slit embrasures, crenellated parapets with embrasures, and bastions. The Hwaseong Seongyeok Uigwe (Archives of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was published in 1801. It records every detail of the project, from blueprints to engineering methods, required materials, workforce, budget, timetable, and so on.

The Hwaseong Fortress envelops downtown Suwon City in a huge ellipse running a total of 5.52 km. There are 41 existing facilities along the perimeter, including four cardinal gates (Paldalmun, Jangannmun, Changnyongmun, and Hwaseomun), one sumun (floodgate), four ammun (secret gates), four jeokdae (gateguard platforms), two gongsimdon (observation towers), two jangdae (command posts), two nodae (multiple-arrow-launcher platforms), five posa (firearms bastions), five poru (sentry towers), four gangnu (angle towers), one bongdon (beacon tower), and nine chi (bastions). Each structure harmonizes architectural splendor and function on a key strategic spot.

The fortress was registered on UNESCO's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in December 1997.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Under the terms of the statutory protection, all restoration and repair work must be carried out by authorized specialists.
- ii) The nominated property is the circuit of walls, with its gates, towers, and other components. The area within the walls is a cultural protection zone and so subject to regulation, and there is a thin protection zone outside. these are taken to constitute abuffer zone.
- iii) The nominated property is government property. Overall responsibility for its protection

and management is vested in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which has as collaborating agencies the Ministries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of Home Affairs and the Ky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Government
- ii) Administrator: Ky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Hwasong Fortress has had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ing and related arts for many centuries. It is the epitome of this type of structure in the Far East and is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military architecture. It differs from fortresses in China and Japan in that it combines military, political, and commercial functions.
 - ② The nominated property illustrates an important development in architectural history, and also the cultural, artistic, architectural, and scientific level of 18th century Korea. It was built making use of architecture of the period,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philosophy of Shirak (“Practical Learning”)
 - ③ Hwasong Fortress is of great associative importance, since it was built by Chongju, 22nd ruler of the Choson Dynasty, in memory of his father, Crown Prince Sado, who had been unjustly condemned and done to death. This act of filial piety is still commemorated, two centuries later, by an annual ceremony.
 - ④ Even though Hwaseong Fortress has a short history, an outstanding feature of this is an unique fortress mixed East military theory and West one. Approximately 6km of the wall has 4 gates and all the buildings have different shapes and designs.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e Hwasong Fortress is designated as a cultural management zon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Urban Planning Act and as a park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at Act.
- ② Under the terms of Article 6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t is also designated and managed as an Historical Site. The Paltakmun and Hwasomun Gates are designated Historical Treasures.
- ③ The 191ha enclosed by the walls are designated and managed as a protection a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Jongmyo Shrine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1-2, Hunjeon-dong, Jongrogu, Seoul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N37 33 E126 59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Chongmyo is the royal ancestral shrine of the Choson dynasty. T'aejo, founder of the Choson Kingdom, transferred the seat of government to Hanyang in August 1394 and ordered Ch'oe Won, his directo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o start building Chongmyo in December the same year. It was completed ten months later and named T'aemyo. The spirit tablets of four generations of T'aejo's ancestors were moved there from Kaesong. Chongmyo and its grounds occupy a 19.4ha oval site. Chongmyo is composed of three sets of buildings centred on Hyangdaech'ong, Chongjon, and Yongyongjon respectively. Chongjon

had 7kan with Taesil and 2 kan along both the left and the right but all the buildings were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Hideyoshi invasions, afterward more rooms were added to and it becomes 19 kan with Taesil.

Chongjon itself is a wooden structure 19 kan long for the 49 spirit tablets lodged there and there are 83 spirit tablets of retainers in the garden front of Chongjon.

Total surface area of Chongjon is 1,270m² and it presume that the biggest building in the world at that period among wooden ones.

Each building of Chongmyo was asymmetrical structure like other buildings but generally it located symmetrically. It provide a layer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building, separating the base from the roof and this permitting a formal emphasis on the horizontal lines of the roof instead of the vertical lines of the walls.

Chongmyo is relatively long and its horizontal lines are emphasized. The wall and roof tend to emphasize this horizontality.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Chongmyo, and a unique feature of Korea's traditional architecture.

Chongmyo is an altar enshrining the spirit tablets of the former kings and queens of the Choson Kingdom and the site for royal ancestral worship rituals. It was built to repay the blessings of the Choson ancestors and to convey the kingdom's ruling ideology to the general public. In Confucian society it was customary for the king to build a royal ancestral shrine and a shrine for state deities whenever a new kingdom was founded. The royal ancestral worship rituals were first performed by the royal family to pass down the spiri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the ruling ideology of Confucianism. This tradition continued for five hundred year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oson Kingdom, and since its collapse this rich vein of tradition has been carried on by the Coalition of the Chonju Yi Clan. The Chongmyo Shrines and its rites constitute a global cultural heritage by virtue of their unprecedented and consistent representation of the distinct ideology of a given era, the Confucianism of the five-hundred-year rule of the Choson Kingdom.

Chongmyo Cheryo, the memorial services conducted each year at Chongjon, also constitute a heritage of great antiquity and significance in terms of intangible culture. They incorporate music, song, and dance and owe their origins to court music imported from China by King T'aejo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It can be used for historical materials to research

ancient culture.

Rooms were added from west to east until there were a total of 19. The original Jongmyo, however, was destroyed in 1592, and today's Jongmyo was built in 1608. Jongmyo was located to the left of the main palace, Gyeongbokgung, and Sajik was built to the right (as viewed from the king's throne), a tradition of planning which goes back to ancient China. The main hill of the Jongmyo complex is called Yeungbong, and from it a number of smaller hills extend southward until they encompass the Jongmyo compound of the Jeongjeon, Yeongnyeongjeon and other auxiliary buildings. They were built according to terrain, however, and in totality they appear to the modern eye not to be very balanced in distribution. Jeongjeon is comprised of 19 identical rooms, and they are extremely simple with no ornamentation. However, the building as a whole is both grand and impressive, and the twenty thick, round pillars sufficiently project the dignity and grandeur of royalty. In front of Jeongjeon is an impressive 150-meter-long, 100-meter-wide elevated stone yard called "Woldae" which is used during ceremonies by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articipants. The large stone blocks which compose the yard provide a striking and solemn atmosphere as they lay in silence before Jeongjeon, and the yard greatly complements the architecture. The Jongmyo ritual itself has been designated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y the government not only for its historical importance but for the splendor of the music, dance and ceremony.

Although it is a shrine rather than an ordinary structure, it reflects many of the universal values of architecture still in use today and as such it is the focus of research for many architects. Chongmyo's outstanding architectural value has led many scholars to call it the "Parthenon of Asia". It has outstanding features of building.

Hence the nine rooms at Taimiao in China, Chongmyo is unique with its nineteen rooms spanning the whole period.

The Chongmyo complex was designated Historical relic No 125. There are cultural heritages such as Chongjon (National Treasure No. 227), Yeongnyeongjeon (Treasure No. 821), Chongmyo Cheryu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56) and these were registered on UNESCO World Heritage in 1995. Chongmyo Cheryu, music and dance in Chongmyo were well preserved and were registered on UNESCO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The general public is only allowed to view the exterior of Chongmyo; access to the interior is prohibited.
- ii) The Chongmyo Office of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with 23 Employees, oversees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site for the state. The services of a mobile repair team of 35 is available to carry out repair and conservation work.
- iii) All the costs of the Chongmyo Office are covered in the general National budget.
- iv) The revenue from entrance fees is available for conservation projects.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It is opened to the public and used as a resting place. Every year, Jommyo Jaerye designated as an intangible heritage is performed here.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ion: Chongmyo
 - ① Address: 1-2, Hunjeon-dong, Jongro-gu, Seoul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Authenticity
 - Chongmyo is completely preserved since 16th century.
 - As with most buildings within the wooden architecture tradition of East Asia, these buildings have undergone a number of restorations involving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There has, however, been scrupulous respect for materials and

techniques, which makes them authentic in this respect.

② Influence

- Chongmyo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③ Architectural value

- Ssymmetrical non-symmetry: Chongmyo chongjon appears to be symmetrical, but closer examination shows it to be asymmetrical. The annex buildings are located symmetrically on either side of the shrine, but the eastern wall is open and the western one closed.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Chongmyo, and a unique feature of Korea's traditional architecture.
- Correspondence of function and shape: Chongmyo is relatively long and its horizontal lines are emphasized. The walls and roof tend to emphasize this horizontality.
- Outstanding spatial arrangement: The broad inner court platforms of Chongjon and Youngyoungjon are composed of very simple elements: The broad Woltae is empty, apart from the symbolic Shinro used by the king and a rectangular platform. These two elements are tiny compared with the space they surround them, yet they dominate the entire space. Extraneous elements that might spoil the serenity of the sacred place are excluded, thus enhancing the dignity and solemnity of the shrine.

④ Historical, social value(World Cultural Heritage Criteria vi)

- Chongmyo is an altar enshrining the spirit tablets of the former kings and queens of the Choson kingdom and the site for royal ancestral worship rituals. It was built to repay the blessings of the Choson ancestors and to convey the kingdom's ruling ideology to the general public. In Confucian society it was customary for the king to build a royal ancestral shrine and a shrine for state deities whenever a new kingdom was founded. The royal ancestral worship rituals were first performed by the royal family to pass down the spiri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the ruling ideology of Confucianism. This tradition continued for five hundred year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oson kingdom, and since its collapse this rich vein of tradition has been carried on by the coalition of the Chonju Yi Clan.
- The Chongmyo shrine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e Confucian royal ancestral shrine, which is housed for the kings. The Jongmyo ritual itself has been designated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y the government not only for its historical importance but for the splendor of the music, dance and ceremony.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① The Chongmyo complex is State property. It was designated Historical Relic No.125 in January 1963 and a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Zone in September 1973,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6 and 7 respectively of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Law.

② Article 20 of the same Law imposes restrictions on changes on the current state of the site.

③ It is also a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 under Article 13 of the law of National Land Use Management and a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Zone under Article 18 of the Urban Planning Law.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Kyongju Historic Areas
--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Kyongju City, Kyongsangbuk-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N35 47 20 E129 13 36
--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Kyongju City and its surroundings have inherited traces of the glory that flowered and withered in the ancient Shilla Kingdom (57 BCE-CE 935). The centre of the town and its suburbs contain many royal burial mounds and Buddhist remains which preserve this apogee of art and culture. Excavations continue to reveal the buried secrets of this enchanted city. There are three major components (“belts”) that make up the Kyongju Historic Areas; in addition, the nomination covers Hwangnyongsa and the Sansong Fortress.

① The Mount Namsan Belt

Mount Namsan, which lies to the north of Kyongju City, covers 2650ha. There is a large number of prehistoric and historic remains within the designated area. The Buddhist monuments that have been excavated up to the present include the ruins of 122 temples, 53 stone statues, 64 pagodas, and sixteen stone lanterns. Excavations have also revealed the remains of the pre-Buddhist natural and animistic cults of the region.

② The Wolsong Belt

The main monuments in this area are the ruined palace site of Wolsong, the Kyerim woodland which legend identifies as the birthplace of the founder of the Kyongju Kim clan, Anapchi Pond, on the site of the ruined Imhaejon Palace, and the Ch' 'omsongdae Observatory.

③ Hwangnyongsa

This group consists of two ruined temples, Hwangnyongsa and Punhwangsa. Hwangnyongsa, built to the order of King Chinhung (540-76) was the largest temple ever built in Korea, covering some 72,500m². An 80m high nine-storey pagoda was added in 645. The entire complex was destroyed by Mongol invaders in 1238; it was never rebuilt, but was occupied by more than a hundred families, who were moved out in 1976. Excavations have shown that in its original form the temple had seven rectangular courtyards, each with three buildings and one pagoda.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Repair work and maintenance on national designated sites and monuments is financed by (70%) and local (30%) funds.
- ii) For locally designated monuments the proportions contribut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re 50:50.
- iii) Long-term plans
 - ① The strengthening of measures against forest fires, floods, and other natural calamities.
 - ② A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 including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a policy of

seeking systematic investment and site-management proposals.

- iv) There are programmes for regula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sculptural and monumental antiquities and for selective restoration, based on thorough prior scientific research.
- v) Regular monitoring will be carried out on the open sites, to check any illegal use of the land for unauthorized burials or shamanistic rites. Parking facilities are to be extended and marked paths laid out so as to prevent uncontrolled access to the land.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 i) As a living historical museum, whole city is the most popular tourist areas in which many tour programmes are operated. It is divided into 5 tour areas, which are Namsan area, Walseong area, Daereungwon area, Hwangryongsa area, and mountain fortress area.
- ii) In this area, there many NGOs relating to cultural conservation and education which develop and operate various cultural experience programmes for the public, especially, students.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ion: Kyongju City.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e cultural properties of the area date mainly from the 6th to the 10th centuries, and demonstrate the quintessence of the Shilla art in the statues and reliefs of Buddha, the temple sites, and the royal and other tumuli.
 - ② Kyongju City extends round the western, northern, and southern flanks of Mount

Namsan. Thus its urban plan cannot be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the mountain, which is the cultural and religious sanctuary of the city. Its beautiful slopes and streams make it a much admired natural park.. Mount Namsan, the "roof of the city," and its surroundings contain ancient statues of Buddha, pagodas, and temples in a harmonious layout. The city itself is adorned with many roadside parks, spacious and well tended historic sites, and a lakeside resort, all of which combine to make it an attractive urban landscape.

③ Mount Namsan is a sacred site containing the birthplace of Hykkose, the founder of the Shilla Kingdom, and historical remains from the whole Shilla period.

④ at present, it is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① More than sixty sites and monuments are designated and managed as historic sites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s 4 and 6 of the Korea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② Sections 12 and 18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Ordinance of Kyongsangbub-do Province

③ The entire area nominated for inscription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under Sections 4 and 5 of the National Park Law

④ These two sets of protection legislation severely restrict any form of development within the nominated area. The Urban Planning law imposes further constraints on all forms of development in and around the protected areas.

⑤ Each of the components of the nominated area is surrounded by a 100m wide buffer zone.

- All proposals for construction within these zones requires authorization in the form of a permit from the Provincial Governor, as prescribed in Section 8 of the Building law Enforcement Act.

⑥ No extraction of gravel or other aggregate material is permitted within a zone 2km wide around each of the protected areas.

⑦ The sites are designated as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s under section 13 of the National Land Use Management Act.

- Any changes that might affect the topography require authorization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A list is attached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Rei gn	King	Tomb	Chinese Charac ter	Buried	Location	Notes
1st	Taejo	Geonwolleung (건원릉)	健元陵	Taejo	Gyeonggi-do Guri Gaeseong (North Korea)	Dong gureung (동구릉)
		Jereung (제릉)	齊陵	Queen Sinui		-
		Jeongneung (정릉)	貞陵	Queen Sindeok		-

2nd	Jeongjong	Hureung (후릉)	厚陵	Jeongjong, Queen Jeongan	Gaeseong (North Korea)	-
3rd	Taejong	Heolleung (현릉)	獻陵	Taejong, Queen Wongyeong	Seoul Gangnam -gu	-
4th	Sejong	Yeongneung (영릉)	英陵	Sejong, Queen Soheon	Gyeonggi-do Yeoju	-
5th	Munjong	Hyeolleung (현릉)	顯陵	Munjong, Queen Hyeondeok	Gyeonggi-do Guri	Dong gureung
6th	Danjong	Jangneung (장릉)	莊陵	Danjong	Gangwon-do Yeongwol	-
		Sareung (사릉)	思陵	Queen Jeongsun	Gyeonggi-do Namyangju	-
7th	Sejo	Gwangneung (광릉)	光陵	Sejo, Queen Jeonghui	Gyeonggi-do Namyangju	-
Post hum ous king	Deokjong	Gyeongneung (경릉)	敬陵	Deokjong, Queen Sohye	Gyeonggi-do Goyang	Seoo reung (서오릉)
8th	Yejong	Changneung (창릉)	昌陵	Yejong, Queen Ansun	Gyeonggi-do Goyang	Seoo reung
		Gongneung (공릉)	恭陵	Queen Jangsun	Gyeonggi-do Paju	Paju Sam neung (파주삼 릉)
9th	Seongjong	Seolleung (선릉)	宣陵	Seongjong, Queen Jeonghyeon	Seoul, Gangnam-gu	-
		Sulleung (순릉)	順陵	Queen Gonghye	Gyeonggi-do Paju	Paju Sam neung
11th	Jungjong	Jeongneung (정릉)	靖陵	Jungjong	Seoul, Gangnam-gu	-
		Olleung (온릉)	溫陵	Queen Dangyeong	Gyeonggi-do Yangju	-
		Huireung (희릉)	禧陵	Queen Janggyeong	Gyeonggi-do Goyang	Seosam neung (서삼릉)
		Taareung (태릉)	泰陵	Queen Munjeong	Seoul, Nowon-gu	-

12th	Injong	Hyoreung (효릉)	孝陵	Injong, Queen Inseong	Gyeonggi-do Goyang	Seosam neung
13th	Myeonjong	Gangneung (강릉)	康陵	Myeongjong, Queen Insun	Seoul, Nowon-gu	-
14th	Seonjo	Mongneung (목릉)	穆陵	Seonjo, Queen Uiin, Queen Inmok	Gyeonggi-do Guri	Dong gureung
Post hum ous king	Wonjong	Jangneung (장릉)	章陵	Wonjong, Queen Inheon	Gyeonggi-do Gimpo	-
16th	Injo	Jangneung (장릉)	長陵	Injo, Queen Illyeol	Gyeonggi-do Paju	-
		Hwireung (회릉)	徽陵	Queen Jangnyeol	Gyeonggi-do Guri	Dong gureung
17th	Hyojong	Nyeongneung (녕릉)	寧陵	Hyojong, Queen Inseon	Gyeonggi-do Yeoju	-
18th	Hyeonjong	Sungneung (승릉)	崇陵	Hyeonjong, Queen Myeongseong	Gyeonggi-do Guri	Dong gureung
19th	Sukjong	Myeong neung (명릉)	明陵	Sukjong, Queen Inhyeon, Queen Inwon	Gyeonggi-do Goyang	Seoo reung
		Ingneung (익릉)	翼陵	Queen Ingyeong		Seoo reung
20th	Gyeong jong	Uireung (의릉)	懿陵	Gyeongjong, Queen Seonui	Seoul, Seongbuk- gu	-
		Hyereung (혜릉)	惠陵	Queen Danui	Gyeonggi-do Guri	Dong gureung
21st	Yeongjo	Wolleung (원릉)	元陵	Yeongjo, Queen	Gyeonggi-do Guri	Dong gureung

		Hongneung (홍릉)	弘陵	Jeongsun Queen Jeongseong	Gyeonggi-do Goyang	Seo reung
Post hum ous king	Jinjong	Yeongneung (영릉)	永陵	Jinjong, Queen Hyosun	Gyeonggi -do Paju	Paju Sam neung
Post hum ous king	Jangjo	Yungneung (옹릉)	隆陵	Jangjo, Queen Heongyeong	Gyeonggi-do Hwaseong	-
22nd	Jeongjo	Geolleung (건릉)	健陵	Jeongjo, Queen Hyoui	Gyeonggi-do Hwaseong	-
23rd	Sunjo	Illeung (인릉)	仁陵	Sunjo, Queen Sunwon	Seoul Secho-gu	-
Post hum ous king	Ikjong (Munjo)	Sureung (수릉)	綏陵	Ikjong, Queen Sinjeong	Gyeonggi-do Guri	Dong gureung
24th	Heonjong	Gyeongneung (경릉)	景陵	Heonjong, Queen Hyohyeon, Queen Hyojeong	Gyeonggi-do Guri	Dong gureung
25th	Cheoljong	Yereung (예릉)	睿陵	Cheoljong, Queen Cheorin	Gyeonggi-do Goyang	Seo sam neung
26th	Gojong	Hongneung (홍릉)	洪陵	Gojong, Empress Myeongseong	Gyeonggi-do Namyangju	-
27th	Sunjong	Yureung (유릉)	裕陵	Sunjong, Empress Sunmyeonghyo, Empress Sunjeonghyo	Gyeonggi-do Namyangju	-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119 tombs were constructed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Each tomb is designated neung, won or myo depending on the royal status. Of these, 40 were royal tombs for Joseon Dynasty kings and their consorts (and there are a further 2 located in DPR Korea). 40 royal tombs were registered on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The tombs were built to honour the memory of ancestors, to show respect for their achievements, to assert royal authority, to protect ancestral spirits from evil and to provide protection from vandalism. A royal tomb was a sacred place where the deceased could “live” in the afterlife amidst dynasty-protecting ancestral spirits.

The place of tombs, and especially royal tombs, is central to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As expressed in the nomination dossier, royal tombs are the final resting places for the royal family, and, as such, the tombs not only indicate the status of the family but become carefully constructed complexes for ancestral worship. The burial chamber was located at the point where propitious energies are said to be concentrated and it was fortified with a dirt covering, creating the mound. With a low, curving wall and knoll at the back, energy is further directed toward the burial chamber.

There are three keys to understanding the royal tombs: the topography of the site and the layout of the tomb; the types of burial mounds, the sites' associated structures and the nature and aesthetic qualities of site-specific stone objects; and the rites associated with the burials as well as extant documents that verify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values of the Royal Tombs of Joseon are linked to the overall layout of the tomb, and, more specifically, to the three areas of the tomb – the burial area, the ceremonial area and the entrance area; the three platforms of the burial area; and all the associated constructions and objects. The setting and vistas are linked as well as they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pungsu in determining the location and orientation of the tombs. Within the tomb, the natural order is embraced through the type and positioning of forests, trees, shrubs and plants.

During the Joseon Dynasty, sites were chosen according to pungsu (fengshui in Chinese)

principles. Accordingly, outstanding natural sites were chosen, which were mainly along two mountain chains stretching to the north and south of the Han River that flows through present-day Seoul. The burial mounds, the “heart” of a royal burialground, were usually placed in the middle of a hillside. Protected from the back, they face outward (to the south) toward water and, ideally, toward layers of mountain ridges in the far distance.

In addition to the burial area, royal tombs consist of a ceremonial area and an entrance area, and each area has a different function and symbolic meaning. The burial area is the sacred place of the dead and it contains an open, grassy area, the burial mound and a spirit road that descends to a T-shaped shrine. The shrine is the centre of the ceremonial area and it is here that ancestral rites are conducted to symbolise the meeting of the living and the dead. The shrine is linked by a worship road to a red-spiked gate, the main entrance to the royal graveyard. The entrance area, itself, lies beyond the gate and it contains the forbidden stream with a stone bridge, the house of the tomb keeper and additional buildings used for ceremonial preparations. The separation of the living and the dead is further symbolised by the nature of the roads: the chamdo, the worship road, links the main gate to the shrine and is shared by the living and the dead, while the sindo, the spirit road, links the shrine to the burial mound and is used solely by the dead.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The property has been registered and recorded in the royal archives. As well, historical records, as mentioned previously, cover site selection, the form of royal tombs and the repair of royal tombs.
- ii) Daily maintenance is carried out by the Maintenance Team und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 iii) The management system is highly centralized and well organised. At the top i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Royal Palaces and Tombs management Division). Five groups advise the divisio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Royal Family Association; Maintenance Team; and Local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Division(for Jangneung Management office(Gangwon-do) only).

- iv) A management Plan for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as formulated in september 2007. The goal of this plan is th conserve and manage the royal tombs in a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manner.
- v) The State Party advises that systematic monitoring will occur every two years. Currently, there is a checklist based on authenticit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ach area has appropriate indicators.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 i) 'One heritage for one family' programme is operated as a cultural heritage education programme in order to make community participate in voluntary heritage preservation activity
- ii) Through running website for the Royal Tombs, all of ceremonial rites and events are informed and kept posted to the public to encouraged people to take part in.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ion: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e nominated property is considered by the State Party to b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or the following reasons:
 - Development of royal tombs under Confucianism and East Asia philosophies
 - Unique funeral culture respecting nature
 - Construction and record-keeping traditions reflecting important phases in human history
 - Continuity of the Confucian tradition of ancestral worship.

40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ere registered on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at the 33rd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Seville, Spain in June 30, 2009

- ② Considered as individual royal tombs, the properties speak to various phases of royal tomb development within the dynasty. However, considered as a cohesive whole, the development of the royal tombs over time, and their cumulative stories and associations, offers a compelling view, within the context of royalty and ancestral worship, of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the Korean people both historically and today.
- ③ Royal Tombs of Joseon has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which were reflected by size of stone, the disposition of space, and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are different from other period.
- ④ State ancestral rites were held on a regular basis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except for periods of political turmoil, they have been conducted on the day of state ancestral worship every year by the Royal Family Organization and by the worshipping society for each tomb. As well, the Joseon Dynasty maintained a system called Jongmyo (Royal Ancestral Shrine) for the display and worship of ancestral tablet.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In 1970, all 18 clusters(40 tombs) were designated national historical sites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CHPA) (revised 2000).
- ② Under this legislation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LPUA)
 - Development within the property is prohibited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 Within the buffer zones, development must be approved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NCHC), and the right to demand that measures are taken to conserve the landscape.
 - In urban areas, planning rules of the local government apply, but, it appears, final approval must come from the national level.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Sukguram Grotte and Bulguksa
--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kguram grotte: 999, Jinhyeong-dong, Kyeongju-si, Kyeongsangbuk-do- Bulguksa: 15-1, Jinhyeong-dong, Kyeongju-si, Kyeongsangbuk-do |
|---|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N35 46 60 E129 20 60
--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1) Sokguram Grotto

The construction of Sokguram Grotto began in AD 751, the tenth year of the reign of Shilla King Kyongdyok, by Kim Tae-song, the Prime Minister and completed in 774, the ten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yegong. It is recorded that it was originally known as Sokbulsu Temple.

One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the granite stone of these Korean hills is not conducive to carving. The grotto is thus artificially made of hundreds of granite stones, held together by

stone rivets and no mortar. An arched entrance leads into a rectangular antechamber, which houses a Bojon statue of a Bodhisattva and his disciples and thirty nine different figures representing Buddhist principles and teachings.

The ceiling of the grotto is decorated with half moons. The Four Heavenly Kings guard the corridor and Eight Guardian Deities adorn the antechamber. From here, a narrow corridor lined with bas-reliefs leads into the main rotunda, with a dome measuring 6.84 meters to 6.58 meters in diameter. The centerpiece of this granite sanctuary is a Buddha statue, whose specific identity is still debated. Sakyamuni and Amida are among the most common guesses.

The Buddha is 3.5 meters in height and sits on a 1.34 meter tall lotus pedestal, wearing a serene expression of meditation. The drapery on the Buddha, such as the fan-shaped folds at the crossed-legs of the Buddha, exemplifies Korean interpretations of Indian prototypes. Unlike other Buddhas that have a halo attached to the back of the head, the Buddha at Seokguram creates the illusion of a halo by placing a granite roundel carved with lotus petals at the back wall of the rotunda.

Accompanying the main Buddha are reliefs of two bodhisattvas (Manjusri and Samantabhadra), ten disciples (with features showing a Greek influence), and two Hindu gods (Brahma and Indra) along the wall of the rotunda. Ten statues of bodhisattvas, saints, and the faithful are located in niches above the bas-reliefs.

Another notable figure is the Eleven-faced Avalokitesvara, the Bodhisattva of Compassion, on the back wall of the rotunda. Standing 2.18 meters in height, this figure is the only one of the bas-reliefs facing forward instead of to the side. The Avalokitesvara wears a crown, is dressed in robes and jewelry and holds a vase containing a lotus blossom.

Sokkuram Grotto is located on the south-eastern slope of Mount T'oham, facing the East Sea. It is built in granite and features 39 Buddhist engravings on the main wall and the principal sculpture of the Buddha in the Centre. The grotto consists of a 14.8 m high antechamber, a corridor, and a main rotunda. The Eight Guardian Deities are carved in relief on the walls of the rectangular antechamber, four on either side. Two figures of Vajradhara Stand on either side of the entrance to the corridor leading from the antechamber to the main rotunda. The Four Guardian Kings are carved in pairs on either

side of the narrowed part of the corridor.

There are two octagonal stone pillars, one on either side of the entrance to the main rotunda, where the main Buddha Stands slightly off-centre. The walls to the left and right of the entrance are covered with relief images of two Devas, two Bodhisattvas, and the Ten Disciples. In the middle of the wall behind the main Buddha there is an exquisite Wall carving of an eleven-fac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the Bodhisattva of Compassion.

The stones beneath each carved figure on the walls of the antechamber and the main rotunda are also carved. At the time of construction there was a marble stupa in front of the Avalokitesvara, but it was remov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large circular lotus flower is set in the wall above the Avalokitesvara behind the main Buddha, creating the illusion of a halo for the Buddha when seen from the front. There are ten niches lining the upper wall on

either side of this lotus flower: originally each contained images of Bodhisattvas or Buddhist devotees, but two are now missing. The vaulted ceiling is made of dressed stones which meet in another carved lotus flower at the top of the main hall. The main Sakyamuni Buddha figure is 3.45 m high, and set on a lotus flower-shaped pedestal. The hair is tightly curled and there is a distinct usnisa, the protuberance on the top of the head symbolizing supreme wisdom. Beneath the broad forehead the eyebrows are Shaped like Crescent moons and the half-closed eyes gaze towards the East Sea.

All the other figures - Vajradharas, Guardian Kings, Devas, Bodhisattvas, Disciples, and Guardian Deities - are between 1.69 m and 2.18 m tall, and are elaborately carved with great attention to naturalistic detailing.

The main rotunda, believed to stand for heaven in contrast to the earth which is represented by the rectangular antechamber, measures 6.84 to 6.58 meters in diameter. It has a drum built of 10 granite slabs, upon which 15 granite panels with sculpted images of bodhisattvas, arhats and ancient Indian gods form the circular wall. Above these icons and separated by lintel, there are 10 niches, each containing miniature statues of seated bodhisattvas and faithfuls. Slightly tilted toward the back from the center of the rotunda is a round lotus pedestal, on which the Buddha sits facing the antechamber across the corridor. The domed ceiling is capped with a round granite plate decorated with a lotus design.

Seokguram consists of an antechamber which holds reliefs of eight guardian deities and two Vajrapanis; a short corridor carved with four heavenly kings; and the main rotunda which enshrines in its center the seated main Buddha, Shakyamuni Tathagata (the Incarnation of Truth). Along the lower part of the circular wall are reliefs of an 11-faced Avalokitesvara, ten disciples, Manjusri, Sakradevanam Indra, Mahabrahmandah, and Samantabhadra. Above these at about eye-level are ten niches, each enshrining a bodhisattva.

The main Buddha under the vault of the rotunda wears a smile of serene benevolence which has been appreciated as the zenith of what man can achieve through stone sculpture. It is as if the Buddha is about to preach to us at any moment, to enlighten the good human nature innate within us.

For its sheer culmination of Buddhist beliefs, aesthetics, and advanced engineering, Seokguram was registered on UNESCO's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together with Bulguksa Temple, in December of 1995.

2) Bulguksa

Bulguksa, the Temple of the Land Buddha, sits mid-slope on Mt. Tohamsan. Its construction was completed under the supervision of Prime Minister Kim Dae-seong in the 10th year of King Gyeongdeok's reign of the Silla Kingdom (751). This granite sanctuary sums up the religious enthusiasm, architectural technology, and immaculate workmanship of the Silla people, making it a rare landmark of world religious art.

As the name indicates, Bulguksa was designed as a realization of the blissful land of the Buddha in the present world. It was intended to embody the happy land where the mortal being is released from the suffering of life by following the teachings of the Buddha, or the Lotus Land as promised in the Avatamsaka Sutra, which offer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nstruction of the temple. Therefore, the temple had to be not only faithful to the teachings of the Buddha but beautiful as well.

The cloistered sanctuary is divided into two realms, the land of Seokgamoni Buddha and the land of Amitabha, the Buddha of Boundless Light. The "impure land" of Seakgamoni Buddha is larger and higher than the "pure land" of Amitabha. This is because Seokgamoni is praised as the more noble for he chose to appear in the mundane world out of his great

compassion. This is because Seokgamoni is praised as the more noble for the chose to appear in the mundane world out of his great compassion. The main courtyard which is dedicated to Seoakgamoni, the Historic Buddha, includes Daeungjeon, the main worship hall enshrining a gilt-bronze buddha triad. A pair of famous pagodas, Seokgatap, or the Seokgamoni Pagoda, and Tabotap, or the Pagoda of Many Treasures, stand in front of the main worship hall, A lecture hall named Musolijeon, or the Hall of No Discourse, stands to the north of the worship hall. The shrines of Vairocana and Avalokitesvara stand at the back of the lecture hall.

The foundations of lost structures were excavated in an intensive investigation conducted in 1969. Based on the result of the excavation, several buildings and cloisters were reconstructed and the stone terraces were repaired in the early 1970s. But a lotus pond known to have existed beneath the staircases leading up to the main courtyard was left out of the renovations.

The Seokgamoni Pagoda represents the finest style of Korean Buddhist pagodas that evolved from China's multistoried pavilion-type wooden pagodas. The three-story pagoda is admired for its proportions and simple but graceful style. The highly decorative Tabotap, symbolizing Prabhutaratna Buddha, is an exceptional case that demonstrates the wondrous skill of Unified Silla masonry. The pagoda features what is assumed to be an enlarged version of a luxurious sarira shrine supported by a roof-like square slab resting on four pillars and massive brackets. The pillars stand on an elevated platform approached by four staircases, each with 10 steps symbolizing the 10 paramitas, or great virtues.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Government funding is available for the management, preservation, restoration, and recording of the Grotto. Currently the holdings accrued from entrance fees is over 758 million won, which is inve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law. This fund may only be used for repairs, Environmental cleaning of the surroundings, fire-prevention measures, and presenting the property to the public.
- ii) Current management projects include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effectivenes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devices and planning for permanent measure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academic study aimed at the restoration of the Grotto to its original state.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This area is managed as a part of Kyongju National park. At present, it is listed on the World Heritage. Kyungju has a great deal of historic sites and relics, so it its very popular tourist area and at the same time, used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site for education.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i) Sokkuram Grotto

- ① Ownership: Sokkuram Grotto
- ② Administration: Kyongju National Park

ii) Bulguksa

- ① Ownership: National, Jogye Order
- ② Administration: Kyoungju-si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Sokkuram Buddhist Grotto and Bulguksa are cultural heritage of outstanding aesthetic and artistic achievement.
 - Sokkuram Grotto and Bulguksa are invaluable cultural heritage because of their outstanding historical significance and associations with ideology, religion, historical events. Furthermore, they have a unique aesthetic value as they embody the buddhism's dogma very well.
- ② Sokkuram Grotto and Bulguk are distinctive cultural heritage testifying to the

development of important cultural assets, society, art, science, and industry.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e Grotto was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No.70 and Bulguksa, Historic Site No.502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law.
- ② The area of 129.4ha surrounding the grotto is designated and managed as a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Zon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Law.
- ③ Any alteration to the current status requires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of the same Law.
- ④ It is a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Zone as defined in Article 18 of the Urban Planning Law.
- ⑤ The site is designated as a traditional Buddhist Temple Preservation Law.
- ⑥ It is designated and managed as a Natural Environment restrictions within the zone to protect specific wildlife and plants.
- ⑦ Under Article 14 of the Natural Park Law it is also designated as a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 and Article 13 places restrictions on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or other facilities within the designated area.
- ⑧ It is an 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Zone under Article 5 of the 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Law;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is Law requires permission to be sought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in respect of any proposed development within the designated zone.
- ⑨ Its designation as a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Zone under the Law of National Land Use Management(Article 13).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1-3) 잠정목록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Ancient Mountain Fortresses in Central Korea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 Boeun-gun, Cheongju-si, Chungcheongbuk-do
- Goesan-gun, Chungju-si, Chungcheongbuk-do
- Jecheon-si, Chungcheongbuk-do
- Danyang-gun Chungcheongbuk-do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 Samnyeon Sanseong: N36 29 14 E127 44 32
- Sangdang Sanseong: N36 39 40 E127 32 25
- Mireuk Sanseong: N36 48 07 E127 54 42
- Chungju Sanseong: N36 57 23 E127 58 42
- Jangmi Sanseong: N37 03 42 E127 54 09
- Deokju Sanseong: N36 52 08 E128 05 54
- Ondal Sanseong: N37 04 37 E128 29 53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property refers to the sites of national defenses located in Chungcheongbuk-do, the

central region of Korea, which display major characteristics of sanseong or mountain fortresses from ancient times, through the middle ages, to modern times.

Korea is called "a country of sanseong (mountain fortress)." The ancestors of present-day Korean people developed unique defense facilities by using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mountains and hills are abundant. To date, almost 2,400 mountain fortress sites large and small have been found in Korea. There are 212 mountain fortress sites in Chungcheongbuk-do, the central region of Korea.

The mountain fortresses of Korea have been consistently evolved in design and construction. Not only were the early types of mountain fortresses developed toward perfection by virtue of historical experience, but they were also developed to enhance defensive abilities in the process of repelling foreign invaders. In this respect, the mountain fortress in Korea can be identified as historical monuments achieved by the outstanding cultural ability of the Korean people.

With its long history, the whole country is dotted with mountain fortresses. However, the most representative and unique ones are concentrat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nation.

Th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mountain fortresses in central Kore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contains prominent evidence that vividly demonstrates the culture of the past. In particular, it allows u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ulture that prospered in central Korea and neighboring cultures such as the southernmost site of the Goguryeo Kingdom, whose heritage was already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the Tang Empire of China. It also permits us to conduct comparative research on the military facilities of such cultures.

Second, it shows a unique form. The mountain fortresses in central Korea have unique defensive system, in diverse forms, which make the best use of their topography and demonstrate distinctive technique in construction throughout the ages. They provide representative evidence for the research of both defense and offense military strategies since ancient times. With regard to the construction technology, they are comparable to fortresse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re are seven representative mountain fortresse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They include Samnyeon Sanseong Mountain Fortress in Boeun, Sangdang

Sanseong Mountain Fortress of Cheongju, Chungju Sanseong Mountain Fortress at Chungju, Jangmi Sanseong Mountain Fortress in Chungju, Deokju Sanseong Mountain Fortress of Jecheon, Ondal Sanseong Mountain Fortress at Danyang, and Mireuk Sanseong Mountain Fortress in Goesan.

Samnyeong Sanseong at Boeun, a stone-built fortress, can be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mountain fortress of ancient Korea since its date of construction is firmly recorded. Sangdang Sanseong in Cheongju was a fortress located at the center of traffic and defense of Korea's central region from the middle ages to modern times. As a cluster of historic sites, Deokju Sanseong in Jecheon, Chungju Sanseong, Jangmi Sanseong of Chungju, and Joryeong Gwanmun gateway are all defensive facilities for military purposes located in a single scenic area. These sites are linked by a traffic route between the Hangang River and the Nakdonggang River, which has been used since the ancient times onward. In addition, it is rich with a histori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anging from legends, religious and cultic remains.

Ondal Sanseong in Danyang is a representative site bearing the marks of the southward advance of the Goguryeo Kingdom and the northward expansion of the Silla Kingdom respectively. Its fortress wall attests to the respective methods of construction peculiar to the Goguryeo and Silla Kingdoms. Mireuk Sanseong at Goesan, constructed in the middl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demonstrates characteristics of mountain fortresses built in the medieval period.

Each of these seven mountain fortresses constructs a unique defensive system which makes the best use of traffic routes, linking adjacent mountains and watercourses.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ii) Administration: Cheongju, Boeun, Chungju, Jecheon, Danyang, Goesan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① Universal values:

- Samnyeon Sanseong at Boeun (Korean Historic Site No. 235) is a masterpiece of fortifications. It is the highest and largest mountain fortress built of stone in Korea. It is not only representative of an ancient fortification (from the latter half of the fifth century) with its unique facilities, but also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defensive city of ancient times.
- Sangdang Sanseong of Cheongju (Korean Historic Site No. 212) is a typical mountain fortress that can expla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a provincial city, with ample written records on the nature of the fortress.
Sangdang Sanseong seems to be built in the ancient times and it had had 9 times of maintenance works from 1716 to 1836.
- Chungju Sanseong in Chungju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31) was used from a limited period from the sixth to the seventh century. As such, it represents cultural phenomena and defensive strategies peculiar to that period. In addition, like most mountain fortresses built of stone, it is located in a strategic position overlooking an uphill path and the Hangang River.
- Deokju Sanseong in Jecheon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35) is the only example of a four-layered mountain fortress. It is a mountain fortress which optimizes the local topography and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In the vicinity of Deokju Sanseong, there are diverse Buddhist and folk religious historic sites such as a stone pagoda at the site of Sajabinsinsa Temple, the site of Mireuksa Temple, Deokjusa Temple, and the site of Wolgwangsa Temple.
- Ondal Sanseong in Danyang (Korean Historic Site No. 264) is a notable example of stone-built mountain fortresses located at a riverside. There is a piercing, trapezoid drainage at the fortress wall which passes through the lowest point in the north. A unique, square spur is installed east of the north gate site. Both the sites of the

north and east gates have remains of the gate with trapdoors.

- Jangmi Sanseong of Chungju (Korean Historic Site No. 400) has storage facilities for missile stones used to throw at the enemy from the interior of the fortress wall. In addition, there is a spur built of wooden bastion dating to the Goguryeo Kingdom. It is also related to the nearby Goguryeo Stele in Jungwon and Baekje earthen fortress in Tangeumdae.
- Mireuk Sanseong in Goesan (Korean Historic Site No. 401) illustrates characteristics of mountain fortresses built in medieval Korea. The well-preserved Mireuk Sanseong allows us to examine the diverse methods of construction prevalent in the Goryeo Dynasty. Particularly, it is equipped with an outer fortress in order to protect the large-scale main fortress and the site of the gate. It is an important site which allows us to investigate the method of construction at the time.

- ② All of the seven mountain fortresses, with their intact states, demonstrate the military, architectural, and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time. Furthermore, they have reliable records. Thanks to academic research and preservation efforts, ample materials concerning these mountain fortresses have been handed down to us. In the vicinity of these mountain fortresses, there are ancient tomb mounds and diverse cultural sites of traditional cults, religions, and popular folk religions. In sum, these mountain fortresses are historical sites of outstanding value.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All of these sites are designated as Korean Historic Site and local monuments
- Samnyeon Sanseong at Boeun (Korean Historic Site No. 235)
 - Sangdang Sanseong of Cheongju (Korean Historic Site No. 212)
 - Chungju Sanseong in Chungju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31)
 - Deokju Sanseong in Jecheon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35)
 - Ondal Sanseong in Danyang (Korean Historic Site No. 264)
 - Jangmi Sanseong of Chungju (Korean Historic Site No. 400)
 - Mireuk Sanseong in Goesan (Korean Historic Site No. 401)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Kangjin-gun Kiln sites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San 4 Sadang-ri Taegu-Myon, Kangin-gun, Chollanam-do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Long.126° 26'--47' East Lat.34° 29'--31' North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During the Koryo period (918-1392), there existed two groups of earthenware and celadon kiln sites: Kangjin-gun in Chollanam-do and Puan-gun in Chollabuk-do. To date, about 400 kiln sites have been discovered in these two areas. In particular, some 188 kilns, the highest record in Korea, are distributed in the region of Yongun-ni, Kyeyul-li, Sadang-ni, and Sudong-ni of Kangjin-gun. Well-conserved, 98 of them were designated as historic sites by the Korean government. Some 37 kilns remain in Yongun-ni today in generally good

condition.

Most of the kilns are early kilns established from the 10th century through the 11th century. Fragments that ar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ancient Chinese kilns have been found in the kiln sites of this region. Some 29 kilns remain in Kyeyul-li. Although some fragments of the same style as those found in Yongun-ni were also discovered in Kyeyul-li, most of the kilns date from the 11th to the 13th centuries. Many fragments of conventionalized inlaid celadon ware were found here. Some 27 kilns remain in Sadang-ni. Of those, kilns of Tangion village dating from the early 12th century to the 13th century are representative of the Koryo ceramic kilns which were used when Koryo celadons, known for their superior kingfisher color and inlay technique, were at their peak. Some five or six kilns remain in Sudong-ni dating from the 14th century. Most have been destroyed through river erosion and farming.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 i) 'Kangjin Celadon Festival' is held every year which offer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making of celadon and functions to make people understand of celadon culture in Korea.
- ii) According to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Klin will be managed to eco-friendly touristic area in which people can enjoy the tradition and native by refurbishing the area till 2013. In this plan, Klin museum, Klin, museum shops, accommodation will be facilitated.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ion: Kangjin-gun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is Kiln site demonstrat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How the colours and features of Koryo celadon had been changed.
 - ② Kiln sites through whole period of Koryo are concentrated in Kangjin from which lots of fragments of Celadon are very useful materials to study Koryo Celadon including it's a appearance, development process becauset hey are very various in its colours, techniques, and shap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and occupies a position in studying a history of Korean Celadon as its unprecedented example.
-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It is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No. 68 under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Gongju and Buyeo Historic Sites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 Gongju-si and Buyeo-gu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 Gonju: N36 26 36 E127 05 34

- Buyeo: N36 16 07 E126 55 41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1) Gongju

The Gongju and Buyeo Historic Sites refer to the cultural heritage from the Baekje Kingdom located in Gongju-si and Buyeo-gu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he ancient times of Korea saw the co-existence of the three kingdoms on the peninsula and beyond, which include Baekje (B.C.18~A.D. 660), Silla (B.C. 57~A.D. 935), and Goguryeo (B.C.37~A.D. 668).

The Gongju and Buyeo area in Chungcheongnam-do had been the capitals of the middle

and later periods of the Baekje Kingdom and, thus, maintains numerous remains of the splendid culture of Baekje. Although Gongju and Buyeo are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they are only about 30km apart and form one cultural zone. Located along the Geumgang River, they had advantages in defense and trade. Such advantages had made Baekje a leader in the exchange of culture and goods in East Asia during the ancient times.

In its early years, Baekje placed its capital near the Han River, but later moved it to Gongju (A.D. 475~538, Ungjin Era) and then Buyeo (A.D. 538~660, Sabi Era). That is why Gongju and Buyeo are home to a great number of historic places which bear witness to the heyday of the Baekje culture.

The important remains of Baekje in Gongju are Gongsanseong Fortress, groups of tombs in Songsanri, Suchon-ri tombs and Goma Ferry area. The major remains in Buyeo include the Busosanseong Fortress, Jeonglimsa Temple site, Naseong Fortress, tombs and temple sites of Neungsan-ri, Cheongsan Fortress, Cheongmasanseong Fortress, Yongjeong-ri Temple site, and Gudrae area.

Gongsanseong Fortress is where the palace of Ungjin area and the surroundings of the palace are located. The fortress was repaired and reconstructed several times from the Baekje perio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s a result, there coexist the earthen castle of Baekje and stone castle in Joseon showing the process of evolution from earthen to stone castle signifying the importance of the heritage.

The tombs in Songsan-ri is famous for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the only tomb from the Three Kingdoms era whose year of construction and the person buried in the tomb has been identified. About 4,000 relics found in the tomb provide us with significant historical facts of the Baekje culture and materials for further research on the ancient times of East Asia. Tomb No.6 among the group of tombs in Songsan-ri and that of King Muryeong are made of bricks, a clear evidence of the kingdom's active exchange with China in a wide range of areas.

The tombs in susan-ri are the tombs of the ruling class. A lot of the relics of the highest ruling class were discovered, such as gold-copper crowns, gold-copper shoes, and Chinese ceramics. This is yet another evidence of the abundant and prosperous trade between Baekje and China.

2) Buyeo

Busosanseong Fortress in Buyeo, is known to be the site of the palace from the Sabi Era (A.D. 538~660). The fortress in the background of the palace served as its rear garden.

In Jeonglimsa Temple site stands a 5-story stone pagoda from the Baekje period. Wooden pagodas were mostly built before the construction of the Jeonglimsa Temple, however in line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wooden pagodas were gradually changed over to the stone pagodas, of which the stone pagoda in this site proves to be the first of its kind. The Naseong Fortress surrounds the inner city. The fortress was intended to vividly show the dignity of both the kingdom and the king. The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techniques used in Naseong can also be widely found in China and Japan.

The Cheongmasan seong Fortress is the representative mountain fortress of Baekje. The fortress was designed to protect the entire capital, a different function from Naseong. The fortress is a significant evidence of diverse kinds of fortresses built in the Baekje period.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scientific investigations on the cultural heritage, integrated and systematic studies and efforts have been performe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
- ii) For maintenance and restoration, the master plan has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authorities, local people and relevant academic circles. These endeavors contribute to the authenticity of the historical heritage in both Gongju and Buyeo.
- iii) Gongju and Buyeo area is one of the districts in Korea where development has been most controlled. Therefore, there has been almost no damage, modification, or unauthorized restoration of the cultural remains caused by development.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whole cities are as a treasure house of ancient Baekje and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ic areas in Korea. From 2010, Great Baekje World Festival was held, in which a great

variety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 interantional artistic performing and cultural experience programmes were shown to the public.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ion: Gongju-si, Buyeo-si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Gongju and Buyeo Historic Sites are a vivid testimony to the active exchange and trade during ancient times among China, Korea, and Japan.

There are a number of historic places and properties that share similar architectur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with China and Japan. Baekje adopted architectural culture from China, developed it in its own style, and then transmitted it to Japan.

- ② Gongju and Buyeo Historic Sites hold a series of evidence of the unique cultural traits that flourished during ancient times on the Korean peninsula. Baekje developed its own cultural traits different from China and Japan.

- ③ Gongju and Buyeo Historic Sites include a number of fortresses, pagodas, and temples. The pagodas and temples found in the sites tell a great deal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m widespread in East Asia during ancient times. Also the diverse kinds of fortresses in the sites embody outstanding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techniques.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According to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and Historic Cities Conservation Act, Cultural Heritage in two cities are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Treasure, Historic Site and Protected.
- ② The Historic Cities Conservation Act has been enforced strictly inhibiting the envelopment in Gongju and Buyeo area.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Iksan Historic Areas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Iksan-si, Jeollabuk-do Province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 Wanggung-ri Cluster: N35 59 23 E127 03 18
- Mireuksa Temple Site Cluster: N36 00 43 E127 01 51
- Ipjeom-ri Cluster: N36 02 34 E127 01 58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Iksan Historic Areas refers to a group of Baekje capital remains and royal tombs in the Wanggung-myeon and Ungpo-myeon area, Iksan-si, Jeollabuk-do.

The city of Iksan-si is located on a slightly flatland in the sou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Agriculture and maritime trade flourished in the area from prehistoric times due to the two rivers on the northern and southern sides of the city, the Geumgang River and Mangyeonggang River, and by the time King Mu of Baekje Kingdom came into power, the

town had sufficient cultural and material resources to serve as a capital city, having been in close contact with more advanced civilizations such as China.

The capitals of ancient kingdoms were often located on big plains and connected to other towns via waterways: capitals would have palaces, royal tombs, religious facilities, and fortresses. Iksan's geography and cultural remains that have survived the vicissitudes of time show that it was equipped with various features of an ancient capital where a highly advanced culture flourished.

The Iksan Historic Areas features a series of remains from the days of the Baekje Kingdom including Wanggungri Palace site, Iksan Twin Royal Tombs, Jaeseoksa Temple site, Mireuksa Temple site, Sajasa Temple site, Yeondeungri site, Triple Stone Buddha from Taebongsa Temple site, Iksantoseong Earthen Fortress, Jeotoseong Earthen Fortress, Mireuksanseong Fortress, Yonghwasanseong Fortress, Nangsansanseong Fortress, dwelling sites, and Baekje earthenware kiln sites. These remains are all evidence of an ancient capital.

Meanwhile, the tombs in Ipjeomri Tumuli refl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 and the province and how the local areas were ruled by the capital.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ion: Iksan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With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area maintaining its original integrity, the site

can show us how the ancient capital was set up.

- ② The site can be studied to show us what relations ancient civilizations had with each other and how international each of them were. The remains of toilet and garden, the architectural style of Mireuksa Temple, Chinese earthenware excavated from the Wanggungri Palace Site and Ipjeomni Tumuli, and a statue from the Jeseoksa Temple site bear testimony to the active trad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rly 7th century.
- ③ The site proves how unique and refined the Baekje people from the 7th century and their culture were. Mireuksa Temple site is the only example in the world where we have three pagodathree main hall structure in a Buddhist temple. The templ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enters of Mireuk faith. The sarira reliquary excavated in the five-story Stone Pagoda in Wanggungri is an eloquent proof of the unequalled refinement of Baekje culture from the early 7th century.
- ④ The records of the remains in the Iksan Historic Area can be found in a number of historic documents. Many of the sites are all mentioned or alluded to in historical or oral narratives such as King Mu chapter i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nguksagi), The Theophany of Gwaneum (Gwanse-eum eungheomgi), Geography and History of Goryeo (Goryeosa jiriji), Revised edition of the Culture and GeographicRecords (Sinjeungdonggukyeojiseungram), and The Geography of the Great East (Daedonyji).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Under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cultural remains sites in Iksan are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ational Treasure, Treawure, local Heritage and registered Heritage.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Namhansanseong- Ancient Fortified Military and cultural Landscape of Mt.
Namhansan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158-1 Jungbu-myeon Gyeonggi-do Gwangju-si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N37 28 44 E127 10 52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Namhansanseong is a mountain fortress in defense of the capital Hanyang in Joseon dynasty period with Bukhansanseong.

Namhansanseong is a mountain fortress with about 200 historic sites and buildings including palace facilities at an elevation of 480m above the sea level, immediately to the southeast of Seoul. Namhansanseong's history dates back to Silla period which was found by King Munmu. In 673, a fortress called Jujiangseong(Iljangseon) was built on the western edge of Mt. Namhansan. There was no document which was recorded in Koryo period and only it

mentioned as Iljangseong at Sejong Sillok Jiriji(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in Joseon dynasty period.

Present fortified walls were built on this site in Joseon period. It was the time of being King Injo, in 1624. When China invaded Joseon in 1636, King Injo took refuge from the China soldier at Namhansanseoun. At last King Injo surrendered to China. After then Namhansanseong have had continuous managements and it has today's appearance.

Most of all, Namhansanseong heritage site contains fortifications that mostly date from the 7th through 17th century, and a number of historic buildings and temples. Most of the fortress that exists today dates from the Joseon period. A series of excavations have found a number of testimonies spanning several historic layers of human residence and defense facilities.

Namhansanseong's surroundings have witnessed and experienced a long period of development as military facilities and therefore facilitates a better understanding of different styles and techniques of fortress construction. In other words, the property reflects various facets of ancient Koreans' work.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i) Namhansanseong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s carefully planned in accordance with a series of ancient official records like Jungjeong Namhanji, when conducting repair works or restoration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for state designated heritage, the re con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fortress has been conducted, as much as possible, with the original materials and original techniques.
- ii) Along with tangible elements, intangible practices such as shamanic rituals and liquor brewing tradition have been actively transmitted by the local heritage holder groups, justifying the integrity of the heritage.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Namhansanseong and its affiliated buildings and sites have been identified, restored, and fully open to the public.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 i) Ow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 ii) Administrato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For a long time from Baekje to Unified Silla, Goryeo , and Joseon, Namhansanseong served as defense facility for the capital, Haenggung in Namhansanseong is the only such palace with royal ancestral shrine and the altar for the land and grain god. The king's stay in the temporary palace is also recorded in historic documents. In the 17th century, King Injo of Joseon decided to establish a planned city with military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inside the fortified area called Namhansanseong. It also exhibits various layers of historic periods in terms of architectural styles and techniques: from Baekje to Joseon period. Namhansanseong fortified cultural landscape contains significant examples of development processes in architectural techniques and village-planning within the territory.
 - ② Namhansanseong has a distinctive value as a unique tangible testimony of military and administrative architectural ensemble whose construction history illustrates different representations in defense techniques and reflection on changing socio-religious contexts.
-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Under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ct, Namhansanseong was inscribed as a Historic Site No.57 and Haenggung was inscribed as a Historic Site No. 480.
-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ANNEX I

ENHANCED PROTECTION REQUEST FORM

1. PARTY: 2. DATE OF SUBMISSION:

Submission prepared by:

Institution: E-mail:
Name: Fax:
Address: Telephone:

3. REQUIREMENT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3. A IDENTIFIC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please include photos and maps if available):

Name of Cultural Property : Salterns

State, Province or Region Located or Stored:

- Yeonggwang-gun, Jeollanam-do
- Sinan-gun, Jeollanam-do

Latitude and Longitude, or UTM coordinates:

- Yeonggwang: N35 15 58 E126 19 56
- Sinan: N34 59 35 E126 10 34

3. B DESCRIP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Salterns located at Sinan-gun and Yeonggwang-gun in Jeollanam-do, is where sea salt is produced with the use of mudflats. Jeollanam-do is the central region for Korean salt production. Sinan-gun holds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nsumer market, and Yeonggwang-gun's products are essential for related industries. Yeonggwang salt is used for making jeotgal, or pickled seafood, and gulbi, or dried yellow croakers, both of which

are traditionally salted foods in Korea.

There are a variety of methods for producing salt. But the process used in both regions differs significantly from others in their production process. The salt from Sinan-gun and Yeonggwang-gun is sea salt made on reclaimed tidal flats. The process begins by storing sea water in reservoirs to increase the water's salinity. When the brine reaches a specific concentration, the water is moved to checkered fields (salterns) for natural evaporation. The salterns consist of evaporation ponds and crystallization ponds, as well as brine warehouses called haeju. The salt crystals produced here are stored in silos for two to three years to remove the remaining bittern and improve the taste.

Sinan-gun is comprised of many islands, so salt production has developed over a long time. The salt from Sinan-gun usually reaches the market after the bittern is removed, which takes about a year, while Yeonggwang-gun's products are mostly used in the jeotgal and gulbi industry, after a two- to three-year-long process of bittern removal.

The salterns in Sinan-gun and Yeonggwang-gun date back to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process of making sea salt was first introduced from Japan. In fact, the area originally served as key sites for the then prevalent "parched salt" making methods—creating salt by boiling sea water that was previously stored in mudflats. The existence of this tradition proves that the region has long been an ideal location for salt production due to the advantages of the natural environment. Furthermore, the salterns are mainly distributed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olds one of the world's five most important tidal flats. Korean tidal flats contain a high proportion of organic material, and the diverse species in these estuaries help to increase the mineral content, such as calcium, potassium, and magnesium, in the salt. As a result, sea salt accounts for the vast majority of salt supply in Korea, where fermented foods are well developed. In addition, as salt is traditionally symbolic of purification in Korean shamanism, it constitutes an important element of Korean folk culture. Finally, this salt has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architecture, and clothing.

Korean salterns consist of three parts: reservoirs, evaporation ponds, and crystallization ponds. In addition, there are haeju, or brine tanks, salt silos, and resident facilities for salt makers. Reservoirs are used for storing sea water, and evaporation ponds increase the

water's salinity with the help of the sun and the wind. On the fields for crystallization, the saline water turns into salt crystals. But it takes one to three years for the salt to be sold as a finished product, because the bittern is extracted during the storage process. Meanwhile, haeju, or brine tanks, are found only in Korea, where they are built in preparation for the monsoon season.

Salterns mark the borders between tidal flats and human habitats; they straddle the line between nature and culture. They are significant for fish production (as a fish habitat), purification of pollutants, aesthetic appreciation, and flood control. In addition, they serve as a rest spot for endangered migrant birds, such as plovers and black-faced spoonbills. In other words, the continuance of salterns ensures the continuance of the region's ecological system, economy, and local culture.

Salt is also produced from tidal flats in other countries, but these regions in Korea are highly valued in terms of their natural conditions, including tidal flats, the sun, and the wind, which are coupled with human creativity. In addi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usage of tidal flats and developments in power supply for transporting water, along with oth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environment and natural salt production methods maintain the outstanding value of these saltworks as a living industrial heritage.

3. C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3. D USE OF THE CULTURAL PROPERTY:

Salterns are not simply cultural sites but places for on-going life. Many salterns experience programmes are run for the public in order to make people system and promote of sea salt. Besides, for tourists connected with surrounding local areas are in active. This area is now used as the Salt Museum.

3. E INFORMATION REGARDING RESPONSIBLE AUTHORITY:

i) Ownership: Private

ii) Administration

- ① Sinan-gun Salterns: Sinan-gun
- ② Yeonggwang Salterns: Yeonggwang-gun

3. F JUSTIFICATION FOR ENHANCED PROTECTION:

The cultural property:

i)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humanity (Article 10(a) of the Second Protocol);

- ① Salt is also produced from tidal flats in other countries, but these regions in Korea are highly valued in terms of their natural conditions, including tidal flats, the sun, and the wind, which are coupled with human creativity.
- ② Although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usage of tidal flats and developments in power supply for transporting water, along with oth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environment and natural salt production methods maintain the outstanding value of these saltworks as a living industrial heritage.

ii) Legal status (Article 10(b) of the Second Protocol)

- ① They are designated a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of Korea No. 360, 362.
- ② Sinan-gun is designated as a Tidal Flats Provincial Park in Korea.

iii)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to shield military sites. A copy of the non-military use declaration certifying such situation is attached (Article 10(c) of the Second Protocol).

Signature by the Party' 's competent authority:

Full name _____

Title _____

Date_____

* 별첨 : 자문의견

‘1954 헤이그협약 특별보호 문화재 및 강화된
보호문화재연구’ 관련 TF회의 및 자문위원회 관련

2010. 10. 4(월) / 국립중앙박물관 국제교류홍보과 김종석 학예연구사

■ 회의 개요

- 일시: 2010. 9. 1(수) 15:00
-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문화재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및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연구팀)

□ 1954 헤이그협약의 실제적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 전쟁 또는 무력충돌 시 해당국(양국 또는 다국)의 1국이라도
동 협약을 가입하였다면 모든 해당국이 동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광범위한 해석이 있음
 - 사례: 이라크전(2003년) 시 미국은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전장 이라크는 가입함. 따라서 이라크 영토(Territory)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는 동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해석
(Patrick Boylan 교수, 동 협약 제2차 의정서 초안자)

□ 문화유산 보호의 모범적 국가인 우리나라의 1954년 헤이그
협약 가입 불가 결론시 대안(안)

- 국제청방패위원회(ICBS) 대한민국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여, 국제법 가입의 법적 부담을 우회하면서
국제적 신인도를 유지함

- ※ 국제청방패위원회(ICB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Blue Shield)
 - 설립 연도: 1996년
 - 설립 목적
 -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국제 공조
 - 전쟁, 무력충돌,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에 대한 문화유산보호 국제 활동
 -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전문인력 훈련 및 국제회의 운영
 - 조직: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
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국제시청각
기록협의회(CCAAA)의 공동 협력 국제위원회
 - 국가위원회 구성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마다가스카르, 마세도니아,

미국, 벨기에, 베닌, 세네갈,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쿠바, 폴란드, 프랑스, 호주 등 18개국 (현재, 아시아
국가는 없음)
- 위원장: Mr. Julien Anfruns (ICOM 사무총장)

- ICBS: 1954 헤이그협약 제2차 의정서 Article 27-3항에 언급
- 1954 헤이그협약 가입과 ICBS 국가위원회 설립은 별도 사항
으로서 상호 공식적인 조건 관계는 없음(기능적으로는 긴밀함)
- ‘문화적십자(Red Cross of Culture)’ 로 불리면서 국제적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참여 증대가 요구되고 있음

□ 중요 알립 사항

- o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ICBS 2011 세계총회’ 유치.개최 계획을
추진중이며(신규 예산 신청 후 검토중), ICBS 위원장을 초청하여
적극 논의한 바 있음(2010. 2월). 끝.

**1954년 헤이그협약
특별보호문화재 및
2차 의정서 강화된 보호 문화재 연구**

- 발 행 일 : 2010년 10월 27일
- 인 쇄 일 : 2010년 10월 27일
- 발 행 인 : 문화재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편 집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360-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번지
TEL : (043) 258-5810~13, 5816
FAX : (043) 258-5814~5
www.chungbuk.re.kr
- 인쇄·제작 : 돋움
360-8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4-20 2F
TEL : (043) 271-3956
FAX : (043) 273-8808



비매품



ISBN 978-89-94429-10-6